2023년 정기국회 보고자료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2023. 9.

본 연차보고서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수교육에 관한 주요 시책과 그 추진 내용을 수록한 것이며, 2023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임

교육부

Ⅰ 특수교육의 개요 13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Ⅱ 2023년 특수교육 현황 19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Ⅲ 2023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31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33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33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33
      (2) 특수학교 학생 ····· 3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36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37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38
   2) 특수교육기관 확충 ····· 39
      (1) 특수학교 ····· 39
      (2) 특수학급 ····· 42

CONTENTS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45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47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 50
6) 장애 발견 진단 · 배치 체계 구축 ····· 53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 59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 59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 68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 71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75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75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76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80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82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86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86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 89
3)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활동 지원 강화 ····· 91
4)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다양화 ····· 93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102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 109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13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113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117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120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22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22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 125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127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9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131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132
7)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137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140

Appendix 부록

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143
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33

CONTENTS 표목차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4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 15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 15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 15
〈표 1 · 5〉 연도별 특수학급 수 ····· 15
〈표 1 · 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15
〈표 1 · 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 16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 16
〈표 1 · 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17
〈표 2 · 1〉 2023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 21
〈표 2 · 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2
〈표 2 · 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 23
〈표 2 · 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 학생 현황 ····· 23
〈표 2 · 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 24
〈표 2 · 6〉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 24
〈표 2 · 7〉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 25
〈표 2 · 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 26
〈표 2 · 9〉 특수학급 현황 ····· 27
〈표 2 · 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 27
〈표 2 · 11〉 순회교육 현황 ····· 28
〈표 2 · 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 28
〈표 2 · 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 29
〈표 3 ·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33
〈표 3 · 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 · 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4
〈표 3 · 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 35
〈표 3 · 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 36
〈표 3 · 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6
〈표 3 · 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 37
〈표 3 · 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 37

〈표 3 · 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 38
〈표 3 · 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39
〈표 3 · 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 40
〈표 3 · 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 41
〈표 3 · 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 42
〈표 3 · 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 43
〈표 3 · 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 · 현원 ····· 44
〈표 3 · 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 46
〈표 3 · 18〉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 47
〈표 3 · 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 47
〈표 3 · 20〉 공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 48
〈표 3 · 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 49
〈표 3 · 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51
〈표 3 · 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 52
〈표 3 · 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 54
〈표 3 · 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 55
〈표 3 · 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 56
〈표 3 · 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 57
〈표 3 · 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 58
〈표 3 · 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 60
〈표 3 · 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 63
〈표 3 · 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 65
〈표 3 · 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 66
〈표 3 · 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 69
〈표 3 · 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 70
〈표 3 · 3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 71
〈표 3 · 36〉 교육예산 대비 시도 특수교육 예산 현황 ····· 72
〈표 3 · 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 73

CONTENTS 표목차

〈표 3 · 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 73
〈표 3 · 39〉 연도별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 74
〈표 3 · 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 75
〈표 3 · 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 77
〈표 3 · 42〉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 78
〈표 3 · 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 79
〈표 3 · 44〉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 81
〈표 3 · 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 83
〈표 3 · 46〉 2022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 ····· 83
〈표 3 · 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84
〈표 3 · 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 84
〈표 3 · 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 87
〈표 3 · 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 88
〈표 3 · 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 89
〈표 3 · 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 90
〈표 3 · 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 90
〈표 3 · 5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현황 ····· 91
〈표 3 · 55〉 특수학교 진로 · 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 94
〈표 3 · 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 95
〈표 3 · 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 96
〈표 3 · 58〉 2023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 97
〈표 3 · 59〉 2023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8
〈표 3 · 60〉 2023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 99
〈표 3 · 61〉 2023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 100
〈표 3 · 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 101
〈표 3 · 63〉 치료지원 현황 ····· 102
〈표 3 · 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 103
〈표 3 · 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 104
〈표 3 · 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 105
〈표 3 · 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 106

〈표 3 · 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 107
〈표 3 · 69〉 2022년 전국 초·중·고·특수·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0
〈표 3 · 70〉 2022년 국 ·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1
〈표 3 · 71〉 2022년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1
〈표 3 · 72〉 2022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1
〈표 3 · 73〉 2022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 112
〈표 3 · 74〉 2023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 114
〈표 3 · 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 115
〈표 3 · 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 116
〈표 3 · 77〉 일반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정 지표 ····· 118
〈표 3 · 78〉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정 지표 ····· 119
〈표 3 · 7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 120
〈표 3 · 80〉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 123
〈표 3 · 8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 교과용도서 관련 사업 ····· 125
〈표 3 · 82〉 국립특수교육원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127
〈표 3 · 83〉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129
〈표 3 · 84〉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 131
〈표 3 · 85〉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 ····· 132
〈표 3 · 86〉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 ····· 134
〈표 3 · 87〉 장애학생 교수 · 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 137
〈표 3 · 88〉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138
〈표 3 · 89〉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 141
〈표 3 ·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 142

2023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I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13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13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 15

Ⅰ. 특수교육의 개요

1 특수교육의 정의

-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호)

- "특수교육대상자"란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2호)

2 특수교육 관련 법령

- 특수교육은 헌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이 정한 규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표 1 · 1〉 특수교육 관련 법령

법령	관련조항
대한민국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등), 제8조(의무교육), 제18조(특수교육)
유아교육법	제15조(특수학교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5조(특수학교의 교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제12조(의무교육), 제19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원의 자격), 제55조(특수학교), 제56조(특수학급), 제58조(학력의 인정), 제59조(통합교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평가의 대상 구분), 제14조(위탁시의 협의), 제40조(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3조(교과), 제44조(학기), 제45조(수업일수), 제57조(분교장), 제58조(국·공립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63조(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시행령 / 시행규칙	전체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전체
장애인복지법	제20조(교육),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장 제2절 교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8조(교육부 및 보건복지부와의 연계)
진로교육법 시행령	제4조(진로전담교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평생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12조(시·도평생교육협의회), 제14조(시·군·자치구평생교육협의회), 제19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 제21조의2(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5조(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1조의2(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제12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제12조의3(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생교육법 시행규칙	제2조의5(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등록)

3 특수교육의 변화 추이

〈표 1 · 2〉 연도별 특수교육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A)	′23(B)	B-A
특수교육대상자 수		86,633	87,278	88,067	87,950	89,353	90,780	92,958	95,420	98,154	103,695	109,703	6,008
학교 과정별	장애영아	578	680	742	656	549	582	532	439	369	359	407	48
	유치원	4,190	4,219	4,744	5,186	5,437	5,630	5,989	6,536	7,197	8,248	8,781	533
	초등학교	33,518	33,184	33,591	33,770	35,505	38,031	41,091	43,205	44,814	48,448	51,585	3,137
	중학교	22,241	22,159	21,108	19,793	19,218	18,788	18,462	19,140	20,212	21,462	23,005	1,543
	고등학교	22,466	22,973	23,422	23,943	23,655	22,584	21,502	20,655	20,169	19,867	20,725	858
	전공과	3,640	4,063	4,460	4,602	4,989	5,165	5,382	5,445	5,393	5,311	5,200	-111
특수학교 수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2
특수학급 수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575
교원 수*		17,446	17,922	18,339	18,772	19,327	20,039	20,773	22,145	23,494	24,962	25,599	637

* 국 · 공 · 사립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표 1 · 3〉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62	′67	′72	′77	′82	′87	′92	′97	′03	′06	′09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교 수	10	22	38	51	65	95	103	114	137	143	150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표 1 · 4〉 연도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67	′72	′77	′82	′87	′92	′97	′00	′08	′15	′17	′18	′19	′20	′21	′22	′23
학생 수	3,121	5,188	7,342	10,679	17,373	20,690	22,789	24,196	23,400	25,531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표 1 · 5〉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71	′76	′80	′85	′90	′95	′08	′12	′16	′17	′18	′19	′20	′21	′22	′23
학급 수	1	350	355	1,601	3,181	3,440	6,352	8,927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표 1 · 6〉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71	′82	′86	′91	′96	′08	′09	′16	′17	′18	′19	′20	′21	′22	′23
학생 수	30	7,665	30,876	28,795	26,087	37,857	39,380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표 1 · 7〉 연도별 학급 증설 현황

(단위: 학급)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학급 수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학급 수	증설 수	증가율
특수학교 학급	4,747	4,843	96	2.0%	4,968	125	2.6%	5,114	146	2.9%	5,255	141	2.8%	5,443	188	3.6%
일반학교 특수학급	10,676	11,105	429	4.0%	11,661	556	5.0%	12,042	381	3.3%	12,712	670	5.6%	13,287	575	4.5%
특수교육 지원센터	77	72	-5	-6.5%	50	-22	-30.6%	59	9	18.0%	56	-3	-5.1%	61	5	8.9%
계	**15,500**	**16,020**	**520**	**3.4%**	**16,679**	**659**	**4.1%**	**17,215**	**536**	**3.2%**	**18,023**	**808**	**4.7%**	**18,791**	**768**	**4.3%**

〈표 1 · 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현황

(단위: 명, %)

연도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학생 수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			전체 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014	25,827 (29.6)	45,803 (52.5)	15,648 (17.9)	61,451 (70.4)	87,278 (100)
2015	26,094 (29.6)	46,351 (52.6)	15,622 (17.7)	61,973 (70.4)	88,067 (100)
2016	25,961 (29.5)	46,645 (53.0)	15,344 (17.4)	61,989 (70.5)	87,950 (100)
2017	26,199 (29.3)	47,564 (53.2)	15,590 (17.4)	63,154 (70.7)	89,353 (100)
2018	26,337 (29.0)	48,848 (53.8)	15,595 (17.2)	64,443 (71.0)	90,780 (100)
2019	26,459 (28.5)	50,812 (54.7)	15,687 (16.9)	66,499 (71.5)	92,958 (100)
2020	26,615 (27.9)	52,744 (55.3)	16,061 (16.8)	68,805 (72.1)	95,420 (100)
2021	27,288 (27.8)	54,266 (55.3)	16,600 (16.9)	70,866 (72.2)	98,154 (100)
2022	28,233 (27.2)	57,948 (55.9)	17,514 (16.9)	75,462 (72.8)	103,695 (100)
2023	**29,236 (26.7)**	**61,993 (56.5)**	**18,474 (16.8)**	**80,467 (73.3)**	**109,703 (100)**

〈표 1 · 9〉 연도별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연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2016	2,035 (2.3)	3,401 (3.9)	47,258 (53.7)	11,019 (12.5)	2,221 (2.5)	10,985 (12.5)	2,089 (2.4)	2,327 (2.6)	1,675 (1.9)	4,940 (5.6)	87,950 (100)
2017	2,026 (2.3)	3,358 (3.8)	48,084 (53.8)	10,777 (12.1)	2,269 (2.5)	11,422 (12.8)	2,038 (2.3)	2,040 (2.3)	1,626 (1.8)	5,713 (6.4)	89,353 (100)
2018	1,981 (2.2)	3,268 (3.6)	48,747 (53.7)	10,439 (11.5)	2,221 (2.4)	12,156 (13.4)	2,081 (2.3)	1,627 (1.8)	1,758 (1.9)	6,502 (7.2)	90,780 (100)
2019	1,937 (2.1)	3,225 (3.5)	49,624 (53.4)	10,200 (11.0)	2,182 (2.3)	13,105 (14.1)	2,204 (2.4)	1,409 (1.5)	1,763 (1.9)	7,309 (7.9)	92,958 (100)
2020	1,908 (2.0)	3,132 (3.3)	50,693 (53.1)	9,928 (10.4)	1,993 (2.1)	13,917 (14.6)	2,404 (2.5)	1,226 (1.3)	1,785 (1.9)	8,434 (8.8)	95,420 (100)
2021	1,826 (1.9)	3,026 (3.1)	51,788 (52.8)	9,695 (9.9)	1,874 (1.9)	15,215 (15.5)	2,450 (2.5)	1,114 (1.1)	1,799 (1.8)	9,367 (9.5)	98,154 (100)
2022	1,753 (1.7)	2,961 (2.9)	53,718 (51.8)	9,639 (9.3)	1,865 (1.8)	17,024 (16.4)	2,622 (2.5)	1,078 (1.0)	1,948 (1.9)	11,087 (10.7)	103,695 (100)
2023	**1,745 (1.6)**	**2,907 (2.6)**	**55,867 (50.9)**	**9,522 (8.7)**	**1,831 (1.7)**	**19,275 (17.6)**	**2,645 (2.4)**	**1,037 (0.9)**	**1,956 (1.8)**	**12,918 (11.8)**	**109,703 (100)**

통계 자료 분석

○ 학생 수 변화 추이

– 2023년 특수교육대상자는 109,703명으로 2022년보다 6,008명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일반학교 배치 학생 수는 80,467명(73.3%)으로 2022년보다 5,005명이 증가함

– 장애영역별로는 자폐성장애, 발달지체 학생 비율이 각각 1.2%p, 1.1%p 증가함

○ 특수학교, 특수학급, 특수교육교원 변화 추이

– 2023년 특수학교는 총 194교로 2022년보다 2교 증가하였으며,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총 13,287학급으로 2022년보다 575학급이 증가함

– 특수교육교원은 총 25,599명으로 2022년보다 637명이 증가함

Ⅱ

2023년 특수교육 현황

1. 주요 현황 / 21
2. 특수학교 현황 / 2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 27
4. 순회교육 현황 / 28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 28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 29

Ⅱ. 2023년 특수교육 현황

※ 기준일: 2023. 4. 1.

1 주요 현황

〈표 2 · 1〉 2023년 특수교육 주요 현황

(단위: 명, 교, 학급)

배치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특수학급	일반학급 (전일제 통합학급)		
특수교육대상자 수			**28,942**	**61,993**	**18,474**	**294**	**109,703**
학생수	장애영역별	시각장애	1,079	207	458	1	1,745
		청각장애	560	689	1,646	12	2,907
		지적장애	14,540	35,855	5,457	15	55,867
		지체장애	3,905	3,232	2,326	59	9,522
		정서 · 행동장애	68	1,186	577	-	1,831
		자폐성장애	7,781	10,183	1,307	4	19,275
		의사소통장애	206	1,396	1,042	1	2,645
		학습장애	10	628	399	-	1,037
		건강장애	13	109	1,834	-	1,956
		발달지체	780	8,508	3,428	202	12,918
		계	**28,942**	**61,993**	**18,474**	**294**	**109,703**
	학교과정별	장애영아	113	-	-	294	407
		유치원	956	5,676	2,149	-	8,781
		초등학교	9,876	33,121	8,588	-	51,585
		중학교	6,461	12,425	4,119	-	23,005
		고등학교	6,522	10,585	3,618	-	20,725
		전공과	5,014	186	-	-	5,200
		계	**28,942**	**61,993**	**18,474**	**294**	**109,703**
학교 및 센터 수			194	12,190		197	12,581
				9,288	8,366		
학급 수			5,443	13,287	17,497	61	36,288
특수학교(급) 교원 수*			10,146	13,888	-	1,565	25,599
특수교육 지원인력 수			5,192	10,313	280	-	15,785

*국 · 공 · 사립 교원(기간제 교사 포함)

〔학교급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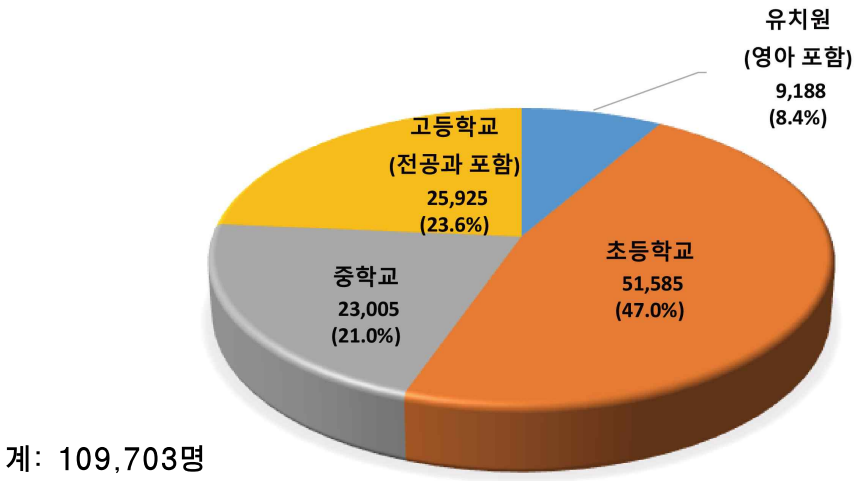

계: 109,703명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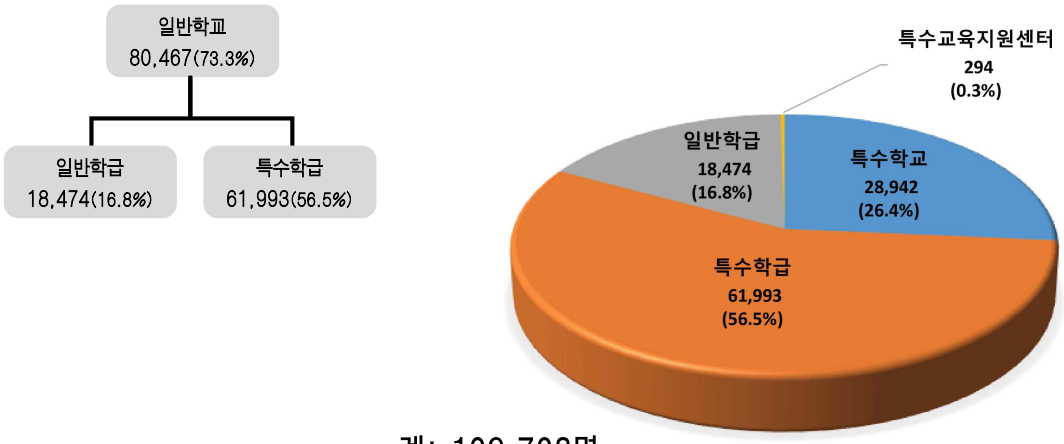

계: 109,703명

〈표 2 · 2〉 교육환경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학생 수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28,942 (26.4)	61,993 (56.5)	18,474 (16.8)	80,467 (73.3)	294 (0.3)	109,703 (100)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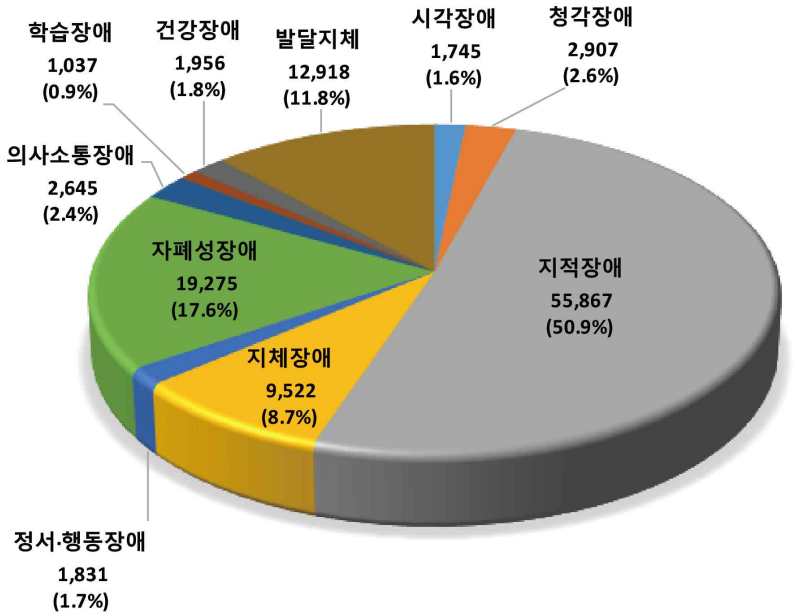

계: 109,703명

〈표 2 · 3〉 장애영역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단위: 명, %)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 · 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 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전체 학생 수
1,745 (1.6)	2,907 (2.6)	55,867 (50.9)	9,522 (8.7)	1,831 (1.7)	19,275 (17.6)	2,645 (2.4)	1,037 (0.9)	1,956 (1.8)	12,918 (11.8)	**109,703 (100)**

〈표 2 · 4〉 중도중복장애 및 시청각장애 학생 현황

(단위: 명)

구분	장애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정서 · 행동장애	계
중도중복장애	지적장애	23	32	383	3	441
	자폐성장애	-	2	7	3	12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2			2

2 특수학교 현황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계: 194교

〈표 2 · 5〉 설립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국립	5	165	837	320
공립	99	3,292	17,575	6,092
사립	90	1,986	10,530	3,734
계	**194**	**5,443**	**28,942**	**10,146**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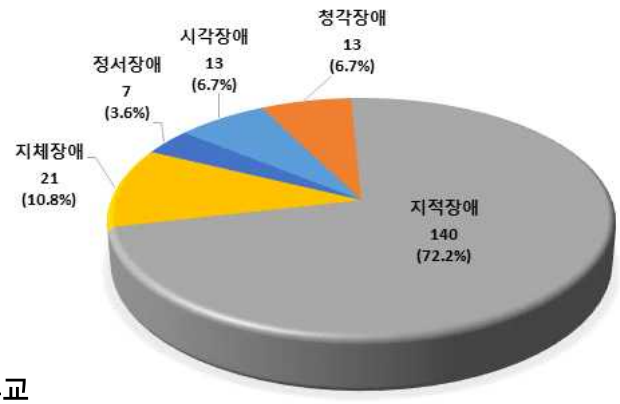

계: 194교

〈표 2 · 6〉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장애영역	장애영역별 학교 수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학교 수	13	13	140	21	7	**194**

〈표 2 · 7〉 시도별 특수학교 현황

(단위: 교)

시도	설립별 학교 수				장애영역별 학교 수					
	국립	공립	사립	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11	18	32	3	4	16	6	3	32
부산	-	8	7	15	1	1	12	1	-	15
대구	-	5	6	11	1	1	6	2	1	11
인천	-	6	4	10	1	1	7	1	-	10
광주	-	3	2	5	1	-	3	1	-	5
대전	-	4	2	6	1	-	4	1	-	6
울산	-	2	2	4	-	1	3	-	-	4
세종	-	2	-	2	-	-	2	-	-	2
경기	2	14	22	38	-	2	32	3	1	38
강원	-	8	1	9	1	1	7	-	-	9
충북	-	4	7	11	2	1	5	2	1	11
충남	-	8	2	10	-	-	9	1	-	10
전북	-	6	4	10	1	1	6	2	-	10
전남	-	4	5	9	1	-	8	-	-	9
경북	-	3	5	8	-	-	7	-	1	8
경남	-	9	2	11	-	-	11	-	-	11
제주	-	2	1	3	-	-	2	1	-	3
계	**5**	**99**	**90**	**194**	**13**	**13**	**140**	**21**	**7**	**194**

〈표 2 · 8〉 시도별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단위: 교)

시도	학교 수	학교과정 설치별 학교 수					
		영아학급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
서울	32	7	24	28	28	27	26
부산	15	6	9	12	13	11	9
대구	11	-	4	10	10	11	10
인천	10	1	7	9	10	9	8
광주	5	4	5	5	5	5	4
대전	6	3	6	6	6	6	6
울산	4	-	3	4	4	4	4
세종	2	2	2	2	2	2	2
경기	38	4	31	33	35	35	28
강원	9	-	5	9	9	9	8
충북	11	1	10	10	10	10	10
충남	10	2	5	9	9	10	9
전북	10	1	4	9	9	9	9
전남	9	-	6	9	9	9	9
경북	8	-	5	8	8	8	8
경남	11	-	7	11	11	11	11
제주	3	-	3	3	3	3	3
계	**194**	**31**	**136**	**177**	**181**	**179**	**164**

3 일반학교 특수교육 현황

〈표 2 · 9〉 특수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교원 수
유 치 원	1,195	1,539	5,676	1,559
초등학교	4,856	7,038	33,121	7,160
중 학 교	2,077	2,721	12,425	2,804
고등학교	1,142	1,955	10,585	2,301
전 공 과	18	34	186	64
계	**9,288**	**13,287**	**61,993**	**13,888**

〔학교급별 특수학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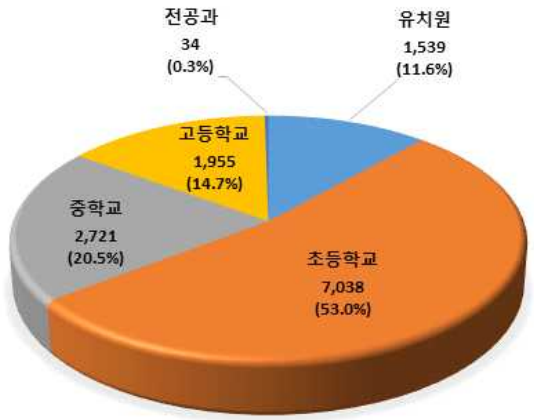

계: 13,287개

〈표 2 · 10〉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학교급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유 치 원	1,407	1,887	2,149
초등학교	3,625	8,333	8,588
중 학 교	1,948	3,905	4,119
고등학교	1,386	3,372	3,618
계	**8,366**	**17,497**	**18,474**

4 순회교육 현황

〈표 2 · 11〉 순회교육 현황

(단위: 명, 학급)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영아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 · 파견	855	137	49	-	1,041	183	433	191	234	1,041	307	313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493	182	6	30	711	62	305	149	195	711	235	251
특수교육 지원센터	401	58	39	2,483	2,981	1,080	1,118	489	294	2,981	-	1,635*
계	**1,749**	**377**	**94**	**2,513**	**4,733**	**1,325**	**1,856**	**829**	**723**	**4,733**	**542**	**2,199**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169명 포함

5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표 2 · 12〉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학급)

특수교육 지원센터 수	장애영아 수	장애영아 학급 수	배치 인력 현황		
			교사	일반직 공무원	기타 (치료사, 지원인력 등)
197	294	61	1,669	51	569

6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 특수교육대상자 진로 현황

〈표 2 · 13〉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 진로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수	진학		취업		비진학 · 미취업자 수
			진학자 수 (대학/전공과)	진학률 (%)	취업자 수	취업률 (%)	
고등학교	특수학교	2,076	1,202	57.9	45	5.1	829
	특수학급	3,354	1,883	56.1	483	32.8	988
	일반학급	1,098	676	61.6	58	13.7	364
	계	**6,528**	**3,761**	**57.6**	**586**	**21.2**	**2,181**
전공과	특수학교	2,268	34	1.5	1,087	48.7	1,147
	특수학급	103	4	3.9	87	87.9	12
	계	**2,371**	**38**	**1.6**	**1,174**	**50.3**	**1,159**
전체		**8,899**	**3,799**	**42.7**	**1,760**	**34.5**	**3,340**

※ 진학률 = (당해년도 졸업자 중 진학자 수 / 당해년도 졸업자 수) × 100

※ 취업률 = {취업자 수 / (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2023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Ⅲ

2023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 33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75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86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 113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 122

Ⅲ. 2023년 특수교육 정책 추진 현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 2023년 4월 기준 유·초·중·고 전체 학생 수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1.9%로 전년 대비 0.1%p 증가하였으며, 특수교육대상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임

〈표 3·1〉 전체 학생 대비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단위: 명, %)

시도	전체 학생 수					특수교육대상자 수*					특수교육대상자 비율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유	초	중	고	계
서울	62,797	381,508	199,073	206,120	849,498	935	6,443	3,097	3,413	13,888	1.5	1.7	1.6	1.7	1.6
부산	34,397	152,942	74,979	71,181	333,499	693	3,375	1,491	1,576	7,135	2.0	2.2	2.0	2.2	2.1
대구	30,496	119,939	60,645	59,576	270,656	484	2,487	1,106	1,441	5,518	1.6	2.1	1.8	2.4	2.0
인천	34,826	154,837	78,092	73,330	341,085	691	3,734	1,620	1,603	7,648	2.0	2.4	2.1	2.2	2.2
광주	19,911	81,732	42,606	41,952	186,201	216	1,546	759	865	3,386	1.1	1.9	1.8	2.1	1.8
대전	18,967	74,866	39,039	38,910	171,782	332	1,491	698	1,020	3,541	1.8	2.0	1.8	2.6	2.1
울산	13,489	65,097	32,413	30,341	141,340	240	1,306	606	758	2,910	1.8	2.0	1.9	2.5	2.1
세종	6,443	32,717	15,271	12,455	66,886	197	513	162	153	1,025	3.1	1.6	1.1	1.2	1.5
경기	145,262	757,206	377,714	347,901	1,628,083	2,255	13,214	5,615	5,879	26,963	1.6	1.7	1.5	1.7	1.7
강원	10,890	69,284	36,878	36,678	153,730	210	1,416	702	806	3,134	1.9	2.0	1.9	2.2	2.0
충북	14,216	81,671	42,007	39,604	177,498	469	2,084	934	1,203	4,690	3.3	2.6	2.2	3.0	2.6
충남	21,965	115,875	59,574	57,343	254,757	541	2,699	1,103	1,240	5,583	2.5	2.3	1.9	2.2	2.2
전북	17,371	87,347	48,085	48,245	201,048	434	1,978	914	947	4,273	2.5	2.3	1.9	2.0	2.1
전남	15,508	87,205	46,103	45,357	194,173	296	1,987	950	1,103	4,336	1.9	2.3	2.1	2.4	2.2
경북	22,889	122,720	61,878	63,659	271,146	449	2,688	1,190	1,551	5,878	2.0	2.2	1.9	2.4	2.2
경남	39,794	175,451	93,751	86,752	395,748	513	3,629	1,673	1,919	7,734	1.3	2.1	1.8	2.2	2.0
제주	5,589	40,531	19,898	18,583	84,601	233	995	385	448	2,061	4.2	2.5	1.9	2.4	2.4
계	514,810	2,600,928	1,328,006	1,277,987	5,721,731	9,188	51,585	23,005	25,925	109,703	1.8	2.0	1.7	2.0	1.9

* 유치원 과정의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 과정은 전공과 학생을 포함

※ 연도별 비율: 2013(1.2%), 2014(1.2%), 2015(1.3%), 2016(1.3%), 2017(1.4%), 2018(1.4%), 2019(1.5%), 2020(1.6%), 2021(1.7%), 2022(1.8%), 2023(1.9%)

(2) 특수학교 학생

- 2023년 4월 기준 특수학교의 재학생은 28,942명으로 2022년의 27,979명에 비해 963명이 증가함

〈표 3 · 2〉 연도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생 수	25,138	25,288	25,531	25,467	25,798	25,919	26,084	26,299	27,027	27,979	**28,942**

- 시도별,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설립 분포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별 구성 비율에 차이가 있음

〈표 3 · 3〉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시각 장애	청각 장애	지적 장애	지체 장애	정서·행동 장애	자폐성 장애	의사소통 장애	학습 장애	건강 장애	발달 지체	소계
서울	310	249	1,476	909	5	1,328	4	-	3	199	4,483
부산	81	22	874	316	12	584	19	2	-	112	2,022
대구	51	42	1,053	263	9	341	34	1	-	114	1,908
인천	79	37	1,040	208	4	529	26	1	-	22	1,946
광주	106	15	563	172	1	282	2	1	1	27	1,170
대전	119	12	545	124	1	309	-	-	-	12	1,122
울산	11	23	457	93	3	176	2	-	1	9	775
세종	2	1	95	37	-	80	3	-	-	11	229
경기	35	33	2,863	615	4	1,748	42	2	1	76	5,419
강원	46	3	494	70	3	212	4	1	1	32	866
충북	131	78	714	155	7	263	5	-	2	29	1,384
충남	2	6	758	190	4	348	13	-	1	20	1,342
전북	42	11	647	142	-	209	25	-	-	43	1,119
전남	48	15	738	123	5	234	4	-	1	29	1,197
경북	1	3	992	107	5	365	17	-	1	10	1,501
경남	12	7	979	304	5	571	2	2	1	31	1,914
제주	3	3	252	77	-	202	4	-	-	4	545
계	**1,079**	**560**	**14,540**	**3,905**	**68**	**7,781**	**206**	**10**	**13**	**780**	**28,942**

- 설립별로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국립학교 837명(2.9%), 공립학교 17,575명(60.7%), 사립학교 10,530명(36.4%)임
  - 사립특수학교는 위탁교육기관으로 인건비, 시설비 및 운영비 등을 전액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음

〈표 3 · 4〉 설립별 특수학교 학생 수

(단위: 명, %)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사립학교 위탁비율
서울	468	1,802	2,213	4,483	49.4
부산	-	1,441	581	2,022	28.7
대구	-	1,155	753	1,908	39.5
인천	-	1,558	388	1,946	19.9
광주	-	901	269	1,170	23.0
대전	-	861	261	1,122	23.3
울산	-	525	250	775	32.3
세종	-	229	-	229	-
경기	369	2,819	2,231	5,419	41.2
강원	-	797	69	866	8.0
충북	-	588	796	1,384	57.5
충남	-	1,142	200	1,342	14.9
전북	-	665	454	1,119	40.6
전남	-	611	586	1,197	49.0
경북	-	447	1,054	1,501	70.2
경남	-	1,670	244	1,914	12.7
제주	-	364	181	545	33.2
계	**837(2.9)**	**17,575(60.7)**	**10,530(36.4)**	**28,942(100)**	**36.4**

(3) 일반학교 특수학급 학생

- 2023년 4월 기준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61,993명으로 2022년의 57,948명에 비해 4,045명이 증가함
  - 통합교육의 확산에 따라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와 특수학급이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도에 비해 575개의 특수학급이 증가함

〈표 3 · 5〉 연도별 특수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생 수	45,181	45,803	46,351	46,645	47,564	48,848	50,812	52,744	54,266	57,948	61,993

- 학교급별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유치원 5,676명, 초등학교 33,121명, 중학교 12,425명, 고등학교 10,771명(전공과 포함)임

〈표 3 · 6〉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565	-	565	11	3,766	-	3,777	13	1,520	8	1,541	22	1,078	184	1,284	46	6,929	192	7,167
부산	-	226	-	226	7	1,838	4	1,849	-	650	-	650	6	504	62	572	13	3,218	66	3,297
대구	-	191	-	191	9	1,208	-	1,217	6	420	-	426	6	359	6	371	21	2,178	6	2,205
인천	-	409	-	409	6	2,264	-	2,270	-	773	6	779	-	591	47	638	6	4,037	53	4,096
광주	-	115	-	115	6	830	-	836	5	324	8	337	12	230	52	294	23	1,499	60	1,582
대전	-	238	-	238	-	956	-	956	-	354	14	368	-	314	46	360	-	1,862	60	1,922
울산	-	162	-	162	-	847	-	847	-	321	-	321	-	291	-	291	-	1,621	-	1,621
세종	-	172	-	172	-	331	-	331	-	89	-	89	-	67	-	67	-	659	-	659
경기	-	1,704	4	1,708	-	9,121	22	9,143	-	3,379	133	3,512	-	3,034	138	3,172	-	17,238	297	17,535
강원	4	146	-	150	6	991	-	997	-	365	-	365	8	269	-	277	18	1,771	-	1,789
충북	3	329	-	332	9	1,307	-	1,316	7	475	4	486	21	416	13	450	40	2,527	17	2,584
충남	4	410	-	414	5	1,961	-	1,966	5	680	27	712	4	603	17	624	18	3,654	44	3,716
전북	-	223	-	223	8	1,193	-	1,201	-	430	17	447	4	319	26	349	12	2,165	43	2,220
전남	-	220	-	220	-	1,533	-	1,533	-	583	19	602	-	452	25	477	-	2,788	44	2,832
경북	-	151	-	151	-	1,767	14	1,781	-	577	89	666	-	392	169	561	-	2,887	272	3,159
경남	-	336	-	336	2	2,517	11	2,530	3	820	105	928	7	685	118	810	12	4,358	234	4,604
제주	-	64	-	64	6	565	-	571	12	184	-	196	14	135	25	174	32	948	25	1,005
계	**11**	**5,661**	**4**	**5,676**	**75**	**32,995**	**51**	**33,121**	**51**	**11,944**	**430**	**12,425**	**104**	**9,739**	**928**	**10,771**	**241**	**60,339**	**1,413**	**61,993**

* 일반학교 전공과 학생 186명(대구 19명, 인천 15명, 경기 128명, 충북 24명) 포함

(4) 일반학교 일반학급 학생

- 2023년 4월 기준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18,474명으로 2022년의 17,514명에 비해 960명이 증가함

〈표 3 · 7〉 연도별 일반학급(전일제 통합학급) 학생 수

(단위: 명)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생 수	15,930	15,648	15,622	15,344	15,590	15,595	15,687	16,061	16,600	17,514	18,474

- 학교급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수는 유치원 2,149명, 초등학교 8,588명, 중학교 4,119명, 고등학교 3,618명임

〈표 3 · 8〉 학교급별 및 설립별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23	73	96	2	1,022	27	1,051	3	418	120	541	8	251	248	507	13	1,714	468	2,195
부산	-	92	223	315	2	809	2	813	-	310	57	367	10	243	68	321	12	1,454	350	1,816
대구	-	66	198	264	-	620	2	622	4	234	51	289	4	155	65	224	8	1,075	316	1,399
인천	-	78	141	219	1	731	2	734	-	366	18	384	-	232	20	252	1	1,407	181	1,589
광주	-	14	46	60	-	296	1	297	3	117	29	149	9	88	31	128	12	515	107	634
대전	-	12	25	37	-	233	-	233	-	97	9	106	-	81	34	115	-	423	68	491
울산	-	39	27	66	-	217	-	217	-	116	4	120	-	101	6	107	-	473	37	510
세종	-	8	-	8	-	82	-	82	-	28	-	28	-	19	-	19	-	137	-	137
경기	-	127	98	225	-	2,070	15	2,085	-	767	92	859	-	640	121	761	-	3,604	326	3,930
강원	-	35	6	41	1	186	1	188	-	109	14	123	13	90	21	124	14	420	42	476
충북	-	50	22	72	2	282	2	286	4	150	16	170	2	156	26	184	8	638	66	712
충남	-	59	19	78	1	251	1	253	1	72	27	100	2	74	16	92	4	456	63	523
전북	-	80	88	168	2	408	-	410	-	175	34	209	4	92	51	147	6	755	173	934
전남	-	44	13	57	-	102	2	104	-	79	25	104	-	37	5	42	-	262	45	307
경북	-	117	119	236	-	510	14	524	-	167	55	222	-	130	76	206	-	924	264	1,188
경남	-	74	68	142	-	468	6	474	2	214	69	285	2	212	94	308	4	968	237	1,209
제주	-	34	31	65	2	213	-	215	1	52	10	63	9	48	24	81	12	347	65	424
계	-	**952**	**1,197**	**2,149**	**13**	**8,500**	**75**	**8,588**	**18**	**3,471**	**630**	**4,119**	**63**	**2,649**	**906**	**3,618**	**94**	**15,572**	**2,808**	**18,474**

(5)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 2023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영아 학급 수는 61학급이며, 장애영아 수는 294명임
- 연령별로 1세 미만 12명, 1세 101명, 2세 181명이며, 교육유형별로 센터지원 영아 수는 204명, 순회교육 지원 영아 수는 90명임

〈표 3 · 9〉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장애영아 현황

(단위: 학급, 명)

시도	센터 설치 장애영아 학급 수	연령별 지원 영아 수				교육유형별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센터지원 영아 수	순회교육 영아 수	계
서울	11	3	20	20	43	42	1	43
부산	-	-	-	-	-	-	-	-
대구	7	-	3	3	6	6	-	6
인천	6	4	6	7	17	11	6	17
광주	-	-	-	-	-	-	-	-
대전	4	-	2	4	6	6	-	6
울산	-	-	2	2	4	-	4	4
세종	-	-	-	-	-	-	-	-
경기	26	3	27	49	79	18	61	79
강원	-	-	1	2	3	-	3	3
충북	2	1	7	2	10	6	4	10
충남	1	-	1	1	2	1	1	2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1	17	12	30	25	5	30
경남	2	-	2	5	7	2	5	7
제주	2	-	13	74	87	87	-	87
계	**61**	**12**	**101**	**181**	**294**	**204**	**90**	**294**

2) 특수교육기관 확충

(1) 특수학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포함)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
-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초·중등교육법 제55조)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의 의무교육대상자를 모두 취학시키는 데에 필요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초등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12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 수는 194교로 2022년 대비 2교 증가하였음

〈표 3-10〉 연도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교 수	162	166	167	170	173	175	177	182	187	192	**194**

- 전국 194개 특수학교를 설립별로 구분하면 국립 5교, 공립 99교, 사립 90교로 국·공립학교 비율이 53.6%임
- 전국 194개 특수학교를 장애영역별로 구분하면 시각장애학교 13교, 청각장애학교 13교, 지적장애학교 140교, 지체장애학교 21교, 정서장애학교 7교로 지적장애학교가 전체의 72.2%임

〈표 3-11〉 설립별 및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구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소계
국립	1	1	1	1	1	5
공립	2	3	87	6	1	99
사립	10	9	52	14	5	90
계	**13**	**13**	**140**	**21**	**7**	**194**

※ 장애영역별 구분은 주 장애영역을 말함

- 전국 194개 특수학교를 지역별로 구분하면 경기도에 38교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32교, 부산광역시 15교 등의 순임

〈표 3 · 12〉 장애영역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지체장애	정서장애	계
서울	3	4	16	6	3	32
부산	1	1	12	1	-	15
대구	1	1	6	2	1	11
인천	1	1	7	1	-	10
광주	1	-	3	1	-	5
대전	1	-	4	1	-	6
울산	-	1	3	-	-	4
세종	-	-	2	-	-	2
경기	-	2	32	3	1	38
강원	1	1	7	-	-	9
충북	2	1	5	2	1	11
충남	-	-	9	1	-	10
전북	1	1	6	2	-	10
전남	1	-	8	-	-	9
경북	-	-	7	-	1	8
경남	-	-	11	-	-	11
제주	-	-	2	1	-	3
계	**13**	**13**	**140**	**21**	**7**	**194**

- 특수학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 국・공・사립특수학교,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립특수학교, 그 외 시도에는 공・사립 특수학교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표 3・13〉 설립별 특수학교 수

(단위: 교)

시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3	11	18	32
부산	-	8	7	15
대구	-	5	6	11
인천	-	6	4	10
광주	-	3	2	5
대전	-	4	2	6
울산	-	2	2	4
세종	-	2	-	2
경기	2	14	22	38
강원	-	8	1	9
충북	-	4	7	11
충남	-	8	2	10
전북	-	6	4	10
전남	-	4	5	9
경북	-	3	5	8
경남	-	9	2	11
제주	-	2	1	3
계	**5**	**99**	**90**	**194**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과 수요를 반영한 특수학교 신설 추진
- 예술・체육 및 직업교육 등 특정분야에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설립 지원
-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운영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2) 특수학급

관련 법규

-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1항)
-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음(초·중등교육법 제56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음
  1.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4월 기준 전국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수는 13,287학급으로 2022년보다 575개 학급이 증가함

〈표 3 · 14〉 연도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연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학급 수	9,343	9,617	9,868	10,065	10,325	10,676	11,105	11,661	12,042	12,712	**13,287**

- 학교급별 특수학급은 유치원 1,539학급, 초등학교 7,038학급, 중학교 2,721학급, 고등학교 1,989학급(전공과 포함)으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53.0%를 차지함
- 설립별 특수학급은 국립 44학급, 공립 12,958학급, 사립 285학급으로 총 13,287학급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국·공립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97.9%를 차지함

〈표 3·15〉 학교급별 및 설립별 특수학급 수

(단위: 학급)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국립	공립	사립	계
서울	-	148	-	148	2	832	-	834	2	317	3	322	3	242	39	284	7	1,539	42	1,588
부산	-	58	-	58	1	358	1	360	-	129	-	129	1	81	11	93	2	626	12	640
대구	-	46	-	46	2	263	-	265	1	91	-	92	1	63	2	66	4	463	2	469
인천	-	107	-	107	1	429	-	430	-	142	1	143	-	106	7	113	1	784	8	793
광주	-	29	-	29	1	176	-	177	1	67	2	70	2	35	9	46	4	307	11	322
대전	-	63	-	63	-	187	-	187	-	79	2	81	-	51	8	59	-	380	10	390
울산	-	42	-	42	-	173	-	173	-	69	-	69	-	57	-	57	-	341	-	341
세종	-	46	-	46	-	71	-	71	-	23	-	23	-	13	-	13	-	153	-	153
경기	-	497	1	498	-	1,821	3	1,824	-	720	31	751	-	534	21	555	-	3,572	56	3,628
강원	1	36	-	37	1	227	-	228	-	86	-	86	1	55	-	56	3	404	-	407
충북	1	77	-	78	2	301	-	303	2	113	1	116	3	76	3	82	8	567	4	579
충남	1	105	-	106	1	431	-	432	1	156	7	164	1	111	4	116	4	803	11	818
전북	-	61	-	61	2	279	-	281	-	93	4	97	1	61	4	66	3	494	8	505
전남	-	68	-	68	-	404	-	404	-	160	5	165	-	87	4	91	-	719	9	728
경북	-	43	-	43	-	412	2	414	-	137	21	158	-	81	31	112	-	673	54	727
경남	-	94	-	94	1	562	2	565	1	190	29	220	1	130	24	155	3	976	55	1,034
제주	-	15	-	15	1	89	-	90	2	33	-	35	2	20	3	25	5	157	3	165
계	**3**	**1,535**	**1**	**1,539**	**15**	**7,015**	**8**	**7,038**	**10**	**2,605**	**106**	**2,721**	**16**	**1,803**	**170**	**1,989**	**44**	**12,958**	**285**	**13,287**

* 일반학교 설치 전공과 34학급(대구 2학급, 인천 3학급, 경기 26학급, 충북 3학급) 포함

- 특수학교(급) 학급당 학생 정원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이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 2023년 4월 기준 전국 평균 학급당 학생수는 유치원 3.6명, 초등학교 4.8명, 중학교 4.8명, 고등학교 5.7명임

〈표 3·16〉 학교급별 특수학교(급)의 학급당 학생 정·현원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계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유	초	중	고
정원	**4**	**6**	**6**	**7**	**4**	**6**	**6**	**7**	**4**	**6**	**6**	**7**
서울	3.3	5.5	5.4	5.4	3.8	4.5	4.8	4.5	3.6	4.8	5.0	5.0
부산	3.6	5.3	5.6	6.2	3.9	5.1	5.0	6.2	3.8	5.2	5.3	6.2
대구	3.8	5.1	4.9	6.9	4.2	4.6	4.6	5.6	4.1	4.8	4.8	6.5
인천	3.3	5.3	5.3	6.3	3.8	5.3	5.4	5.6	3.8	5.3	5.4	6.0
광주	2.7	4.7	4.8	6.4	4.0	4.7	4.8	6.4	3.5	4.7	4.8	6.4
대전	3.4	5.0	5.2	7.0	3.8	5.1	4.5	6.1	3.7	5.1	4.8	6.6
울산	2.7	4.4	4.5	6.4	3.9	4.9	4.7	5.1	3.8	4.8	4.6	5.8
세종	4.3	4.8	4.1	5.6	3.7	4.7	3.9	5.2	3.8	4.7	3.9	5.4
경기	3.2	5.8	5.8	6.0	3.4	5.0	4.7	5.7	3.4	5.1	4.9	5.8
강원	2.7	3.7	4.3	5.0	4.1	4.4	4.2	4.9	3.9	4.2	4.3	5.0
충북	2.9	4.1	4.6	6.1	4.3	4.3	4.2	5.5	4.0	4.3	4.3	5.8
충남	3.6	4.4	4.6	5.5	3.9	4.6	4.3	5.4	3.9	4.5	4.4	5.4
전북	3.1	5.0	5.2	5.8	3.7	4.3	4.6	5.3	3.5	4.4	4.8	5.6
전남	2.7	4.6	5.2	6.5	3.2	3.8	3.6	5.2	3.2	3.9	4.0	5.9
경북	3.6	4.8	5.2	7.3	3.5	4.3	4.2	5.0	3.5	4.4	4.5	6.1
경남	2.8	4.2	5.1	5.6	3.6	4.5	4.2	5.2	3.5	4.4	4.5	5.4
제주	3.4	4.6	5.3	6.2	4.3	6.3	5.6	7.0	4.1	5.8	5.5	6.6
평균	**3.3**	**5.0**	**5.2**	**6.1**	**3.7**	**4.7**	**4.6**	**5.4**	**3.6**	**4.8**	**4.8**	**5.7**

* 유치원에 장애영아 포함, 고등학교에 전공과 포함

향후 과제

-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등 장애유형별 또는 특정 분야별 특수학급 설치·운영 추진

3)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거나 순회교육을 제공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8조)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으며,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3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해 2023년 4월 기준 특수학교 40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61학급, 총 101학급의 장애영아 학급이 설치되었음
- 특수학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113명,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을 받는 장애영아 수는 294명으로 총 407명의 장애영아가 무상교육 지원을 받고 있음
- 연령별 현황은 1세 미만 19명, 1세 127명, 2세 261명으로 총 407명임

〈표 3 · 17〉 장애영아 무상교육 지원 현황 (단위: 명, 학급)

시도	연령별 지원 영아 수				배치기관별 지원 영아 수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합계		
									지원 영아 수					
	1세 미만	1세	2세	계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영아 학급 수	센터 지원 영아 수	순회 지원 영아 수	계	영아 학급 수	영아를 배치한 유치원 학급 수	지원 영아 수
서울	4	25	32	61	9	-	18	11	42	1	43	20	-	61
부산	3	2	19	24	9	1	24	-	-	-	-	9	1	24
대구	-	3	4	7	-	1	1	7	6	-	6	7	1	7
인천	5	8	8	21	1	-	4	6	11	6	17	7	-	21
광주	1	6	12	19	7	5	19	-	-	-	-	7	5	19
대전	-	6	14	20	3	3	14	4	6	-	6	7	3	20
울산	-	2	2	4	-	-	-	-	-	4	4	-	-	4
세종	1	2	1	4	2	-	4	-	-	-	-	2	-	4
경기	3	30	60	93	5	1	14	26	18	61	79	31	1	93
강원	-	1	2	3	-	-	-	-	-	3	3	-	-	3
충북	1	7	5	13	1	-	3	2	6	4	10	3	-	13
충남	-	2	8	10	2	4	8	1	1	1	2	3	4	10
전북	-	-	2	2	1	-	2	-	-	-	-	1	-	2
전남	-	1	1	2	-	1	2	-	-	-	-	-	1	2
경북	1	17	12	30	-	-	-	-	25	5	30	-	-	30
경남	-	2	5	7	-	-	-	2	2	5	7	2	-	7
제주	-	13	74	87	-	-	-	2	87	-	87	2	-	87
계	**19**	**127**	**261**	**407**	**40**	**16**	**113**	**61**	**204**	**90**	**294**	**101**	**16**	**407**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진단·등록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를 통해 적기에 특수교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 연계 강화
-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및 유아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 특수학급 확대

4)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지원 내실화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봄(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4월 기준 유치원 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가 136교 288학급(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10교 60학급 포함), 일반유치원 특수학급이 1,195교 1,539학급으로 총 1,331교 1,827학급이 운영되고 있음

〈표 3 · 18〉 유아특수교육기관 현황

(단위: 교, 학급)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교 수	136	10	1,195	**1,331**
학급 수	288	60	1,539	**1,827**

- 2023년 4월 기준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내 유치원에 956명(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219명 포함), 유치원 특수학급에 5,676명, 유치원 일반학급에 2,149명으로 총 8,781명임

〈표 3 · 19〉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수

(단위: 명)

구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유치원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유치원 전체(A)	전체(A) 중 유치원 과정만 운영하는 특수학교			
학생 수	956	219	5,676	2,149	**8,781**

- 2023년 4월 기준 일반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한 의무교육비는 공립유치원 6,613명, 사립유치원 1,201명으로 총 7,814명이 지원받고 있음
- 1인 월 교육비 평균은 공립유치원 180.1천 원, 사립유치원 481.3천 원임

〈표 3 · 20〉 공 ·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시도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대상자 수	1인 최고지원액(월)
서울	588	236	73	684
부산	318	150	223	401
대구	257	150	198	401
인천	487	150	141	401
광주	129	150	46	550
대전	250	150	25	381
울산	201	180	27	450
세종	180	310	-	-
경기	1,831	304	102	480
강원	181	201	6	405
충북	379	150	22	557
충남	469	150	19	553
전북	303	150	88	515
전남	264	150	13	550
경북	268	150	119	451
경남	410	180	68	491
제주	98	150	31	430
계	**6,613**	**180.1**	**1,201**	**481.3**

- 특수교육대상유아는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일반유치원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에 배치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함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함

〈표 3 · 21〉 유치원 및 장애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

교육부('23.4.1.기준)				보건복지부('22.12.31.기준)				합계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소계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일반 어린이집	소계	
	특수학급 설치 유치원	전일제 통합학급 운영 유치원						
136	1,195	1,407	2,738	175	1,074	773	2,022	4,760

향후 과제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홍보 강화
- 유아단계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해 통합유치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5)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관련 법규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 포함)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
-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7조)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4월 기준, 전국에 197개의 특수교육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은 교사 1,669명, 일반직 51명, 치료사와 지원인력을 포함한 기타 인력 569명으로 총 2,289명임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시설 설비비, 교재교구 및 보조공학기기 구입, 운영비 등 지원 예산은 약 2,257억 원임

〈표 3 · 2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센터수	교사			일반직			기타				전체	연간 지원 예산 (총액)
		정규	계약	계	정규	계약	계	치료사	사회복무요원	기타	계		
서울	11	101	12	113	-	4	4	-	-	27	27	144	14,531
부산	6	54	25	79	8	-	8	-	2	4	6	93	19,516
대구	5	87	18	105	4	-	4	-	9	1	10	119	15,605
인천	6	102	-	102	-	-	-	8	-	3	11	113	7,282
광주	3	44	1	45	1	-	1	-	5	10	15	61	15,114
대전	5	55	-	55	6	-	6	3	1	7	11	72	7,043
울산	3	39	2	41	2	-	2	38	-	6	44	87	6,250
세종	1	17	1	18	2	-	2	5	2	11	18	38	5,551
경기	27	357	-	357	-	6	6	44	1	52	97	460	26,569
강원	18	55	12	67	1	-	1	33	-	2	35	103	6,522
충북	11	100	-	100	4	-	4	13	1	13	27	131	20,637
충남	15	90	8	98	4	-	4	40	1	25	66	168	18,974
전북	15	86	2	88	6	-	6	2	-	26	28	122	11,450
전남	23	72	-	72	-	-	-	26	-	20	46	118	7,482
경북	24	132	-	132	-	-	-	11	-	28	39	171	10,255
경남	21	147	5	152	2	1	3	71	2	8	81	236	27,220
제주	3	35	10	45	-	-	-	8	-	-	8	53	5,795
계	**197**	**1,573**	**96**	**1,669**	**40**	**11**	**51**	**302**	**24**	**243**	**569**	**2,289**	**225,796**

- 현장의 요구와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175개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46개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23〉 통합교육지원단 및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시도	통합교육지원단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지원단 수	구성인원 수	센터 수	거점 영역
서울	11	191	5	지체중복(1), 시각(2), 청각(2)
부산	6	63	4	지체(1), 발달(1), 시각(1), 청각(1)
대구	5	136	3	시각(1), 청각(1), 정서(1)
인천	6	102	3	지체중도중복(1), 시각(1), 청각(1)
광주	3	65	1	시청각(1)
대전	3	34	1	시청각(1)
울산	3	21	1	시청각(1)
세종	1	20	-	-
경기	25	306	5	시각(1), 청각(1), 시청각(1), 지체중복(1), 건강(1)
강원	18	172	2	시각(1), 청각(1)
충북	5	59	4	시각(2), 청각(1), 발달(1)
충남	9	104	1	시청각(1)
전북	14	156	3	청각(1), 지체(1) 자폐성(1)
전남	23	223	3	시청각(3)
경북	22	207	4	시청각(4)
경남	18	206	4	시청각(4)
제주	3	20	2	시청각(2)
계	**175**	**2,085**	**46**	

향후 과제

-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학교-지역 내 관계기관 연계·협력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업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를 위해 담당 교육전문직, 교사, 행정직원 및 상담사 등의 전문인력 배치 ·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제공 확대

6) 장애 발견 진단 · 배치 체계 구축

■ 관련 법규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전공과와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 · 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 · 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및 병 · 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며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진단 · 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 ·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 · 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 진단 · 평가를 시행하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진단 · 평가 시행결과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일반학급,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야 하며 이 때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요구 학생의 선정・배치 현황은 50,584명의 신청을 받아 45,507명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하여 90.0%의 배치율을 보임

〈표 3・2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계		배치 비율
			특수학급		일반학급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신청자 수	배치자 수	
서울	1,700	1,410	3,701	3,197	1,176	1,077	116	84	6,693	5,768	86.2
부산	996	967	2,354	2,160	2,075	1,703	-	-	5,425	4,830	89.0
대구	539	531	1,100	1,056	1,139	1,024	13	13	2,791	2,624	94.0
인천	687	560	1,706	1,601	963	879	16	16	3,372	3,056	90.6
광주	286	281	678	558	409	324	-	-	1,373	1,163	84.7
대전	313	313	852	765	240	209	14	14	1,419	1,301	91.7
울산	228	203	716	550	322	274	10	8	1,276	1,035	81.1
세종	112	112	283	280	87	82	-	-	482	474	98.3
경기	1,863	1,474	7,695	7,187	2,752	2,441	152	146	12,462	11,248	90.3
강원	197	194	881	782	295	260	3	3	1,376	1,239	90.0
충북	387	386	1,082	1,061	414	398	20	20	1,903	1,865	98.0
충남	360	353	1,548	1,349	285	252	4	4	2,197	1,958	89.1
전북	331	329	971	872	671	594	-	-	1,973	1,795	91.0
전남	341	332	1,126	1,043	200	191	-	-	1,667	1,566	93.9
경북	429	429	981	906	735	617	36	29	2,181	1,981	90.8
경남	489	469	1,915	1,709	602	485	9	9	3,015	2,672	88.6
제주	184	183	416	392	243	222	136	135	979	932	95.2
계	**9,442**	**8,526**	**28,005**	**25,468**	**12,608**	**11,032**	**529**	**481**	**50,584**	**45,507**	**90.0**
영아	168	160	-	-	-	-	529	481	697	641	92.0
유	915	842	4,908	4,207	3,145	2,623	-	-	8,968	7,672	85.5
초	3,202	2,656	13,366	11,946	5,137	4,412	-	-	21,705	19,014	87.6
중	2,736	2,468	5,926	5,583	2,698	2,428	-	-	11,360	10,479	92.2
고	2,421	2,400	3,805	3,732	1,628	1,569	-	-	7,854	7,701	98.1

※ 조사기간: 2022년 4월 ~ 2023년 3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재배치자 수 포함

- 2023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는 402명이며, 이 중 만 6세는 211명, 만 7세는 78명, 만 8세 이상은 113명으로 나타남

〈표 3 · 25〉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단위: 명)

시도	특수교육대상자 중 초등학교 취학유예자 수							
	만 6세		만 7세		만 8세 이상		소계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전체	여
서울	27	10	12	3	19	7	58	20
부산	43	16	14	7	20	9	77	32
대구	80	30	39	18	40	25	159	73
인천	-	-	1	-	1	-	2	-
광주	-	-	-	-	3	1	3	1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4	1	-	-	1	-	5	1
경기	22	5	6	-	3	1	31	6
강원	4	1	-	-	1	-	5	1
충북	3	1	-	-	-	-	3	1
충남	1	-	-	-	2	2	3	2
전북	11	2	4	1	11	6	26	9
전남	1	-	2	-	3	1	6	1
경북	3	-	-	-	7	3	10	3
경남	12	4	-	-	2	1	14	5
제주	-	-	-	-	-	-	-	-
계	**211**	**70**	**78**	**29**	**113**	**56**	**402**	**155**

※ 조사기준일: 2023년 6월 1일

- 2023학년도 초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유예 원인은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가 29.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가 25.6%로 나타남

〈표 3 · 26〉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단위: 명, %)

시도	특수교육대상자의 초등학교 취학유예 원인						계
	인근에 특수교육 기관이 없어서	치료나 수술 등을 위해서	장애가 호전된 후 입학시키기 위해서	학교 적응이 어려워서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기타	
서울	3	3	14	9	3	26	58
부산	-	27	3	9	38	-	77
대구	4	41	21	84	9	-	159
인천	-	2	-	-	-	-	2
광주	-	-	2	1	-	-	3
대전	-	-	-	-	-	-	-
울산	-	-	-	-	-	-	-
세종	-	4	-	-	-	1	5
경기	2	1	6	1	4	17	31
강원	-	1	1	1	2	-	5
충북	-	1	1	-	-	1	3
충남	-	1	-	1	-	1	3
전북	-	7	8	5	6	-	26
전남	-	1	-	2	1	2	6
경북	-	1	3	4	-	2	10
경남	1	13	-	-	-	-	14
제주	-	-	-	-	-	-	-
계	**10 (2.5)**	**103 (25.6)**	**59 (14.7)**	**117 (29.1)**	**63 (15.7)**	**50 (12.4)**	**402 (100)**

※ 조사기준일: 2023년 6월 1일

-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특수학교 28,942명 중 27,991명(96.7%), 특수학급 61,993명 중 37,695명(60.8%), 일반학급 18,474명 중 7,503명(40.6%),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된 294명 중 99명(33.7%)임

〈표 3 · 27〉 특수교육대상자 중 장애인 등록 현황

(단위: 명, %)

장애영역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교육 지원센터	전체
		특수학급	일반학급		
지체장애	575	819	953	14	2,361
뇌병변장애	3,540	2,550	1,316	71	7,477
시각장애	967	191	345	1	1,504
청각장애	552	663	1,501	11	2,727
언어장애	261	2,027	518	-	2,806
지적장애	14,049	21,407	1,886	1	37,343
자폐성장애	7,962	9,935	877	-	18,774
정신장애	12	15	-	-	27
신장장애	3	8	31	-	42
심장장애	3	11	17	-	31
호흡기장애	-	3	13	-	16
간장애	28	5	13	-	46
안면장애	-	2	4	-	6
장루 · 요루장애	1	6	20	-	27
뇌전증장애	38	53	9	1	101
계	**27,991 (96.7)**	**37,695 (60.8)**	**7,503 (40.6)**	**99 (33.7)**	**73,288 (66.8)**

- 전국에 193개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1,749명의 운영위원이 1,798회의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참석함

〈표 3 · 28〉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회)

시도	위원회 수	구성원									운영실적 ('22. 3.~'23. 2.)
		교장 (감)	특수 교사	대학 교원	공무원	의사	보호자	사회 복지사	기타	계	
서울	12	17	40	2	24	-	12	-	5	100	154
부산	6	12	13	4	20	3	2	2	7	63	49
대구	5	8	7	5	16	2	4	-	1	43	53
인천	6	9	18	-	16	-	5	3	6	57	79
광주	3	3	3	3	8	3	3	-	-	23	60
대전	3	5	8	1	12	1	2	1	7	37	36
울산	3	3	6	1	7	1	6	1	5	30	48
세종	1	2	1	1	7	1	1	-	-	13	12
경기	26	58	60	5	49	2	25	6	14	219	314
강원	18	20	56	7	22	-	13	2	16	136	138
충북	11	11	21	6	27	5	12	8	13	103	116
충남	15	26	41	8	44	4	16	5	13	157	156
전북	15	23	53	3	31	5	16	4	13	148	124
전남	23	35	100	6	24	6	11	8	22	212	132
경북	24	30	70	8	43	11	21	7	17	207	167
경남	19	30	45	5	22	12	19	7	22	162	119
제주	3	7	7	2	12	2	5	1	3	39	41
계	**193**	**299**	**549**	**67**	**384**	**58**	**173**	**55**	**164**	**1,749**	**1,798**

향후 과제

- 영유아 건강검진과 조기교육 연계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자체, 병의원, 보건소 등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체계적 정보 관리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연계 방안 마련 및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의 내실화

7)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강화

(1) 특수교육 담당 교원 양성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교육교원 양성 및 연수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교사 양성과정별 무시험검정 합격기준 강화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부터 특수교육 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유아교육(유치원)/초등교육(초등)/표시과목(중등) 관련 전공과목 38학점* 이상, 교직과목 22학점 이상(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교직소양 6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유치원/초등):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중등): 표시과목별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별 교과교육 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교육 교육과정(기본 교육과정 교과(군)) 7학점(3과목) 이상 포함

※ 교육대학원의 경우 특수교육 관련 30학점 이상(기본이수과목 14학점, 5과목 이상 포함)

※ 성적 기준: 전공과목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교직과목 평균 성적 80/100점 이상

- 교직 적성 및 인성 검사 적격 판정 2회 이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성인지 교육 4회 이상

- 2021. 6. 23. 이후, 교원자격검정 대상자 중 「유아교육법」 제22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2에 따른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해당 시 교사 자격 취득 불가

● 2023년 승인정원 기준, 37개 대학에서 특수학교 정교사(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승인 인원은 1,443명임

※ 교육대학원은 총 정원으로 관리되므로 연도별 교원양성정원이 유동적

〈표 3 · 29〉 특수학교 정교사 양성기관(학부)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3년도 입학정원	2023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6	46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부산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18	18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남대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15	15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통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학과	13	13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한국체육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교원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9	9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계	**7**		**9**	**181**	**181**	
사립	가야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17	17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9	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가톨릭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직업교육
	강남대	사범대학	초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19	19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건양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경주대	교육과	특수체육교육학과	4	4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광주여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2	22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전공	18	18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3년도 입학정원	2023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극동대	교육과	특수교육학과 초등특수교육전공	24	24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나사렛대	교육과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남부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단국대 (죽전)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재활과학대	직업재활학과	38	3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대구한의대	재활보건대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미술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대전대	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상담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백석대	사범학부	유아특수교육과	40	4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60	6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40	4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부산장신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세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신라대	체육계열	체육학부 특수체육전공	20	2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유원대	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단위: 교, 개, 명)

설립별	대학명	계열	학과 및 전공명	2023년도 입학정원	2023년도 승인인원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용인대	사범대학	특수체육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우석대	사범대학	유아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과	34	3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원광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27	27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위덕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중등특수교육전공	21	21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화여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5	3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인제대	교육과	특수교육과	25	25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사범대학	중등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조선대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30	3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중부대	사범계	특수교육과	20	2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과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한국국제대*	교육과	특수교육학부 유아특수교육전공	10	10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초등특수교육전공	10	10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교육학부 특수체육교육전공	20	20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계	**30**		**46**	**1,318**	**1,262**	
총계	**37**		**55**	**1,499**	**1,443**	

* 한국국제대학교('23. 8. 31.) 폐교 예정이며, 타 대학으로 수용 계획임

- 2023년 승인정원 기준, 14개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30〉 특수학교 정교사(1·2급) 양성기관(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3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국립	공주대	중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초등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부산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서울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창원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한국교원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계	**5**	**8**	
사립	대구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순천향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특수체육교육전공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체육
	아주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영남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설립별	대학원명	2023학년도 운영전공	자격종별 및 표시과목
사립	용인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우석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유아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이화여대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전주대	특수교육전공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1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1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1급)
	조선대	특수교육	특수학교(유치원) 정교사(2급)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계	**9**	**11**	
총계	**14**	**19**	

※ 출처: 2022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2023년 승인정원 기준, 7개의 교육대학교에 설치된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31〉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전문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교육대학명	형태	수업형태	2023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서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야간	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	재교육과정
	대구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 · 야간	초등특수교육 뇌기반 특수체육	재교육과정
	경인교육대학교	전문대학원	계절 · 야간	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춘천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계절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공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주간 · 계절	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전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진주교육대학교	특수대학원	야간	초등특수교육	재교육과정
계	**7**			**9**	

※ 출처: 2022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고등교육법」 제29조의2에 대학원의 종류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으로 구분하여 규정

- 2023년 승인정원 기준, 16개의 국·사립대학교의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32〉 국·사립대학교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 현황

(단위: 교, 개)

설립별	대학원명	2023학년도 운영전공	비고
국립	공주대	중등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초등특수교육전공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직업교육전공	
	전남대	특수교육전공	
	한국교원대	특수교육전공	
계	**3**	**6**	
사립	가톨릭대	특수교육전공	재교육과정
		직업특수교육전공	
	강남대	유아특수교육전공	
		특수교육전공	
	고신대	특수교육전공	
	광운대	특수교육	
	광주여대	특수교육전공	
	나사렛대	특수교육학	
	남부대	특수교육전공	
	단국대(죽전)	유아특수교육전공	
		초등특수교육전공	
		중등특수교육전공	
		직업재활교육	
		장애인평생교육	
		학습장애.난독증교육	
	대구대	초등특수교육	
		유아특수교육	
		지적학습발달장애교육	
		감각운동발달장애교육	
	동의대	유아특수보육	
	위덕대	초등특수교육	
		중등특수교육	
	인제대	특수교육전공	
	중부대	특수교육전공	
계	**13**	**24**	
총계	**16**	**30**	

※ 출처: 2022년 교원양성기관 정기승인 결과

※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유치원·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관련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해 교원자격증을 수여할 수 있음.

향후 과제

- 특수교육 현장 역량을 갖춘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및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일반교육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교육대학원 특수교육 전공과정의 교육과정 강화 및 전공 교수 확보
- 미래사회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비한 특수교사 양성 및 지원 역량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강화

(2) 특수교육 담당 교원 현직 연수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담당 교원의 자질 함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현직연수는 국립특수교육원, 시도교육청(직속기관인 시도교육연수원 포함) 및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은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통해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과 대학 부설 교육연수원 등은 특수교육 교사 자격연수(유・초・중등)와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시도별 특수교육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교사 자격증 소지율은 특수학교(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가 99.6%, 특수학급이 99.3%, 전체 99.4%로 나타남

〈표 3・33〉 특수교육 담당 교원 자격 소지 현황

(단위: 명, %)

시도	특수학교 (특수교육지원센터 포함)				특수학급				합계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현원	소지자	미소지	자격 소지 비율
서울	1,582	1,576	6	99.6	1,658	1,647	11	99.3	3,240	3,223	17	99.5
부산	713	703	10	98.6	652	646	6	99.1	1,365	1,349	16	98.8
대구	736	729	7	99.0	486	485	1	99.8	1,222	1,214	8	99.3
인천	675	674	1	99.9	818	817	1	99.9	1,493	1,491	2	99.9
광주	455	454	1	99.8	336	336	-	100	791	790	1	99.9
대전	410	410	-	100	414	414	-	100	824	824	-	100
울산	287	285	2	99.3	346	343	3	99.1	633	628	5	99.2
세종	91	90	1	98.9	153	151	2	98.7	244	241	3	98.8
경기	2,368	2,363	5	99.8	3,998	3,974	24	99.4	6,366	6,337	29	99.5
강원	359	357	2	99.4	407	403	4	99.0	766	760	6	99.2
충북	576	572	4	99.3	584	580	4	99.3	1,160	1,152	8	99.3
충남	566	564	2	99.6	830	817	13	98.4	1,396	1,381	15	98.9
전북	459	459	-	100	509	509	-	100	968	968	-	100
전남	477	477	-	100	731	720	11	98.5	1,208	1,197	11	99.1
경북	570	568	2	99.6	741	735	6	99.2	1,311	1,303	8	99.4
경남	793	793	-	100	1,035	1,034	1	99.9	1,828	1,827	1	99.9
제주	213	207	6	97.2	190	186	4	97.9	403	393	10	97.5
계	**11,330**	**11,281**	**49**	**99.6**	**13,888**	**13,797**	**91**	**99.3**	**25,218**	**25,078**	**140**	**99.4**

* 특수학교 보건교사, 영양교사, 사서교사는 제외

- 2023년 현재 특수교육교원 연구회는 1,373개이며 14,677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표 3 · 34〉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 현황

(단위: 개, 명, 천 원)

시도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수	회원 수	지원 예산
서울	36	628	41,676
부산	105	873	100,480
대구	104	833	58,000
인천	121	1,056	108,415
광주	108	891	54,100
대전	53	624	32,042
울산	12	107	8,070
세종	25	193	7,500
경기	242	2,059	15,000
강원	72	786	92,000
충북	91	984	87,223
충남	131	1,436	103,010
전북	46	472	49,470
전남	48	812	90,600
경북	67	1,214	97,054
경남	98	1,439	70,230
제주	14	270	24,500
계	**1,373**	**14,677**	**1,039,370**

향후 과제

-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전문성 및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연수기회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수과정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교과 연수 제공 확대
- 특수교육교원 연수과정의 질 제고 및 참여 강화를 위한 연수과정 다양화

8)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외 학교운영지원비, 통학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3조)

현황 및 추진실적

- 기존 특수학급당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41,005천 원, 초등학교 32,745천 원, 중학교 34,494천 원, 고등학교 39,789천 원임
- 신설 특수학급의 연간 평균 운영경비는 유치원 66,295천 원, 초등학교 59,446천 원, 중학교 59,152천 원, 고등학교 58,811천 원임

〈표 3 · 35〉 특수학급 학급당 연간 운영비 지원

(단위: 천 원)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기존	신설
서울	46,698	65,661	29,800	68,763	33,981	72,944	41,544	80,507
부산	47,007	74,473	35,496	69,934	36,848	71,548	43,736	-
대구	37,587	69,507	30,113	53,863	32,661	56,411	36,988	60,738
인천	34,143	73,266	26,859	68,967	43,699	67,099	31,499	64,212
광주	66,503	121,503	40,281	86,948	41,803	73,803	50,288	50,288
대전	50,524	70,524	23,805	43,805	23,484	43,484	28,202	48,202
울산	38,492	51,460	32,476	54,654	33,947	55,679	39,487	59,972
세종	47,960	57,960	47,870	57,870	47,641	57,641	55,264	65,264
경기	26,460	49,140	33,250	61,750	31,380	47,070	36,480	54,720
강원	21,101	45,918	22,836	47,653	25,470	50,287	26,808	51,625
충북	26,572	78,572	20,837	70,837	20,990	79,350	31,155	81,155
충남	50,054	55,054	44,838	49,838	48,894	53,894	50,747	55,747
전북	47,676	68,676	38,572	59,572	39,104	60,104	43,270	64,270
전남	35,353	55,353	26,056	46,056	24,662	44,662	33,273	53,273
경북	38,846	57,849	45,744	54,781	44,449	52,497	49,151	51,521
경남	35,351	60,351	26,314	51,314	28,014	53,014	34,949	59,949
제주	46,758	71,740	31,526	63,984	29,369	66,102	43,568	98,340
평균	**41,005**	**66,295**	**32,745**	**59,446**	**34,494**	**59,152**	**39,789**	**58,811**

※ 특수학급 운영비: 특수학급 기본 운영비 및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특수교육 지원인력(인건비 제외), 종일반 및 방과후학교 운영비, 특수학급 관련 특별교부금사업, 기타 통학비, 급식비 지원 등 특수학급 예산

-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예산은 3조 6,197억 원으로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대비 3.7%의 비율을 나타냄

〈표 3 · 36〉 교육예산 대비 시도 특수교육 예산 현황

(단위: 천 원, %)

시도	시도교육청 총교육예산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 취득비	연수비	기타	계	비율
				전체(A)	전체(A) 중 장애인 편의시설 예산					
서울	12,891,521,000	361,470,669	130,228,350	45,784,585	41,424,585	1,099,840	828,455	1,019,700	540,431,599	4.2
부산	5,751,287,524	135,069,506	72,499,313	7,193,022	3,175,866	136,623	287,580	484,000	215,670,044	3.7
대구	4,392,236,351	110,252,537	55,587,713	1,685,357	337,071	681,160	425,341	249,110	168,881,218	3.8
인천	5,393,503,208	109,042,376	77,874,585	9,448,674	8,754,910	977,849	130,096	139,929	197,613,509	3.7
광주	3,132,346,781	44,021,128	40,805,065	24,325,212	4,554,041	2,470,468	295,683	2,734,877	114,652,433	3.7
대전	3,073,565,123	68,163,105	50,182,683	8,084,305	3,177,291	678,800	144,930	920,481	128,174,304	4.2
울산	2,394,518,853	55,243,796	35,609,097	4,326,303	407,392	68,800	46,888	496,000	95,790,884	4.0
세종	1,061,528,385	24,752,836	8,397,872	8,826,167	300,000	1,522,000	35,324	1,192,550	44,726,749	4.2
경기	22,334,511,186	469,488,289	172,182,487	25,753,697	10,000,000	5,666,957	919,905	6,375,691	680,387,026	3.0
강원	4,394,620,000	73,233,000	32,319,013	35,545,316	6,111,819	477,899	382,843	857,600	142,815,671	3.2
충북	3,845,636,918	79,288,104	48,479,128	14,660,001	32,536	534,579	405,167	281,850	143,648,829	3.7
충남	5,590,073,062	156,235,481	73,256,593	11,096,357	1,663,157	856,700	1,324,127	1,596,519	244,365,777	4.4
전북	4,901,771,585	96,707,704	74,886,480	10,559,344	5,510,967	4,007,700	194,356	130,642	186,486,226	3.8
전남	5,007,700,000	78,656,000	49,743,602	3,614,372	2,635,000	20,000	181,200	410,000	132,625,174	2.6
경북	5,992,897,518	107,382,069	78,551,647	15,454,102	4,223,519	2,243,551	634,561	3,715,563	207,981,493	3.5
경남	7,186,590,606	151,440,914	99,161,563	53,963,643	331,000	2,627,860	788,047	1,512,800	309,494,827	4.3
제주	1,601,543,054	32,394,250	24,443,332	7,092,064	359,000	773,190	181,534	1,109,300	65,993,670	4.1
계	**98,945,851,154**	**2,152,841,764**	**1,124,208,523**	**287,412,521**	**92,998,154**	**24,843,976**	**7,206,037**	**23,226,612**	**3,619,739,433**	**3.7**

※ 국고, 지방비,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재원 등을 포함한 총 예산 기준임

- 2023년도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은 시도교육청 3조 6,197억, 국립특수학교 540억, 국립학교 특수학급 54억을 합하여 총 3조 6,792억 원임

〈표 3 · 37〉 시도 및 국립특수학교(급) 특수교육 예산

(단위: 천 원)

구분		특수교육 예산						
		인건비	교급당 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연수비	기타	소계
시도		2,152,841,764	1,124,208,523	287,412,521	24,843,976	7,206,037	23,226,612	3,619,739,433
국립	특수학교	30,933,963	12,754,011	6,408,100	1,541,713	106,878	2,268,308	54,012,973
	특수학급	2,488,926	1,895,321	1033,200	15,500	7,350	51,800	5,492,097
계		**2,186,264,653**	**1,138,857,855**	**294,853,821**	**26,401,189**	**7,320,265**	**25,546,720**	**3,679,244,503**

- 2023년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는 33,538천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60천 원 증가함

〈표 3 · 38〉 연도별 특수교육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비

(단위: 천 원)

연도	특수교육비	수혜학생 수	1인당 특수교육비
2003	564,394,700	53,404	10,568
2004	666,840,034	55,374	12,042
2005	822,051,094	58,362	14,085
2006	1,051,284,265	62,538	16,810
2007	1,145,295,143	65,940	17,369
2008	1,352,939,269	71,484	18,926
2009	1,545,753,946	75,187	20,559
2010	1,667,641,925	79,711	20,921
2011	1,966,284,753	82,665	23,786
2012	2,138,496,638	85,012	25,155
2013	2,245,781,336	86,633	25,923
2014	2,076,048,794	87,278	23,787
2015	2,227,638,518	88,067	25,295
2016	2,376,062,265	87,950	27,016
2017	2,653,497,809	89,353	29,697
2018	2,759,503,150	90,780	30,398
2019	2,984,447,992	92,958	32,105
2020	3,134,043,528	95,420	32,845
2021	3,188,731,273	98,154	32,487
2022	3,305,625,487	103,695	31,878
2023	**3,679,244,503**	**109,703**	**33,538**

- 2023년도 특수교육 총예산은 3조 7,267억 원으로 2022년도에 비해 약 3,834억 원 증가된 금액이며, 2023년 6월 기준 교육 예산의 4.0%를 차지함

〈표 3 · 39〉 연도별 특수교육 총예산 비율

(단위: 천 원, %)

연도	교육 예산*	특수교육 예산**	비율(%)
2011	41,618,722,000	1,966,284,753	4.7
2012	45,752,654,000	2,138,496,638	4.7
2013	49,643,947,000	2,245,781,336	4.5
2014	49,986,533,000	2,076,048,794	4.2
2015	50,325,564,676	2,227,638,518	4.4
2016	51,225,455,330	2,376,062,265	4.6
2017	57,003,830,743	2,664,432,153	4.7
2018	63,872,934,485	2,783,412,270	4.4
2019	70,743,520,000	3,039,704,368	4.3
2020	72,097,627,000	3,174,800,528	4.4
2021	70,429,061,000	3,248,756,273	4.6
2022	83,362,762,000	3,343,304,487	4.0
2023	**92,102,436,000**	**3,726,768,503**	**4.0**

* 전체 교육예산 중 일반회계 예산('23년은 일반회계+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예산)
** 시도교육청 및 국고 예산

향후 과제

- 지역별 균형적인 특수교육 발전 및 안정적인 재정 확보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유치원 925명, 초등학교 897명, 중학교 394명, 고등학교 181명으로 총 2,397명의 학생이 순회교육을 받고 있음

〈표 3 · 40〉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단위: 명)

시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62	44	28	19	153
부산	107	35	14	5	161
대구	46	43	8	7	104
인천	50	11	10	2	73
광주	33	8	8	1	50
대전	-	-	-	-	-
울산	46	36	5	9	96
세종	2	1	-	-	3
경기	96	214	54	19	383
강원	21	54	28	9	112
충북	42	18	19	20	99
충남	51	72	29	7	159
전북	78	90	42	7	217
전남	52	37	45	5	139
경북	86	78	54	39	257
경남	107	97	42	28	274
제주	46	59	8	4	117
계	**925**	**897**	**394**	**181**	**2,397**

■ 향후 과제

- 통합학급 내 모든 학생의 학교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해 통합교육 협력교수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연수 확대
-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확대를 통해 교육과정 조정, 정기상담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 및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를 확대하여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교육지원 강화

2)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8조)
-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 이해를 높이기 위해 일반학교 교원에 연수를 실시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5조)
-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일반교사 양성과정에서 이수해야 하는 교직과정의 세부 이수기준 중 교직소양 영역에 '특수교육학 개론' 과목을 포함하여 2009년부터 시행함(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161호, 2008.1.8.)

  ※ (교육부 고시 제2023-14호, 2023.3.29 별표 2 일부개정)

  - 교직소양: 특수교육학개론(2학점 이상, 영재교육 영역 포함), 교직실무(1~2학점 이상),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의 이해(2학점 이상), 디지털 교육(1~2학점 이상, 인공지능 교육 포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따로 입학절차, 교육과정 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을 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초・중등교육법 제59조)

현황 및 추진실적

- 일반학교 통합학급 담당교사 51,374명이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에 참여함
- 통합학교 관리자 교(원)장 11,045명이 특수(통합)교육 연수 과정에 참여함
- 안정적인 통합교육 환경조성 및 일반·특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을 위해 '정다운학교' 158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19교에서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표 3·41〉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과정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현황				
	3~15시간 미만	15~29시간	30~59시간	60시간 이상	계
서울	5,047	556	575	791	6,969
부산	606	591	714	1,408	3,319
대구	444	406	564	1,319	2,733
인천	781	793	642	1,527	3,743
광주	90	209	280	676	1,255
대전	400	49	230	1,310	1,989
울산	154	629	298	660	1,741
세종	115	93	93	155	456
경기	4,094	1,837	1,492	3,509	10,932
강원	460	140	218	223	1,041
충북	411	463	330	852	2,056
충남	1,095	731	703	589	3,118
전북	785	293	510	527	2,115
전남	566	309	620	419	1,914
경북	890	593	443	989	2,915
경남	1,209	912	690	1,367	4,178
제주	247	162	212	279	900
계	**17,394**	**8,766**	**8,614**	**16,600**	**51,374**

※ 2022학년도 통합학급 담당교사 기준

〈표 3 · 42〉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단위: 명)

시도	통합학교 관리자 장애공감 연수 이수 현황	
	특수(통합)교육 연수 이수 교(원)장 수	전체 통합학교 교(원)장 수
서울	1,168	1,290
부산	676	726
대구	524	543
인천	589	653
광주	269	319
대전	306	332
울산	272	275
세종	127	136
경기	2,586	2,648
강원	401	500
충북	440	500
충남	655	678
전북	577	648
전남	553	655
경북	849	875
경남	881	964
제주	172	186
계	**11,045**	**11,928**

〈표 3 · 43〉 정다운학교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정다운학교 운영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	5	4	2	16
부산	4(1)	5(2)	2	2	13(3)
대구	3(1)	9(1)	2	1	15(2)
인천	2	2(1)	2(1)	1	7(2)
광주	3	1	-	-	4
대전	1	2	2	-	5
울산	-	2(1)	1	1	4(1)
세종	1	5	1	-	7
경기	11	5	17	8(1)	41(1)
강원	-	2	2(1)	1	5(1)
충북	2	3	-	1	6
충남	-	7	1	2	10
전북	2(1)	6(1)	2	1	11(2)
전남	-	3(1)	1	-	4(1)
경북	-	3(2)	1(1)	1	5(3)
경남	1(1)	1(1)	-	-	2(2)
제주	-	2(1)	1	-	3(1)
계	**35(4)**	**63(11)**	**39(3)**	**21(1)**	**158(19)**

※ 괄호 안의 학교 수는 연구학교 수

향후 과제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모형 확산을 위해 정다운학교 운영 확대 및 컨설팅 지원 강화, 우수사례 발굴 · 확산 등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학교과정별 ·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실행력 향상을 위한 핵심교원 양성 연수 추진 및 통합교육연구회 조직 · 운영 활성화
- 통합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장애이해교육 내실화를 위해 초 · 중 · 고 통합학교에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및 활용 프로그램 개발 · 보급

3)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1항)
-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배포하고,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유아 및 초・중등학생을 위한 학교급별 맞춤형 장애이해교육 자료 제작・배포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방송(유아: 애니메이션, 초등: 대한민국 1교시, 중등: 장애이해드라마)을 활용한 장애이해수업을 실시함
  - 2022년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한 학교는 전체 유・초・중・고등학교 중 18,979교로, 전체 학교의 94.9%임

〈표 3 · 44〉 유 · 초 · 중 · 고등학교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현황

(단위: 교, %)

시도	전체 유·초·중·고 학교 수	연 2회 이상 실시 학교 수	실시 비율
서울	2,108	2,101	99.7
부산	989	989	100
대구	767	767	100
인천	919	824	89.7
광주	586	586	100
대전	557	557	100
울산	422	422	100
세종	164	164	100
경기	4,634	4,219	91.0
강원	978	878	89.8
충북	796	796	100
충남	1,099	1,010	91.9
전북	1,211	986	81.4
전남	1,290	1,280	99.2
경북	1,559	1,476	94.7
경남	1,616	1,616	100
제주	308	308	100
계	**20,003**	**18,979**	**94.9**

※ 2022. 12. 31. 기준

향후과제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장애인식개선 교육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
-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수업 우수사례 공모전 추진을 통한 교육현장의 장애이해수업 내실화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4)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 관련 법규

-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함(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3항, 제4항 신설, 2019. 12. 10.)
-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해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의2 신설, 2019. 12. 10.)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200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내외부 위원 2,648명을 구성함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학교(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일반학교, 특수학교 등 총 4,877교를 모니터링하고, 현장 어려움을 지원함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접수를 위한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국립특수교육원과 17개 시도교육청에 운영 중임
- 통합교육 환경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초등학생용 교육자료(장애공감문화 지원 교육자료 학생 활동용 24편, 교사 지원용 9편, 교육자료 활용 영상 1편, 교사용 매뉴얼 1종)를 개발·보급함

〈표 3 · 45〉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및 위원 수

(단위: 개, 명)

시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수
서울	11	183
부산	6	79
대구	5	106
인천	6	72
광주	3	52
대전	3	41
울산	3	46
세종	2	20
경기	31	386
강원	18	219
충북	11	170
충남	15	200
전북	15	166
전남	23	345
경북	24	295
경남	21	236
제주	3	32
계	**200**	**2,648**

※ 인권지원단 구성(최소 8명 이상): 센터장(담당과장) 1명, 장학사(연구사)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1명, 특수학교(급) 교장(감) 1명, 경찰서 성폭력 담당자 1명, 장애학생 보호자 1명,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전문가 1명, 상담전문인력 1명, 기타 법률 전문가, 장애인권 전문가, 의료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

〈표 3 · 46〉 2022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학교 수

(단위: 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모니터링 학교 수	188	157	215	480	589	572	479	257	500	526	496	418	**4,877**

- 2023년 특수교육교원을 대상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된 강좌는 242개임
- 2023년 일반교육교원 대상 전체 연수과정 6,870개 중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를 포함한 연수과정은 472개임

〈표 3 · 47〉 특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강좌 수	17	14	8	10	3	19	4	1	28	17	14	21	14	28	19	25	-	242

〈표 3 · 48〉 일반교육교원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현황

(단위: 개)

시도	일반교육교원 대상 연수과정 수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좌 포함 연수과정 수
서울	701	48
부산	433	24
대구	1,033	18
인천	359	14
광주	997	54
대전	678	37
울산	419	3
세종	89	12
경기	135	54
강원	40	17
충북	468	19
충남	407	31
전북	104	33
전남	58	36
경북	383	33
경남	169	27
제주	397	12
계	**6,870**	**472**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학교폭력, 학습권리, 학교생활 영역을 중심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온라인・대면)를 실시함
- 온라인 조사(전수조사)는 특수교육대상자(초등학교 4학년~전공과) 총 71,945명 중 14,699명이 참여하였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교육청별 예방・대응 계획을 수립함
  - 주요 결과로서 학교폭력 영역은 따돌림 7.4%, 언어폭력 5.7%, 신체 폭력 3.5% 순으로 피해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학습권리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0.8%가 '교・내외 활동참여 배제 경험이 있었다'고 하였으며, 학교생활 영역은 전체 응답자의 1.2%가 '도움 제공자로부터 착・탈의 지원 시 불편했던 경험이 있었다', 전체 응답자의 2.2%가 '도움 제공자의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함
- 대면 조사는 학교폭력 피해 경험자 중 대면 조사 참여를 희망한 46명이 참여함
  - 대면 조사 결과로서 37건이 인권침해 사안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가해자 유형은 학교폭력 영역에서 비장애학생 28건, 장애학생 4건, 교사 4건, 학습권리 영역에서 교직원 1건, 학교생활 영역은 해당 사항이 없었음
  -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는 전체 57건 중 상담 28건, 물리적 분리 13건, 교육 프로그램 지원 12건, 치료지원 2건, 지원인력 지원 2건이었으며, 가해자 조치는 전체 67건 중 교육 프로그램 지원 18건, 상담 12건, 사과 14건, 특별교육 6건, 교육봉사 6건, 물리적 분리 5건, 치료지원 4건, 환경개선 1건, 지원인력 지원 1건이었음

향후 과제

-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대상별(교직원, 학생 등) 인권감수성 교육 강화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할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 강화
- 학교 내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강화를 위한 장애인권 핵심교원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 양성 등 관련 연수 확대
-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에 따른 인권침해 주요 현황 진단・분석 및 예방・대응책 마련으로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1)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4월 기준 건강장애학생은 1,956명으로,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시스템을 통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병원학교는 2023년 37교로, 50명의 인력이 담당하고 있으며, 월 평균 이용 건강장애학생 수는 465명임

〈표 3 · 49〉 병원학교 운영 현황

(단위: 명)

시도	병원명 또는 병원학교명	월평균 이용 학생 수	담당 인력 수
서울(10)	국립정신건강센터 참다울학교	1	특수교사 1, 일반교사 1, 예술치료사 1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병원학교	4	의료사회복지사 1
	고려대학교안암병원 병원학교	2	의료사회복지사 1
	삼성서울병원 병원학교	40	일반교사 1
	서울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학교	147	일반교사 1, 평생교육사 1
	서울성모병원 병원학교	26	일반교사 1, 의료사회복지사 1
	서울아산병원 병원학교	27	의료사회복지사 1
	연세암병원 병원학교	35	일반교사 1, 심리상담사 1
	원자력병원 병원학교	18	일반교사 1
	한양대학교병원 병원학교 누리봄교실	4	일반교사 1
부산(3)	동아대학교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부산백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인제대학교해운대백병원 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대구(4)	경북대학교 병원학교	14	특수교사 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학교	6	특수교사 1
	대동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영남대학교 병원학교	10	특수교사 1
인천(1)	인하대학교병원 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광주(1)	학마을 병원학교	9	특수교사 1
대전(1)	충남대학교병원학교	5	특수교사 1
울산(1)	울산디솜병원학교	5	특수교사 3
경기(5)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국립암센터 병원학교	9	특수교사 2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병원학교	6	특수교사 2
	파주시티재활요양병원 병원학교	8	특수교사 2
	한서중앙병원 병원학교	3	특수교사 2
강원(1)	강릉아산병원 병원학교	13	특수교사 1
충북(1)	충북대 병원학교	3	특수교사 1
충남(3)	국립공주병원어울림병원학교	2	특수교사 1
	단국대학교병원학교	8	특수교사 1
	아람메디컬병원학교*	-	특수교사 1
전북(1)	전북대학교병원 한누리병원학교	4	특수교사 1
전남(2)	느티나무학교	17	특수교사 1
	여미사랑학교	14	특수교사 2
경남(2)	경상대학교병원어린이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6	특수교사 2
제주(1)	제주대학교병원학교	1	특수교사 1
계	**37**	**465**	**50**

* 폐원이 예정되어 2023. 9. 1.자 감축 예정이며, 현재 이용학생 없음

- 건강장애학생 학습 지원을 위해 3개 기관에서 원격수업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시스템을 이용하는 건강장애학생 등은 2,372명임

〈표 3 · 50〉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현황

(단위: 학급, 명, 일)

원격수업시스템 명	학급 수	강사 수	전체 학생 수			월 평균 이용 학생 수	개별학생 연평균 이용일 ('22. 6. 1.~'23. 5. 31.)
			건강 장애	기타	계		
꿀맛무지개교실	14	14	232	74	306	233	47
꿈사랑학교	41	26	639	189	828	705	186
스쿨포유	35	35	997	241	1,238	1,322	174
계	**90**	**75**	**1,868**	**504**	**2,372**	-	-

향후 과제

- 2022 개정 교육과정 기반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확대 및 질 관리 강화
- AI 기반 맞춤형 학습 지원 고도화
- 병원학교 유관기관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 운영 활성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

관련 법규

- 교육감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장·단기의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5조)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4월 기준 특수학교 307개 순회·파견학급에서 313명의 교사가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1,041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855명, 시설 137명, 병원 49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83명, 초등학교 433명, 중학교 191명, 고등학교 234명임

〈표 3·51〉 특수학교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학교	계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특수학교에서 순회·파견·겸임	855	137	49	-	1,041	183	433	191	234	1,041	307	313

- 2023년 4월 기준 일반학교 특수학급 235개의 순회·파견학급에서 251명의 교사들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순회교육을 받는 학생 수는 총 711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493명, 시설 182명, 병원 6명, 일반학교 30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 62명, 초등학교 305명, 중학교 149명, 고등학교 195명임

〈표 3 · 52〉 특수학급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학급에서 순회 · 파견 · 겸임	493	182	6	30	711	62	305	149	195	711	235	251

- 2023년 4월 기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교사 1,635명이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육 순회교사가 순회교육을 지원하는 학생 수는 총 2,981명으로, 기관별로 가정 401명, 시설 58명, 병원 39명, 일반학교 2,483명이며, 학교급별로 유치원(장애영아 포함) 1,080명, 초등학교 1,118명, 중학교 489명, 고등학교 294명임

〈표 3 · 5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학생 수

(단위: 학급, 명)

구분	학생 수										교사 수
	기관					학교과정					
	가정	시설	병원	일반 학교	계	유치원 (장애영아 포함)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계	
특수교육지원센터	401	58	39	2,483	2,981	1,080	1,118	489	294	2,981	1,635*

* 특수교육지원센터 기간제 교사 169명 포함

향후 과제

-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를 위해 순회교육 전담인력 확대 및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에 대한 연수 강화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 운영 확대
- 배치환경(재택, 일반학급)과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순회교육 운영 도움 자료 개발 · 보급

3)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활동 지원 강화

■ 관련 법규

-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육과정 운영개선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 및 일반학급의 통합교육 지원 강화(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0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해 전국 1,444개 기관과 연계하여 2,515개 문화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 66,72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725개 기관과 연계하여 1,20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체 27,699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음

〈표 3 · 54〉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활동 현황

(단위: 기관, 개, 명)

시도	문화예술			체육		
	운영 및 연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운영 및 연계 기관 수	운영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서울	82	215	7,540	32	89	1,749
부산	147	616	6,516	54	201	3,300
대구	131	175	4,337	85	153	3,558
인천	72	77	1,362	36	41	921
광주	30	51	3,395	10	19	660
대전	30	43	633	17	29	430
울산	15	36	1,854	7	11	627
세종	12	18	421	13	15	398
경기	171	232	5,589	127	142	2,517
강원	87	92	4,930	22	34	663
충북	31	44	1,678	19	31	1,130
충남	360	436	13,991	139	159	2,723
전북	57	146	1,989	20	47	1,515
전남	51	67	4,063	37	57	1,864
경북	72	148	5,289	45	95	4,143
경남	70	85	2,715	12	18	758
제주	26	34	427	50	59	743
계	**1,444**	**2,515**	**66,729**	**725**	**1,200**	**27,699**

향후 과제

- 장애학생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자원 연계로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예술교육 강화
- 장애학생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참여 확대 및 장애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체육예술 분야 인재 발굴·양성 및 우수사례 확산

4)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 강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하며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3조)
-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4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지원, 현장중심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장애학생 취업역량 강화 지원
-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위해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프로그램 9,509개를 확보하였고, 진로체험활동 4,873회(누적 수)를 운영함
-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의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강화를 위한 특수학교 학교기업(32교) 내실화 지원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53교)' 운영

〈표 3 · 55〉 특수학교 진로 · 직업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단위: 교, 명, 개)

시도	교육과정 특성화 운영 현황								진로체험활동 운영 현황	
	진로교육 중점학기 · 년제		예술 · 체육분야 중점 교육과정		직업교육 중점학교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교육		꿈길에 등록된 프로그램 수	진로체험활동 결과 현황 (누적 수)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운영교	참여학생		
서울	4	75	2	27	3	548	1	150	672	2,031
부산	1	6	-	-	1	116	-	-	578	225
대구	1	41	1	175	5	354	3	241	387	160
인천	8	411	4	192	3	135	2	158	180	214
광주	4	194	4	61	2	31	-	-	131	220
대전	1	25	-	-	-	-	2	478	404	21
울산	2	78	1	107	2	173	-	-	2,133	390
세종	1	43	1	26	1	20	1	43	71	24
경기	34	1,405	2	137	5	248	5	494	881	354
강원	9	56	-	-	-	-	9	76	411	41
충북	5	166	2	52	6	251	2	315	549	202
충남	4	49	3	464	9	242	13	151	740	368
전북	2	25	10	837	2	76	1	43	381	147
전남	9	107	2	134	2	110	9	624	882	105
경북	3	51	1	144	5	247	1	12	389	160
경남	2	49	3	769	4	318	2	34	669	113
제주	-	-	-	-	-	-	-	-	51	98
계	**90**	**2,781**	**36**	**3,125**	**50**	**2,869**	**51**	**2,819**	**9,509**	**4,873**

〈표 3 · 56〉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현황

개관 연도	학교명	교육청	설립별	장애유형	사업직종
2010	대구5교통합	대구	사립	시각·청각·지체·지적장애·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사무용지, 세탁, 홍보판촉물제작 등
	전주선화학교	전북	공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천연비누, 제과·제빵, 천연염색 등
2011	한빛맹학교	서울	사립	시각장애	이료
	대전혜광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공예, 운동화 전문세탁 등
	부산혜성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도자기, 원예, 천연비누, 조립, 임가공, 직업체험 등
2012	꽃동네학교	충북	사립	지적장애	제과·제빵 등
	미추홀학교	인천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도자기, 임가공, 직업체험 등
	순천선혜학교	전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포장·충전, 세탁 등
	속초청해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광주선광학교	광주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제과·제빵, 도자기, 원예, 공예 등
2013	천안인애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목장갑, 도자기, 공예품 등
	성은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비누, 공예품, 원예 등
	청주맹학교	충북	사립	시각장애	천연비누, 향초 등
	울산혜인학교	울산	공립	지적장애	자동차 부품제조, 세차, 신발세탁 등
	창원천광학교	경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양파·대추즙, 직업체험 등
	공주정명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장갑, 핸드페인팅, 직업체험 등
	태백라온학교	강원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부천상록학교*	경기	공립	지적장애	스팀세차, 스팀세차, 클린서비스, 임가공업 등
	부천혜림학교*	경기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가공, 소독, 직업체험 등
2014	서울맹학교	서울	국립	시각장애	점자도서 출판
	한국선진학교	경기	국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식품제조, 임가공업 등
	대전원명학교	대전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면장갑, 가구, 임가공 등
2015	안동영명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등
2016	포항명도학교	경북	사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차, 직업체험 등
2017	한국경진학교	경기	국립	정서장애	커피바리스타, 버섯재배·유통, 임가공업, 직업체험 등
2018	서산성봉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건조식품, 위생용품 제조
	부산해마루학교*	부산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농업생산품, 농산물 건조식품, 직업체험 등
	소림학교	전남	사립	청각장애	커피바리스타, 웰빙건강음료 제조·판매, 외주사업장 등
2019	상희학교*	경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직업체험
2023	청주혜원학교*	충북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예산꿈빛학교*	충남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연수세트, 캠핑용 나무제품 등
	대전해든학교*	대전	공립	지적장애	커피바리스타, 세탁, 음·식료품 등

* 시도교육청 지정 특수학교 학교기업임
※ 사업직종은 학교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및 취업률 제고를 위한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2023년 현재 교육부 지정 34교 및 시도교육청 지정 19교가 운영 중임
  -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 위주의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인근 특수학급 학생에 대한 직업훈련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장애학생 직업교육 거점학교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표 3 · 57〉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지정 · 운영 현황

(단위: 교)

시도	지정연도 및 운영학교													전체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1	2022	2023	
서울	상암고	경복고		(문현고) (서울문화고)	(경기고)			관악고						3(3)
부산			부산 전자공업고											1
대구	대구과학 기술고					대구농업 마이스터고								2
인천			강남영상 미디어고			박문여고		인화여고				(계산 공업고)		3(1)
광주	광주전자 공업고													1
대전		동대전고											(갈마중) (대전전자 디자인고)	1(2)
울산														-
세종														-
경기	성남테크노 과학고 이천제일고	안양공업고 은행고 (포천일고) (안성고)	수원 정보과학고			(오산정보고)								5(3)
강원			영서고											1
충북	제천제일고		청주농업고				충북산업과학고							3
충남	공주생명 과학고	금산산업고 논산공업고	당진정보고 서천고	(온양용화고) (천안공업고)	(태안고)	주산산업고 (부여정보고)		(청양고)	(서산 중앙고)					6(6)
전북							이리고			(전주생명 과학고)	(전북 유니텍고)			1(2)
전남	목포 공업고		전남 기술과학고				순천공업고							3
경북		김천생명 과학고						(인동고)						1(1)
경남		김해생명 과학고												1
제주	제주고	함덕고										(서귀포산업 과학고)		2(1)
계	9	9(2)	8	(4)	(2)	3(2)	3	2(2)	(1)	(1)	(1)	(2)	(2)	34(19)

※ ( )안의 학교는 시도교육청 지정 거점학교

-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을 위해 교육·복지·고용 관계부처 연계 강화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진로·직업교육 이력 관리를 위해 구축한 범부처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 2023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2,076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45명으로 취업률은 5.1%임

〈표 3·58〉 2023년도 2월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332	265	1	2	1	-	1	-	-	-	-	1	1	-	2	9	13.4
부산	137	58	-	2	-	-	-	-	-	-	-	-	-	-	1	3	3.8
대구	141	78	-	1	-	-	-	-	-	-	-	-	-	-	1	2	3.2
인천	132	56	-	-	-	-	-	-	-	-	-	-	-	-	1	1	1.3
광주	79	37	-	-	-	-	1	-	-	-	-	-	-	-	-	1	2.4
대전	77	55	-	-	-	-	-	1	-	-	-	-	-	-	-	1	4.5
울산	57	37	-	-	-	-	-	-	-	-	-	-	-	-	-	-	-
세종	13	10	-	-	-	-	-	-	-	1	-	-	-	-	-	1	33.3
경기	358	111	-	3	2	-	-	-	-	-	1	3	1	-	6	16	6.5
강원	76	49	-	1	-	-	-	-	-	-	-	-	-	-	1	2	7.4
충북	95	75	-	-	-	-	-	-	-	2	-	-	-	-	-	2	10.0
충남	87	56	-	-	-	-	-	-	-	-	-	-	-	-	-	-	-
전북	103	50	-	-	-	-	-	-	-	1	-	-	-	-	-	1	1.9
전남	105	58	-	-	-	-	-	3	-	-	-	-	-	-	-	3	6.4
경북	114	90	-	-	-	-	-	-	-	-	-	-	-	-	-	-	-
경남	130	104	-	1	-	-	-	-	-	-	-	-	-	-	-	1	3.8
제주	40	13	-	-	-	-	-	-	-	-	-	1	-	-	1	2	7.4
계	**2,076**	**1,202**	**1**	**10**	**3**	**-**	**2**	**4**	**-**	**4**	**1**	**5**	**2**	**-**	**13**	**45**	**5.1**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3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 3,354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483명으로 취업률은 32.8%임

〈표 3 · 59〉 2023년도 2월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제과 제빵	이료	영업·판매	청소·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428	118	9	11	-	-	6	-	2	15	32	1	8	10	14	108	34.8
부산	181	122	2	2	-	-	-	-	1	2	3	-	2	3	2	17	28.8
대구	175	147	-	2	-	-	-	-	-	-	-	2	-	-	-	4	14.3
인천	174	120	1	9	-	-	1	-	1	-	2	-	-	1	2	17	31.5
광주	82	57	-	-	-	1	-	-	-	-	-	1	-	-	1	3	12.0
대전	123	82	-	2	-	-	-	-	-	2	2	1	-	-	1	8	19.5
울산	86	69	-	-	-	-	-	-	-	-	-	-	3	-	2	5	29.4
세종	24	10	-	1	-	-	1	-	-	-	5	-	-	2	1	10	71.4
경기	931	480	6	43	2	-	27	-	2	6	31	3	9	1	22	152	33.7
강원	95	54	-	2	-	-	-	-	-	2	1	-	1	-	1	7	17.1
충북	148	80	-	2	-	-	1	-	2	4	2	1	9	-	4	25	36.8
충남	193	100	-	12	-	-	2	-	-	4	5	-	9	2	6	40	43.0
전북	101	57	1	-	1	-	3	-	2	2	1	-	-	-	-	10	22.7
전남	144	95	-	5	-	-	-	-	-	3	1	-	-	2	1	12	24.5
경북	189	125	2	1	1	1	4	-	3	7	1	1	2	2	1	26	40.6
경남	233	134	-	19	-	1	1	-	-	5	1	-	3	-	6	36	36.4
제주	47	33	-	-	-	-	-	-	-	-	1	-	-	-	2	3	21.4
계	**3,354**	**1,883**	**21**	**111**	**4**	**3**	**46**	**-**	**13**	**52**	**88**	**10**	**46**	**23**	**66**	**483**	**32.8**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3년 2월 고등학교 일반학급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 1,098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은 58명으로 취업률은 13.7%임

〈표 3 · 60〉 2023년도 고등학교 일반학급 졸업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졸업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술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144	77	-	-	-	-	-	-	-	-	1	1	2	-	2	6	9.0
부산	101	66	-	1	-	-	-	-	-	-	2	-	-	-	-	3	8.6
대구	93	65	-	2	-	-	-	-	-	-	-	-	-	-	-	2	7.1
인천	63	32	-	-	-	-	-	-	-	-	1	1	-	-	1	3	9.7
광주	40	33	-	-	-	-	-	-	-	-	-	-	-	-	-	-	-
대전	40	28	-	-	-	1	1	-	-	-	-	-	-	-	-	2	16.7
울산	29	22	-	-	-	-	-	-	-	-	-	-	-	-	-	-	-
세종	8	7	-	-	-	-	-	-	-	-	-	-	-	1	-	1	100
경기	231	130	-	3	-	1	-	-	-	-	3	-	-	-	5	12	11.9
강원	33	20	-	3	-	-	-	-	-	-	-	-	-	-	-	3	23.1
충북	61	33	-	4	2	-	1	-	1	-	-	-	-	-	-	8	28.6
충남	28	17	-	-	-	-	-	-	-	-	-	-	-	-	1	1	9.1
전북	54	31	-	3	-	-	-	-	-	-	-	-	-	-	3	6	26.1
전남	13	8	-	-	-	-	-	-	-	-	-	-	-	-	-	-	-
경북	60	38	-	2	-	-	-	-	-	-	-	-	1	-	1	4	18.2
경남	85	57	-	6	-	1	-	-	-	-	-	-	-	-	-	7	25.0
제주	15	12	-	-	-	-	-	-	-	-	-	-	-	-	-	-	-
계	**1,098**	**676**	**-**	**24**	**2**	**3**	**2**	**-**	**1**	**-**	**7**	**2**	**3**	**1**	**13**	**58**	**13.7**

※ 취업률 = {취업자 수/(졸업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3년 2월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2,268중 1,087명 취업으로 취업률은 48.7%임

〈표 3 · 61〉 2023년도 특수학교 전공과 이수자 취업 현황

(단위: 명, %)

시도	이수자 수	진학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보건 · 의료	제품 제조	농림 어업	정보 통신 기기	식품 가공 · 제과 제빵	이료	영업 · 판매	청소 · 세탁	식음료 서비스	문화 · 예술	사무 보조	사서 보조	기타	소계	
서울	259	7	-	10	1	4	1	9	1	3	9	5	5	1	22	71	28.2
부산	114	1	3	34	1	-	4	3	-	4	9	1	5	5	2	71	62.8
대구	179	-	17	29	-	-	10	2	2	24	7	1	10	1	4	107	59.8
인천	139	2	7	19	-	1	2	5	1	12	8	3	4	2	11	75	54.7
광주	57	1	3	7	-	-	-	1	-	-	4	-	3	-	1	19	33.9
대전	115	9	7	12	1	-	-	7	-	11	9	-	4	2	3	56	52.8
울산	99	-	3	27	-	-	5	-	-	1	3	9	2	-	1	51	51.5
세종	14	-	-	-	-	-	-	-	-	1	4	-	1	-	1	7	50.0
경기	344	4	9	75	-	-	27	-	5	18	37	7	15	2	27	222	65.3
강원	90	1	-	7	-	-	3	1	-	8	13	-	9	-	2	43	48.3
충북	140	5	6	14	-	-	4	4	-	6	6	8	9	1	4	62	45.9
충남	144	-	2	34	3	1	1	-	-	11	7	1	3	1	-	64	44.4
전북	92	-	5	7	-	-	2	4	-	3	7	-	10	3	-	41	44.6
전남	106	1	-	17	-	-	1	1	-	17	10	-	6	-	11	63	60.0
경북	193	1	3	25	-	-	4	-	1	25	4	-	17	2	6	87	45.3
경남	157	2	5	10	-	-	-	-	-	4	6	-	2	-	5	32	20.6
제주	26	-	1	1	-	-	2	-	-	5	4	-	3	-	-	16	61.5
계	**2,268**	**34**	**71**	**328**	**6**	**6**	**66**	**37**	**10**	**153**	**147**	**35**	**108**	**20**	**100**	**1,087**	**48.7**

※ 취업률 = {취업자 수/(이수자 수 - 진학자 수)} × 100

- 2023년 전국 164개 특수학교에 전공과 과정 716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5,014명이 배치되어 있음
- 2023년 대구, 인천, 경기, 충북 일반학교 18교에 전공과 34학급이 설치되어 있으며, 186명의 학생이 배치되어 있음

〈표 3 · 62〉 전공과 설치 학교 현황

(단위: 교, 학급, 명)

구분	학교 수	학급 수	학생 수
특수학교	164	716	5,014
일반학교	18	34	186
계	**182**	**750**	**5,200**

향후 과제

- 장애학생의 재능 발굴 및 전문 직업인으로 양성·지원하기 위해 '진로와 직업' 교과를 중심으로 현장중심의 진로·직업 특화 교육과정 운영 강화
-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체계 강화
- 고등학교 및 전공과를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이력관리 및 안정적 직업유지 도모를 위한 취업유지 현황 조사 실시
- 양질의 일경험 기회와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 연계 강화 및 현장중심의 다양한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
- '진로진학상담' 전문 자격을 갖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확대 및 역량강화 연수 지원을 통해 담당 교원의 전문성 제고
-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기 제공 및 체계적 이력관리를 위한 범부처 취업지원 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해 현장 안착 도모
-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보급, 성과관리 등을 통해 장애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의 전문화 지원

5)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 관련 법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 교육감은 가족지원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하고,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각급학교의 장은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한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71,653명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과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표 3・63〉 치료지원 현황

(단위: 명, 천 원)

구분	지원 인원	지원 예산
서울	9,781	15,941,540
부산	4,763	8,986,980
대구	5,619	7,315,496
인천	5,381	8,515,958
광주	2,607	3,764,700
대전	2,084	2,322,962
울산	2,036	5,049,725
세종	940	1,458,620
경기	11,992	23,349,787
강원	2,366	4,619,400
충북	3,519	5,611,073
충남	3,612	5,410,370
전북	3,383	7,089,844
전남	2,599	4,465,356
경북	4,559	8,604,288
경남	4,912	10,587,748
제주	1,500	3,131,302
계	**71,653**	**126,225,149**

-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2023년 4월 기준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사회복무요원 총 14,058명이 배치됨
- 국고・지방비 지원 등 유급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9,280명으로 특수학교 3,056명, 특수학급 6,163명, 일반학급에 61명이 배치됨
- 사회복무요원은 4,778명으로 특수학교 1,840명, 특수학급 2,855명, 일반학급에 83명이 배치됨

〈표 3・64〉 특수교육 지원인력 배치 현황

(단위: 명)

시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소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소계	유급				사회복무요원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국고・지방비	자치단체(자활후원단체)	기타	소계			
서울	434	6	-	440	449	889	933	36	-	969	489	1,458	4	3	-	7	2	9	2,356
부산	312	-	-	312	67	379	313	23	-	336	95	431	-	-	-	-	-	-	810
대구	246	-	-	246	125	371	314	-	-	314	131	445	2	-	-	2	7	9	825
인천	239	-	-	239	24	263	468	5	-	473	20	493	-	-	-	-	-	-	756
광주	89	-	-	89	78	167	168	15	-	183	82	265	-	-	-	-	1	1	433
대전	214	-	-	214	53	267	368	-	-	368	116	484	-	-	-	-	-	-	751
울산	112	-	-	112	132	244	230	-	-	230	182	412	1	-	-	1	5	6	662
세종	46	-	-	46	6	52	131	-	-	131	9	140	-	-	-	-	-	-	192
경기	269	-	-	269	389	658	875	-	-	875	1,131	2,006	-	-	-	-	2	2	2,666
강원	67	-	-	67	75	142	245	-	2	247	1	248	9	-	-	9	-	9	399
충북	187	-	-	187	25	212	232	-	-	232	25	257	-	-	-	-	-	-	469
충남	149	-	19	168	33	201	399	-	23	422	50	472	4	-	-	4	-	4	677
전북	149	-	-	149	23	172	257	-	-	257	83	340	8	-	-	8	4	12	524
전남	98	-	-	98	74	172	219	9	-	228	95	323	10	-	-	10	49	59	554
경북	117	-	-	117	130	247	367	-	-	367	174	541	20	-	-	20	12	32	820
경남	223	-	-	223	127	350	406	-	-	406	163	569	-	-	-	-	-	-	919
제주	80	-	-	80	30	110	125	-	-	125	9	134	-	-	-	-	1	1	245
계	**3,031**	**6**	**19**	**3,056**	**1,840**	**4,896**	**6,050**	**88**	**25**	**6,163**	**2,855**	**9,018**	**58**	**3**	**-**	**61**	**83**	**144**	**14,058**

- 교통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9,236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16,754명을 제외하고 16,091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 학생 80,467명 중 통학버스 이용학생 4,224명을 제외하고 33,813명(학부모 포함)을 지원하고 있음
- 교통비 지원예산은 약 561억 원임

〈표 3 · 65〉 특수교육대상자 교통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학교 통학 버스 이용 학생 수	교통비 지원자 수 (학부모 포함)				교통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서울	4,526	2,106	147	1,075	645	870	6,558	9,362	-	-	-	662	1,134	521
부산	2,022	1,310	5	410	292	209	224	5,113	-	43	901	432	330	418
대구	1,914	982	24	573	298	269	2,835	3,604	57	-	352	299	383	323
인천	1,963	1,169	10	110	86	204	2,594	5,685	216	104	44	279	477	511
광주	1,170	692	7	220	125	175	377	2,216	44	111	236	173	343	683
대전	1,128	662	42	87	72	150	1,547	2,413	16	144	154	127	277	595
울산	779	513	2	194	102	196	197	2,131	-	118	437	268	350	738
세종	229	139	6	37	13	21	137	796	45	55	47	17	39	74
경기	5,498	2,842	294	2,004	1,876	1,236	10,127	21,465	-	2,212	5,891	2,789	2,119	5,905
강원	869	558	7	94	93	63	252	2,265	452	127	781	442	166	985
충북	1,394	878	25	385	231	360	2,302	3,296	311	175	946	474	520	1,366
충남	1,344	1,066	42	104	18	36	4,277	4,239	615	149	149	164	216	297
전북	1,119	878	4	67	47	75	3,845	3,154	522	101	505	332	315	710
전남	1,197	723	4	120	81	189	432	3,139	496	152	521	444	559	973
경북	1,531	799	18	174	132	244	1,320	4,347	910	163	901	478	508	1,365
경남	1,921	1,175	10	500	299	306	1,536	5,813	531	166	808	445	829	1,445
제주	632	262	9	126	84	58	175	1,429	9	60	555	208	107	460
계	**29,236**	**16,754**	**656**	**6,280**	**4,494**	**4,661**	**38,735**	**80,467**	**4,224**	**3,880**	**13,228**	**8,033**	**8,672**	**17,369**

- 2023년 6월 기준 전국 194개 특수학교에서 통학버스 828대를 운영하며, 특수학교 재학생 27,901명(순회교육 지원학생 1,041명 제외) 중 16,754명(60.0%)의 학생을 통학 지원하고 있음

〈표 3 · 66〉 특수학교 학생 통학버스 이용 비율

(단위: 명, 대, %)

시도	학생 수			통학버스 수	이용학생 수	이용비율
	전체학생 수(A)	순회교육 학생 수(B)	계(A-B)			
서울	4,483	238	4,245	111	2,106	49.6
부산	2,022	68	1,954	54	1,310	67.0
대구	1,908	68	1,840	50	982	53.4
인천	1,946	111	1,835	46	1,169	63.7
광주	1,170	71	1,099	36	692	63.0
대전	1,122	38	1,084	34	662	61.1
울산	775	61	714	27	513	71.8
세종	229	13	216	7	139	64.4
경기	5,419	44	5,375	160	2,842	52.9
강원	866	13	853	32	558	65.4
충북	1,384	78	1,306	47	878	67.2
충남	1,342	44	1,298	52	1,066	82.1
전북	1,119	16	1,103	47	878	79.6
전남	1,197	49	1,148	30	723	63.0
경북	1,501	-	1,501	39	799	53.2
경남	1,914	109	1,805	45	1,175	65.1
제주	545	20	525	11	262	49.9
계	**28,942**	**1,041**	**27,901**	**828**	**16,754**	**60.0**

- 특수학교 통학차량 총 828대 중 477대는 학교 소유, 352대는 임대 형태로 운영
- 안전교육은 운영자(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인력 총 2,026명이 이수

〈표 3 · 67〉 특수학교 통학차량 현황 및 안전교육 이수 현황

(단위: 교, 대, 명)

시도	특수 학교 수	통학차량 현황						안전교육 이수		
		전체 통학 차량 수	운영 차종(대수)			운영 형태(대수)		운영자 (학교장)	운전자	통학지원 인력
			16인승 이하	17인~35인승 이하	36인승 이상	학교소유	임대			
서울	32	111	3	27	81	65	46	32	109	111
부산	15	54	-	27	27	54	-	16	54	148
대구	11	50	-	13	37	8	42	11	50	50
인천	10	46	-	6	40	7	39	10	46	57
광주	5	36	-	9	27	8	28	5	36	36
대전	6	34	2	5	27	16	18	6	32	80
울산	4	27	-	6	21	27	-	4	27	38
세종	2	7	-	-	7	5	2	2	7	14
경기	38	160	5	47	108	82	78	38	159	167
강원	9	32	1	13	18	32	-	9	31	42
충북	11	47	2	12	33	31	16	10	46	46
충남	10	52	-	26	26	26	26	10	52	52
전북	10	47	-	33	14	24	23	10	47	47
전남	9	30	-	7	23	21	9	9	30	30
경북	8	39	1	7	31	28	11	8	38	38
경남	11	45	1	12	32	33	12	11	45	45
제주	3	11	-	1	10	9	2	3	11	11
계	**194**	**828**	**15**	**251**	**562**	**476**	**352**	**194**	**820**	**1,012**

- 급식비는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배치 학생 29,236명 중 28,942명,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 배치학생 80,467명 중 80,467명에게 지원하고 있음
- 급식비 지원예산은 약 1,040억 원임

〈표 3 · 68〉 특수교육대상자 급식비 지원 현황

(단위: 명, 백만 원)

시도	특수학교(센터 포함)							일반학교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전체 학생 수	지원 학생 수	급식비 보조금(1인 1식)				급식비 지원 예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서울	4,526	4,483	5,748	5,748	6,301	6,301	6,183	9,362	9,362	3,165	5,544	6,249	6,609	9,622
부산	2,022	2,022	4,270	4,270	4,270	4,270	1,658	5,113	5,113	2,750	3,640	4,650	4,850	3,800
대구	1,914	1,908	7,805	7,805	7,805	7,805	2,637	3,604	3,604	4,814	5,628	6,715	7,363	4,017
인천	1,963	1,946	4,600	4,600	4,600	4,600	1,701	5,685	5,685	4,110	4,760	4,980	5,110	5,226
광주	1,170	1,170	8,704	8,704	8,704	8,704	1,935	2,216	2,216	3,060	6,019	6,709	6,749	2,568
대전	1,128	1,122	4,800	4,800	4,800	4,800	1,334	2,413	2,413	3,000	3,800	4,800	5,000	1,889
울산	779	775	4,355	4,355	4,355	4,355	649	2,131	2,131	2,950	3,400	4,100	4,600	1,498
세종	229	229	5,735	5,735	5,735	5,735	276	796	796	6,540	5,662	5,975	6,072	937
경기	5,498	5,419	4,218	4,191	4,961	4,961	4,516	21,465	21,465	3,353	3,536	4,233	4,442	14,516
강원	869	866	4,710	4,710	4,710	4,710	706	2,265	2,265	2,900	3,270	3,830	4,090	1,513
충북	1,394	1,384	4,693	4,693	4,693	4,693	2,473	3,296	3,296	2,965	6,018	7,222	7,609	3,774
충남	1,344	1,342	2,670	3,810	4,800	4,210	1,055	4,239	4,239	2,970	4,340	5,090	4,780	3,607
전북	1,119	1,119	4,400	4,400	4,400	4,400	934	3,154	3,154	3,500	3,700	4,400	4,500	2,091
전남	1,197	1,197	4,642	4,642	4,642	4,642	1,056	3,139	3,139	3,474	3,826	4,315	4,642	2,410
경북	1,531	1,501	6,980	6,980	6,980	6,980	2,322	4,347	4,347	5,440	6,240	6,840	6,980	6,227
경남	1,921	1,914	4,109	5,438	5,869	6,627	2,270	5,813	5,813	3,207	6,309	7,275	7,948	7,113
제주	632	545	4,540	4,540	4,540	4,540	461	1,429	1,429	3,660	3,660	4,440	4,770	1,064
계*	**29,236**	**28,942***	**86,979**	**89,421**	**92,165**	**92,333**	**32,166**	**80,467**	**80,467**	**61,858**	**79,352**	**91,823**	**96,114**	**71,862**

* 급식을 하지 않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영아(294명) 미포함

향후 과제

-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유형 다양화 및 역량 강화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을 활용한 효율적 교육 지원 추진 및 학생 1인당 치료지원 평균 비용 확대
-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를 위해 제공기관 모니터링 철저 및 대상자별 적합한 지원 영역, 적정단가 산출 등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방법 강구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

관련 법규

- 각급학교의 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
-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 교육책임자가 교육기관 내 교실 등 학습시설 및 화장실, 식당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이동하거나 그에 접근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 및 이동수단을 제공하여야 함(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일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

현황 및 추진실적

-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담당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역량 교육을 확대하고 조사 기준을 강화하고 있음
- 2022년 9월 기준 전국의 초·중·고·특수·각종학교는 총 12,239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4.4%임

〈표 3 · 69〉 2022년 전국 초 · 중 · 고 · 특수 · 각종학교의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1,367	96.3	98.3	94.7	91.0	76.4	88.1	97.1	92.9	81.2	72.0	75.0	87.6
부산	633	97.8	99.5	97.2	96.7	92.6	94.5	98.9	93.4	98.4	97.2	95.7	96.5
대구	467	100	99.8	99.8	99.8	98.9	97.6	99.8	98.1	98.9	94.2	98.5	98.7
인천	551	97.1	97.5	97.5	96.7	91.5	93.5	98.2	87.5	91.7	73.9	79.7	91.3
광주	322	97.2	99.4	97.5	95.3	87.6	87.0	97.8	94.4	96.6	97.5	86.6	94.3
대전	313	99.4	100	100	99.7	90.4	96.2	100	97.8	99.4	97.4	90.7	97.4
울산	246	97.2	99.6	98.0	96.7	97.6	96.3	100	93.5	99.6	98.8	98.0	97.7
세종	101	99.0	100	99.0	97.0	93.1	99.0	100	94.1	100	99.0	96.0	97.8
경기	2,538	98.6	99.1	98.5	96.8	92.8	93.3	98.7	94.1	96.3	95.2	92.9	96.0
강원	660	97.4	97.4	97.9	96.7	94.5	85.0	96.1	82.3	96.2	93.8	91.5	93.5
충북	494	98.2	98.6	97.4	97.2	97.2	90.5	98.2	93.1	97.4	92.7	89.5	95.4
충남	738	98.0	98.5	97.2	95.5	86.3	83.9	98.2	92.3	95.3	94.6	84.8	93.1
전북	774	97.9	99.1	97.7	96.4	90.4	80.5	97.5	94.7	98.2	97.8	94.6	95.0
전남	865	95.8	97.6	95.6	95.1	95.4	69.7	96.9	94.7	96.2	94.5	88.6	92.7
경북	973	97.1	97.7	97.5	95.6	96.6	90.9	96.8	95.6	96.1	95.3	91.4	95.5
경남	1,001	98.8	98.9	97.7	96.3	98.2	85.8	98.8	97.2	97.6	95.6	93.5	96.2
제주	196	99.5	98.5	99.5	99.5	97.4	99.0	100	95.9	100	94.9	98.5	98.4
계	**12,239**	**97.8**	**98.6**	**97.5**	**96.0**	**91.8**	**88.6**	**98.1**	**93.6**	**95.0**	**91.9**	**89.7**	**94.4**

※ 단순 설치율 현황

– 설립 주체별로 살펴보면, 국·공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5.5%, 사립학교는 88.2%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70〉 2022년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국·공립	10,446	98.6	98.9	98.2	96.9	94.1	91.3	98.5	94.2	96.0	92.8	90.8	95.5
사립	1,793	93.5	96.9	93.1	90.7	78.3	72.9	95.5	90.0	89.5	86.2	83.3	88.2
계	**12,239**	**97.8**	**98.6**	**97.5**	**96.0**	**91.8**	**88.6**	**98.1**	**93.6**	**95.0**	**91.9**	**89.7**	**94.4**

–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95.0%, 중학교 94.0%, 고등학교 93.4%, 특수학교 99.0%, 각종학교 86.0%의 평균 설치율을 보임

〈표 3·71〉 2022년 학교급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초등학교	6,306	98.2	98.4	97.6	96.4	93.7	89.7	98.0	94.4	95.6	92.4	90.2	95.0
중학교	3,269	97.8	99.1	97.8	95.8	90.5	87.2	98.4	93.1	94.8	91.5	88.6	94.0
고등학교	2,391	96.8	99.0	96.7	94.9	87.9	87.4	97.9	91.8	94.1	91.1	89.5	93.4
특수학교	192	99.5	97.9	100	100	100	98.4	99.5	99.0	96.9	98.4	99.5	99.0
각종학교	81	92.6	92.6	88.9	90.1	86.4	79.0	92.6	82.7	86.4	75.3	79.0	86.0
계	**12,239**	**97.8**	**98.6**	**97.5**	**96.0**	**91.8**	**88.6**	**98.1**	**93.6**	**95.0**	**91.9**	**89.7**	**94.4**

–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특수학급 설치 학교는 평균 96.7%, 미설치 학교는 평균 89.9%의 설치율을 보임

〈표 3·72〉 2022년 특수학급 설치 여부에 따른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구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 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8,076	99.3	99.6	99.1	97.8	95.4	94.8	99.5	95.2	97.1	94.0	92.2	96.7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4,163	95.0	96.9	94.3	92.5	84.6	76.7	95.3	90.4	91.0	87.7	84.9	89.9
계	**12,239**	**97.8**	**98.6**	**97.5**	**96.0**	**91.8**	**88.6**	**98.1**	**93.6**	**95.0**	**91.9**	**89.7**	**94.4**

- 2022년 9월 기준 전국의 특수학교는 192교이며, 장애인 편의시설 평균 설치율은 99.0%임

〈표 3 · 73〉 2022년 특수학교 시도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단위: 교, %)

시도	학교 수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		안내시설			평균 설치 비율
		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출입구 (문)	복도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대변기	화장실 소변기	점자 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설비	
서울	32	100	93.8	100	100	100	96.9	96.9	96.9	93.8	96.9	100	97.7
부산	1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대구	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인천	10	9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99.1
광주	5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0.0	80.0	100	96.4
대전	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울산	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세종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경기	38	100	94.7	100	100	100	97.4	100	97.4	94.7	100	100	98.6
강원	9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8.9	88.9	88.9	97.0
충북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충남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북	1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전남	9	100	100	100	100	100	88.9	100	100	100	100	100	99.0
경북	8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경남	1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제주	3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	**192**	**99.5**	**97.9**	**100**	**100**	**100**	**98.4**	**99.5**	**99.0**	**96.9**	**98.4**	**99.5**	**99.0**

※ 단순 설치율 현황

향후 과제

- 특수·일반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및 담당자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점검·관리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1)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대학에 특별지원위원회를 두어 장애학생 지원 계획 수립,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 및 결정 등을 수행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
- 대학에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학생 지원, 편의제공,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등을 담당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0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학습보조기기 등 물적지원, 지원 인력 배치 등 인적지원, 취학편의 지원, 정보접근 지원, 편의시설 설치 등을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1조)
-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2조)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3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6,528명의 진학률을 보면, 특수학교 졸업생은 57.9%, 특수학급 졸업생은 56.1%,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졸업생은 61.6%이며 전체 진학률은 57.6%임

〈표 3 · 74〉 2023년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교 과정 졸업생 진학률

(단위: 명, %)

시도	졸업생 수				진학자 수													진학률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계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소계	
서울	332	428	144	904	231	35	2	4	33	17	30	50	58	265	118	77	460	50.9
부산	137	181	101	419	52	58	1	-	43	22	6	21	43	58	122	66	246	58.7
대구	141	175	93	409	74	94	3	-	34	16	4	19	46	78	147	65	290	70.9
인천	132	174	63	369	52	98	2	-	9	14	4	13	16	56	120	32	208	56.4
광주	79	82	40	201	30	30	1	1	13	5	6	14	27	37	57	33	127	63.2
대전	77	123	40	240	52	67	1	-	4	2	3	11	25	55	82	28	165	68.8
울산	57	86	29	172	35	52	-	-	12	9	2	5	13	37	69	22	128	74.4
세종	13	24	8	45	10	7	-	-	1	2	-	2	5	10	10	7	27	60.0
경기	358	931	231	1,520	109	320	3	-	64	44	2	96	83	111	480	130	721	47.4
강원	76	95	33	204	48	39	1	1	9	9	-	6	10	49	54	20	123	60.3
충북	95	148	61	304	69	45	1	-	23	13	6	12	19	75	80	33	188	61.8
충남	87	193	28	308	56	71	1	-	6	3	-	23	13	56	100	17	173	56.2
전북	103	101	54	258	48	37	5	1	12	8	1	8	18	50	57	31	138	53.5
전남	105	144	13	262	57	67	-	-	10	-	1	18	8	58	95	8	161	61.5
경북	114	189	60	363	90	72	3	-	35	12	-	18	23	90	125	38	253	69.7
경남	130	233	85	448	104	57	1	-	43	19	-	34	37	104	134	57	295	65.8
제주	40	47	15	102	13	24	-	-	6	-	-	3	12	13	33	12	58	56.9
계	**2,076**	**3,354**	**1,098**	**6,528**	**1,130**	**1,173**	**25**	**7**	**357**	**195**	**65**	**353**	**456**	**1,202**	**1,883**	**676**	**3,761**	**57.6**

- 1995년부터 장애학생의 대학교육 기회 확대 및 직업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2023년도에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포함)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전문대학 18개교 100명, 대학 85개교 834명으로 총 934명임

〈표 3 · 75〉 연도별 장애인 등에 대한 특별전형 대학 입학생 수

(단위: 교, 명)

학년도	전문대학		대학교		합계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실시대학	학생
2011	14(14)	60	89(77)	574	103(91)	634
2012	16(16)	97	90(84)	566	106(100)	663
2013	25(17)	185	97(89)	649	122(106)	834
2014	23(16)	84	98(80)	637	121(96)	721
2015	23(18)	54	98(84)	753	121(102)	807
2016	24(15)	48	100(88)	768	124(103)	816
2017	(15)	46	(97)	832	(112)	878
2018	(16)	56	(100)	888	(116)	944
2019	(16)	50	(71)	905	(87)	955
2020	(25)	95	(93)	898	(118)	993
2021	(24)	94	(107)	797	(131)	891
2022	(23)	87	(85)	832	(108)	919
2023	**(18)**	**100**	**(85)**	**834**	**(103)**	**934**

※ 괄호는 최종 등록기준 학교 수, 대상은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학교 제외)
※ 출처: 대학정보공시 4-가. 입학전형 유형별 선발결과('23. 6월 기준)

- 2023년 6월 기준 대학(원)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교육지원인력은 306개 대학에 2,436명임
- 교육지원인력 유형은 학내 이동 및 대필 등을 지원하는 일반교육지원인력과 수어통역, 속기, 점역 등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학습·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전문교육지원인력으로 나뉨

〈표 3·76〉 대학(원) 장애학생 교육지원인력 영역별 지원 현황

(단위: 교, 명)

구분		학교 수	교육지원인력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지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학생 지원	구분 없음	계
일반 교육지원인력	대학(원)	172	137	15	1,656	1,808
	전문대학	55	-	1	215	216
	원격대학	12	7	1	3	11
	소계	**239**	**144**	**17**	**1,874**	**2,035**
전문 교육지원인력 (원격 포함)	대학(원)	55	334	53	-	387
	전문대학	3	9	4	-	13
	원격대학	9	1	-	-	1
	소계	**67**	**344**	**57**	**-**	**401**
계		**306**	**488**	**74**	**1,874**	**2,436**

※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사업 신청서 접수 기준), 한국장학재단

향후 과제

-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보조기기 등 물적자원과 교육보조인력 등 인적자원 추진
- 장애인고등교육센터 지정·운영(2024년, 중앙 1개소)을 통해 장애학생에 대한 중앙차원의 체계적 지원* 체계 구축

* 주요센터업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3조제2항에 명신된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장애학생 지원 자료개발·보급 지원, 담당자 연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장애학생지원센터운영 지원, 장애 맞춤형 고등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2)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관련 법규

-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제2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 유도를 위하여 2023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실시 및 2024년 결과 공표 예정
- 조사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로서, 일반대학 325개 대학 415개 캠퍼스, 원격대학 20개 대학, 총 345개 대학 435개 캠퍼스 실시 예정
- 조사분야는 4개 영역으로 선발·지원 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 장애학생 만족도이며,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학교 자체 조사, 온라인조사, 서면조사, 현장면담조사로 진행
- 조사 지표는 『2021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지표개정 연구』와 『2022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 예비조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시행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현행화하였음

〈표 3 · 77〉 일반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정 지표(고등교육법 제2조제1~4호, 6~7호)

영역	부문	문항 수	
		부문별	영역별
일반현황	1. 대학 기본정보	8	16
	2. 장애학생 현황	3	
	3. 장애학생 입학 현황	2	
	4. 장애학생 지원 현황	3	
선발 · 지원 체제	1.1 선발 및 지원	2	22
	1.2 다양한 방법의 정보제공	5	
	1.3 지원 계획 및 체제	15	
교수 · 학습	2.1 교수 · 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	15	63
	2.2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	13	
	2.3 학습지원	18	
	2.4 평가지원	6	
	2.5 상담 · 진로 및 취업지원	11	
시설 · 설비	3.1 매개시설	5	29
	3.2 내부시설	6	
	3.3 위생시설	3	
	3.4 안내시설	2	
	3.5 강의실	2	
	3.6 도서관	2	
	3.7 강당	2	
	3.8 식당	2	
	3.9 학생지원시설	3	
	3.10 기타	2	
장애학생 만족도	4.1 선발 · 지원체제	3	19
	4.2 교수 · 학습	9	
	4.3 시설 · 설비	6	
	4.4 장애학생 지원	1	
총계	26개 조사 부문	149개 조사 문항	

〈표 3 · 78〉 원격대학의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개정 지표(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

영역	부문	문항 수	
		부문별	영역별
일반현황	1. 대학 기본정보	8	16
	2. 장애학생 현황	3	
	3. 장애학생 입학 현황	2	
	4. 장애학생 지원 현황	3	
선발 · 지원 체제	1.1 선발 및 지원	2	22
	1.2 다양한 방법의 정보제공	5	
	1.3 지원 계획 및 체제	15	
교수 · 학습	2.1 교수 · 학습 지원 체제 및 운영	15	54
	2.2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구비와 활용	7	
	2.3 학습지원	15	
	2.4 평가지원	6	
	2.5 상담 · 진로 및 취업지원	11	
시설 · 설비	3.1 매개시설	5	18
	3.2 내부시설	6	
	3.3 위생시설	3	
	3.4 안내시설	2	
	3.5 강의실	2	
장애학생 만족도	4.1 선발 · 지원체제	3	12
	4.2 교수 · 학습	8	
	4.3 장애학생 지원	1	
총계	20개 조사 부문	122개 조사 문항	

향후 과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컨설팅, 집합연수 등 후속지원 추진
-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정책수립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지표 개정연구 추진

3)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 관련 법규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평생교육법 제5조제2항)
- 국가는 장애인의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자치시, 시·군 및 자치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지정 및 지원할 수 있음(평생교육법 제15조의2제1항)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운영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 접근성 제고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를 2022년에 32개 → 2023년에 70개 지정·운영
  - 2022년도에는 총 778개 프로그램(지역별 특화, 일자리 연계, 장애인·비장애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28,109명의 장애인이 참여
- 전국 단위 정책 수립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실시(2023. 1.~)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 추진(2023. 1.~11.)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를 통한 내실 있는 평생교육 지원 환경 구축

  * 종사자 장애인 인권 등 역량강화(600명, 7시수), 공무원 장애인 의사소통 역량강화(200명, 6시수),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담당자 역량강화(150명, 10시수), 전문인력 양성 연수(300명, 17시수),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원연수(40명, 67시수)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은 전국 116개로 3,744명의 학습자가 1,460개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음(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응답기관 기준)

  *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의 설치)를 근거로 설치된 시설로 교육청 인가·등록 및 지자체 지정·위탁 기관

〈표 3·79〉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현황

(단위: 개, 명)

구분	기관 수	프로그램 수	학습자 수	교강사 수	종사자 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116	1,460	3,744	1,438	1,749
교육청 인가·등록	81	851	2,726	992	1,216
지자체 지정·위탁	35	609	1,018	446	533

※ 출처: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2021. 1. 1.~ 12. 31.기준)

향후 과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속 확대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개발·보급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및 장애인 문해교육 증진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
- 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 운영

5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실적

관련 법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특수교육교원의 연수,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 강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교육에 관한 실험・연구, 학습자료의 개발・보급, 특수교육 담당 교원 등의 연수,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함(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1)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관리자,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 특수교육교원의 수급 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3조)
- 특수교육대상자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특수교육교원 배치 및 특수교육기관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요 분석 연구' 및 장애학생을 위한 디지털 첨단 기술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해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장애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실제적이고 체계적인 양육・교육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온맘 사이트)'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부, 시도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의 협업을 통한 '2023 특수교육통계 및 연차보고서 발간'으로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기관 및 인력,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등 특수교육 관련 주요 통계를 제공하고 있음
- 2023년 6월, '디지털 기반 특수교육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국내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2023년 11월, '미래교육 전환 시대,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의 국제 동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임

- 특수교육교원, 관련 전문가들의 연구 의욕 고취 및 우수 논문 발굴 확산을 위해 '특수교육연구' 제30권 제1호, 제2호를 발간하여 특수교육 관련기관 등에 배부함
- 현장 사례, 국내외 최신 특수교육 정보 제공을 통한 현장의 전문성 확대 및 통합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현장특수교육' 제30권 1호, 2호를 발간하여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수학교, 유·초·중·고등학교 등에 배부함
- 특수교육 현장의 우수한 교육활동 실천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장애학생 지도 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사례 공모전'을 운영하고 있음
- 국내외 특수교육 관련 기관 및 방문자에게 우리원 안내, 역점 사업, 행사 등을 홍보하기 위한 리플릿(한국어, 영어, 일어) 발간 및 SNS(유튜브, 팬밴드 등)를 운영하고 있음
- 온라인 원격교육 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교수·학습 콘텐츠 및 교사, 보호자 등의 연수 콘텐츠 등 제작 및 행사 지원을 위해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음

〈표 3 · 80〉 국립특수교육원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실태조사	• 2023년 특수교육 실태조사(VI)	1,150
특수교육 연구 및 자료 발간	• 중장기 특수교육교원 수요 분석 연구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방안 연구 • 2023 특수교육통계 발간 • 2023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간 • 장애자녀 부모 지원 종합 시스템(온맘) 운영 • 「현장특수교육」 제30권 발간(연 4회) • 「특수교육연구」 제30권 발간(연 3회)	402
특수교육 학술교류 및 홍보	• 제30회 국내세미나 • 제29회 국제세미나 • 국내외 교류 협력 • 국립특수교육원 홍보(리플릿 발간 및 SNS 운영 등)	72
사업관리 및 대외업무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협의회 운영, 2022 회계연도 특수교육 성과분석 • 2023 장애학생 교육활동 실천사례 공모전 • 스튜디오 운영	246
계	**조사 1건, 연구 2건, 사업 10건, 행사 2건 등**	**1,870**

향후 과제

- ‘2023년 특수교육 실태조사(Ⅵ)’ 결과를 분석하여 특수교육 지원 정책의 기초자료 제공
- 특수교육 연구, 자료 발간을 통해 특수교육 정책 수립 지원 및 최신 정보 제공 등 현장 지원 강화
- 국내·국제세미나 등 특수교육 학술교류를 통해 특수교육 현안 과제 탐색 및 발전 방향 모색
- 유관기관과 교육 현장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강화를 통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의 대국민 홍보 및 현장성 강화

2)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과용도서 개발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연차적으로 개발하고 있음
  ※ 2024 적용 특수교육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32책, 전자저작물 10종), 2025 적용 특수교육 교과용도서(교과서 및 교사용지도서 134책, 전자저작물 62종)
- 일반학교의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 대상 평가 지원 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선택과목 재구조화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 2015 개정 및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을 위해 개별화교육,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등 후속지원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음

〈표 3 · 81〉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 · 교과용도서 관련 사업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교과용도서 개발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 2024 적용 교과용도서 개발(2/2년) - 2025 적용 교과용도서 개발(1/2년)	13,938
정책연구	• 특수교육대상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연구	80
교수·학습자료 개발	• 장애학생 통합교육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평가자료 개발	200
현장 지원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관리 및 현장 지원	-
계	**연구 1건, 교과용도서 166책 72종, 현장 지원 2건 등**	**14,218**

향후 과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학교 교육과정 안착을 위해 평가 방안 개발, 교수·학습자료 개발, 연수, 컨설팅 등 후속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 증액
- 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2023. 6., 교육부)에 따른 특수교육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 강화 및 관련 지원정책 마련

- 장애유형·특성 등을 반영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으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 운영 내실화 및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지속적인 학교 현장 지원 강화

3) 사회통합 실현을 위한 진로 · 직업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에서 사회로의 성공적인 전환 지원 및 학교(급)별 장애학생의 진로 · 직업교육 연계성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회 환경 변화 및 교육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현장실습 운영 기준 마련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사회통합 실현을 도모하고자 특수교육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진로 · 직업교육 현장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도를 위한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설계 및 진로 지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및 취업지원 강화를 위해 교육 · 복지 · 고용 연계 및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을 실시하고 있음
    ※ 국립특수교육원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장애인개발원 공동 주최
  - 특수학교 학교기업,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및 기타 신청 학교를 대상으로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관련 정책 및 사업, 지원 우수사례 등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진로레터'를 제공하고 있음

〈표 3 · 82〉 국립특수교육원 진로 · 직업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연구	• 장애학생 교과연계 전환역량 향상 프로그램 지원체계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개선 방안 연구	105
진로 · 직업교육 현장지원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역량 강화 연수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담당자 워크숍 • 장애학생 취업지원 유관기관 공동워크숍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지원 컨설팅 • 장애학생 진로 · 직업교육 '진로레터' 제공	26
계	**연구 2건, 현장지원 사업 5건**	131

향후 과제

-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지원과 다양한 진로 설계 지원을 위한 진로·직업교육용 콘텐츠 개발·보급
- 지역 및 여건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현장 지원을 위해 시도교육청 진로·직업교육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현장지원 사업 추진

4)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하여,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중고등학생용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전국 200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유형 분석 및 우수사례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 점검 결과를 수합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매뉴얼 제작·보급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문성 강화 및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음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의 은폐 및 축소 방지를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익명으로 관련 사안을 제보할 수 있는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를 시도교육청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장애공감 사진 및 홍보영상을 장애인식개선 자료로 제공하고, '제1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로 범국민 대상 장애공감문화를 조성하고 있음
-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활성화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표 3·83〉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인권보호 관련 연구·자료 개발	•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중고등학생용)	100
인권보호 현장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워크숍, 현장지원 결과 수합, 컨설팅 등) •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인권지원 관련 모니터링, 인권침해 사안 접수 등)	5
장애공감문화 조성	• 제1회 전국 장애공감 포스터 공모전 개최 • 장애공감문화 조성 관련 사업	11
교육자료 개발·보급 1건, 현장지원 사업 4건		**116**

향후 과제

- 범국민 대상 및 학교급별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지원의 내실화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료 현행화

5)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내실화를 위한 고등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장애대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1개의 연구와 1개의 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대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8주기 조사(선발·지원체제, 교수·학습, 시설·설비, 장애학생 만족도 등)를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고등교육 지원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대학 기반 장애인 고등교육과정 운영 사례 분석 및 개발 연구'를 수행하고 있음

〈표 3 · 84〉 국립특수교육원 고등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 총 345개 대학(일반대학 325개교, 원격대학 20개교, 캠퍼스 포함) 대상 • 학교 자체조사, 서면조사, 현장면담조사, 온라인조사 실시	400
대학기반 장애인 고등교육과정 운영사례 분석 및 모델 개발 연구	• 대학 기반 장애인 교육과정(학위, 비학위)운영 사례 분석 • 발달장애인 고등교육과정 운영 모델 개발	100
계	고등교육지원 2건	**500**

▣ 향후 과제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결과 공표 및 장애학생지원센터 담당자 집합연수 등 후속지원 추진
- 장애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내실화를 위하여 사회 ·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조사지표 개정 방안 연구 추진

6)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 현황 및 추진실적

- 2022년은 집합연수 54개 과정과 원격연수 61개 과정에서 각각 9,696명, 19,453명(총 29,149명) 이수함
- 2023년은 특수・일반 교원, 교육전문직, 학부모, 공무원 등 특수교육 관련인을 대상으로 집합연수 61개 과정, 원격연수 80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표 3 · 85〉 국립특수교육원 집합연수 실적(2023. 7. 31. 기준)

(단위: 명)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36	특수학교 전문상담 교사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렇게 준비합니다.(1기)	57	특수학교 교감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이렇게 준비합니다.(2기)	172	특수학교 교육과정 부장교사
	특수학교에서의 고교학점제 이해와 적용	237	특수학교 담당 교원(중등)
	특수학교(급) 등 학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역량 강화	28	특수학교(급) 등 학부모
	특수학교장의 학교경영 역량 강화	114	특수학교 교장
	교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 강화	285	특수학교(급)·재외한국학교·스쿨포유 담당교사
	특수교사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역량 강화	59	초·중등 특수학교(급) 교사 및 일반교사
	특수교사의 에듀테크와 디지털 활용 수업 역량 강화	140	특수학교(급)·재외한국학교·스쿨포유 담당교사
	유치원 특수학교(급) 교사의 학급 경영 역량 강화	156	유치원 교사, 장애전담보육교사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역량 강화	19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장애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육 지원 역량 강화	81	특수학교(급)·초중등학교·재외한국학교·스쿨포유 교사
	시·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교원 역량 강화	12	시·청각장애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유치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2기)	220	유치원 원장(감), 교육전문직, 재외한국학교장
	초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2기)	764	초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재외한국학교장
	중·고등학교 관리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2기)	599	중고등학교 교장(감), 교육전문직, 재외한국학교장
	유치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2기)	150	유치원, 재외한국학교 교사
	초등학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2기)	180	초등학교, 재외한국학교 교사
	중·고등학교 교사의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2기)	172	중·고등학교 재외한국학교 교사

구분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협업 연수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1기)	20	시각장애 교원
	시각장애 교직원의 K-에듀파인 웹접근성 활용 역량 강화(2기)	12	시각장애 교원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시스템의 이해	19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교사
	건강장애학생 대상 교수·학습 및 지원 역량 강화	29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숲 안에 교실'(1기)	23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숲 안에 교실'(2기)	26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숲으로 가자'(1기)	35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숲을 보는 숲스쿨링'(1기)	28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특수교사를 위한 '숲을 보는 숲스쿨링'(2기)	20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전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장애공감문화 조성(1기)	69	인권지원단 경찰위원
	일반직 공무원의 장애공감문화 조성	26	학교 및 교육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
	병원학교 교사 역량 강화	25	병원학교 담당교사
	특수교육 의료인력 장애공감문화 조성	7	특수학교(급) 의료인력(간호사 등)
계		3,820	-

〈표 3 · 86〉 국립특수교육원 원격연수 실적(2023. 7. 31. 기준)

(단위: 명)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직무연수	(신규) 교원을 위한 장애학생 부모상담	256	교원 등
	(신규) 교원을 위한 시각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24	교원 등
	(신규) 교원을 위한 청각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28	교원 등
	(신규) 교원을 위한 지적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223	교원 등
	(신규) 교원을 위한 지체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79	교원 등
	(신규) 교원을 위한 자폐성장애학생 부모상담 방법	363	교원 등
	특수교육 디지털 교육자료 만들기	33	교원 등
	특수교육 영상 교육자료 만들기	11	교원 등
	블렌디드 특수교육 수업하기	18	교원 등
	특수교육 지원인력 관련 규정과 근로계약의 이해	10	학교관리자
	장애대학생 지원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28	학교관리자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와 복무 관리	46	학교관리자
	실시간 쌍방향 특수교육 수업하기	9	교원 등
	특수교육 수업전문성 향상	58	교원 등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과용 도서 현장 활용	71	교원 등
	장애학생 국어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3	교원 등
	장애학생 수학과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0	교원 등
	장애학생 원격수업 운영 역량 강화(기초)	43	교원 등
	장애학생 진로 직업교육 역량 강화	73	교원 등
	장애학생 안전교육을 위한 첫 걸음	149	교원 등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수업전문성 강화	167	교원 등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기초)	146	교원 등
	행복한 교실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지원(심화)	57	교원 등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	173	교원 등
	교사를 위한 장애유형별 지도 역량 입문	79	교원 등
	시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4	교원 등
	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16	교원 등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	257	교원 등
	모두를 위한 통합학급 운영(기본)	243	교원 등
	초·중등학교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82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유치원)	541	교원 등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초등학교)	728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중학교)	437	교원 등
	현장 중심의 통합교육(고등학교)	287	교원 등
	(학부모) 시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3	공통
	(학부모) 청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2	공통
	(학부모) 지적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94	공통
	(학부모) 지체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130	공통
	(학부모) 자폐 및 정서장애아동 양육 및 진로지도	238	공통
	(학부모) 장애아동 의사소통의 실제	741	공통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는 긍정적 행동 지원	83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전문성 강화 기본	1,397	공통
	사회복무요원 장애학생 활동지원 전문성 강화	1,196	공통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고급	904	공통
	NEW! 장애학생의 인권과 성교육	799	공통
	슬기로운 장애인식개선 생활	408	공통
	장애인 편의시설의 이해	51	공통
	미디어교육과 저작권 이해	22	공통
	보조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현장 활용	32	공통
	시각장애학생 보행지도	56	공통
	한국수어의 이해와 활용(기초)	85	공통
	적응행동검사 바로 알기	80	공통
	2018 기초학습능력검사(NISE-B·ACT) 실시방법의 이해	72	공통
	정서행동검사 바로 알기	71	공통
직무연수(공동활용)	교원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역량 강화	16	교원 등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교사 소통	6	교원 등
	영상의 시대! 교육 크리에이터를 꿈꾼다	5	교원 등
	당신을 빛나게 할 스피치 전략	15	교원 등
	그림책으로 마음 열기	33	교원 등
	쉼(,)있는 행복 놀이	12	교원 등
	교육과정 속에 퐁당 빠진 SW교육	7	교원 등
	1년을 알차게! 학급행사 길라잡이	9	교원 등

영역	과정명	이수인원	대상*
	초등 저학년을 위한 한글과 셈하기, 쉽게 제대로 가르치기	53	교원 등
	학생이 중심이 되는 학교 공간 혁신하기	5	교원 등
	15色 보석같은 수업 레시피	7	교원 등
	도란도란 생태놀이 왁자지껄 우리 학급	23	교원 등
	놀이로 즐거운 수학	21	교원 등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의 실제	187	교원 등
	학생정신건강 이해 및 관리	194	교원 등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78	교원 등
	수업혁신을 지원하는 미래형 교육과정 디자인	57	교원 등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만들기와 놀이 게임으로 배움이끌기	233	교원 등
	장애인 학대 신고자 의무교육	522	공통
	알기 쉬운 이해충돌법	17	공통
	평등한 일상, 폭력예방교육(일반)	61	공통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를 위한 교원 인식개선 연수	11	공통
	아이를 존중하는 긍정 양육	71	공통
	내 손에 쏙! 온라인 수업 활용하기	16	공통
	부모의 자존감	38	공통
자격연수	재활복지 미전환 치료교사 자격전환 연수	15	해당 교원
계		13,008	-

* 대상 구분: 교원 등(교원, 교육전문직, 지원인력), 공통(학부모 등 일반 국민 포함)

향후 과제

- 급격한 기술 진보와 디지털 교육 실시, 특수교육 관련 영역 확대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특수・일반교육 교원의 장애학생 교수・학습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운영
-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교원·범국민 대상 연수 확대
- 2022년 교육과정 개정과 교과용도서 편찬에 따른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수요자의 연수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집합 및 원격연수 등 연수 방법 다양화

7)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교육 정보화 자료 개발 및 정보화 연구,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및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개발과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을 위한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사업인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등 3개 내역사업에 대한 2022년 운영 결과 이용자 만족도는 77.7점과 접속 횟수 2,463,902회를 달성함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학교 및 가정이나 병원 등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클립형 동영상 100종을 개발하여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인 에듀에이블(eduable.net) 등을 통해 지원 예정

〈표 3·87〉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현황

사이트 명	지원 내용	주 이용자
에듀에이블 (eduable.net)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콘텐츠 운영 –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수학습 자료 – 장애학생 클립형 동영상 수업자료 제공 – 수업지원 콘텐츠 및 수업 자료 제공 •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탑재, 관련 정보제공 – 대한민국 1교시, UCC 탑재 및 홍보 • 시각장애학생·교사용 대체자료(EBS 등) 제공 – EBS 수능특강 및 수능완성, 학습참고서 대체자료 제공	학생, 교원, 학부모 등

- (장애학생 정보격차 해소) 장애학생의 비대면 디지털 기기·상용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활용 교육콘텐츠 4종(공공기관·문화시설·의료기관·유통점포)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정보 관련 최신 동향 파악을 위한 연구보고서 1종 발간 예정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장애학생의 정보화 역량 신장 및 여가생활 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문화행사 등 전국 단위의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운영과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지원을 위한 교육 자료 2종(AI 융합교육, 메이커 융합교육)을 개발하고 있음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플랫폼 운영) 장애학생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실물 교재와 디지털 교재 등 다양한 유형의 학습자료 제작·관리와 병행 활용이 가능한 디지털 교육 지원 플랫폼(class.nise.go.kr) 운영 예정
  -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과 연계 사용이 가능한 진로와 직업 멀티미디어 콘텐츠 8종 개발, 지체·발달장애학생 다감각적 수업 지원을 위한 과학과 실감형 콘텐츠(AR) 20종을 개발하여 보급 예정
  - (실감형 체험교실 및 체험버스 구축·운영)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학생에게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78개 운영(2023년 5개 포함) 및 체험버스 운영(2023년 70회)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장애 청소년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SKT와 협력하여 서울·경기 지역 40개 특수교육기관 대상 무인정보 단말기 및 AI 활용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 대구, 경남 지역 특수교육 기관으로 확대하기 위해 참가 기관을 모집하고 있음

〈표 3 · 88〉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 정보화 및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 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사이트 운영 • 장애학생 정보화 교육 자료 개발 • 특수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 구축·활용 방안 연구 •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 장애학생 소프트웨어 교육 자료 개발	1,269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 열린배움터(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플랫폼) 운영 • 발달장애학생 기본 교육과정 콘텐츠 개발 • 지체 및 발달장애 실감형 자료 개발 •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운영 • 실감형 콘텐츠 체험버스 운영	3,402
기타	• 학술정보관 운영 • 전산정보시스템 관리·운영	479
유관기관 협업	• 장애학생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 사업 지원(SKT)	-
계	**연구 1건, 개발 4건, 운영 6건, 행사 1건, 협력 1건**	**5,150**

향후 과제

- 장애학생 교육 정보화 및 디지털 교육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 필요
  - (특수교육 정보화 지원) 장애학생 학습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교육 지원이 가능한 맞춤형 교수·학습 콘텐츠 개발과 교육 정보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확대 추진 필요
  -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지원) 제4차 산업혁명 및 미래 교육환경에 장애학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첨단 기술 기반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

8) 생애주기별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

■ 현황 및 추진실적

- 평생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설치 및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

>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주요 업무(평생교육법 제19조의2)
> - 계획: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계획
> - 조사: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 - 연구・개발: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및 의사소통 도구 개발
> - 교육: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연수, 공무원의 장애인 의사소통 교육
> - 협력: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제 구축, 장애인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각급학교 및 평생교육기관 지원

- 장애인 평생교육 내실화를 위해 2023년에는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1건,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콘텐츠 각 3종,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및 온라인 콘텐츠 각 1종 개발, 장애인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2종 개발 및 장애인 문해교육 교과용 도서 보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추진 활성화를 위한 인적 기반 마련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9회)'와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장애인 평생교육 이해력 향상 및 직무 수행 능력 강화를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5회)',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제정 고시(교육부 고시 제2020-247호, 2020.12.30.)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원연수과정(2회)'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전국 단위의 기초 통계 자료 확보를 위해 '2023년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음
- 지역에 기반한 장애인의 역량 개발과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을 위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공모를 통해 70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표 3 · 89〉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사업 내용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 내용	예산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협의회 • 장애인 평생교육 누리집(평생배움세상) 운영	5,450
연구 ·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 장애유형별 평생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자료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온라인 콘텐츠 개발 •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과용 도서 보급 • 장애인 문해교육 온라인 콘텐츠 개발	1,450
교육 ·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 •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교원연수과정 연수	100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500
센터 운영	•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운영	54
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4건, 연구 · 개발 6건, 연수 3건, 조사 1건, 센터 운영 1건**	**7,554**

〈표 3 · 90〉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 지자체

연도	계속지원	신규지원
2020 (10개)	-	〔부산〕 서구, 부산진구, 남구, 사하구, 연제구, 사상구 〔경기〕 광명시, 오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군산시
2021 (19개)	-	〔부산〕 동구 · 동래구, 서구 · 사상구, 연제구 · 수영구 〔대구〕 수성구 · 달서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2022 (32개)	〔부산〕 동구, 동래구, 서구, 사상구, 연제구, 수영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남〕 순천시 (19개 지자체)	〔서울〕 서대문구 〔부산〕 남구, 영도구 〔대구〕 동구 〔광주〕 남구, 북구, 서구 〔경기〕 광명시,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전북〕 전주시 〔경북〕 김천시 (13개 지자체)
2023 (70개)	〔서울〕 서대문구 〔부산〕 남구, 동구, 동래구, 사상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영도구 〔대구〕 동구, 수성구, 달서구 〔광주〕 남구, 북구, 서구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경기〕 광명시, 김포시, 수원시, 안산시, 의정부시, 이천시, 용인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청주시 〔충남〕 당진시, 아산시 〔전북〕 김제시, 전주시 〔전남〕 순천시 〔경북〕 김천시 (32개 지자체)	〔서울〕 노원구, 은평구, 영등포구 〔부산〕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해운대구, 기장군 〔대구〕 서구 〔인천〕 계양구, 서구 〔광주〕 광산구, 동구 〔대전〕 서구 〔울산〕 울주군 〔경기〕 구리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성시, 여주시, 오산시, 평택시, 하남시, 화성시 〔강원〕 강릉시, 동해시 〔충북〕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진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나주시 〔경북〕 경주시, 상주시 〔경남〕 남해군 (38개 지자체)

향후 과제

-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규모 확대
- 장애인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장애인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온라인 콘텐츠 등 개발 · 보급 확대
-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연계체제 구축 등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을 구축

2023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 Ⅰ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운영계획

- 서울특별시교육청 / 145
- 부산광역시교육청 / 155
- 대구광역시교육청 / 166
- 인천광역시교육청 / 176
- 광주광역시교육청 / 186
- 대전광역시교육청 / 199
- 울산광역시교육청 / 211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225
- 경기도교육청 / 234
-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 244
- 충청북도교육청 / 254
- 충청남도교육청 / 265
- 전라북도교육청 / 279
- 전라남도교육청 / 289
- 경상북도교육청 / 300
- 경상남도교육청 / 313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323

서울특별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서울특수교육방향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가. 특수학교(급)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 기회 확대

학교명	예정지	장애영역	개교 예정
서울동진학교(가칭)	중랑구 신내동 일원	지적장애	2025. 9월

나) 2023 특수학급 설치 현황

연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학교	학급
2022	129	140	475	804	212	312	100	274	916	1,530
2023	133	146	485	832	214	322	102	284	934	1,584
증감	4	6	10	28	2	10	2	10	18	54

2)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

가) 특수학교 설립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른 설립 추진

나) 진로와 직업 교과 중심의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

다)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인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3) 학교장 선발 특수목적고등학교 입학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내 사회통합전형 학교: 25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원 외 특별전형 학교: 10교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대안교육 위탁

- 개별화교육지원팀 회의를 통해 다각적인 지원 후 위탁 의뢰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강화

가)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기능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협력 체제 구축

다)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전문화·특성화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및 역량 강화

2) 특수교육대상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

가)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강화

-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 학교급 확대 적용(고 → 유·초·중·고)

나) 장애의 조기발견 및 개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진단·평가 운영 내실화

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무상·의무교육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모색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지원단 구성·운영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기반 조성

- 2022 개정 교육과정 교원 역량 강화 지원 연수 운영
- 2022 개정 교육과정 대비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다) 학교 여건 및 장애 특성을 반영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 특성을 반영하여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모형에 따른 단계적 도입 지원

라)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지원 내실화

- 학교 특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장학 지원
- 교육지원청별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학교 신규 및 저경력 교사 임상장학, 멘토링 계획 수립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가)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나) 개별화교육 운영 내실화

3) 에듀테크 기반 교육과정 운영 확대

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에듀테크 교육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인공지능(AI)융합 교육환경 마련
-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ELC) 운영 활성화

나)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 서울시교육청 온라인 SW교육 플랫폼, 교수학습 플랫폼 뉴쌤 활용

다) 일상생활 디지털 접근성 교육 활성화

- 학교(급)별, 교과별, 장애특성별 정보화교육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건전한 여가생활 개발을 위한 장애특성별 e스포츠 교육 실시

4) 자율·협력 중심 교원 성장 지원

가) 교사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을 키우는 맞춤형 연수 확대

- 저경력(3년 미만) 교사 대상 수업 성장 자율연수
- 교직단계별 교육과정 디자인 역량 강화 연수
- 수업코칭 전문가 과정 직무연수 등

나) 스스로, 함께 연구하고 성장하는 교원 공동체 운영 및 지원

- 특수학교 수업성장 네트워크 운영
- 안정적 교원 수업 성장 기반을 위한 수업 멘토 지원
- 협력적 연구 활동을 위한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내실화

다) 협력적 수업 성장을 위한 수업나눔 활성화

- 특수학교 교장(감) 수업성장 워크숍 운영
- 수업나눔축제를 통한 수업나눔 참여 기회 확대

라) 특수교사의 전문성 신장 및 회복력 증진 지원

-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프로슈머 연수 운영
- 특수교육교원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학교 및 교육청 연수

마)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

-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3 개정판) 활용
-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심리·정서적 소진 상담 코칭 프로그램 지원

나. 진로·직업교육 및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1)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가)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및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지원

나)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및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원

다) 발달장애인훈련센터의 효율적 운영

라) 장애학생 희망일자리사업 운영 내실화

마)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사업 운영

바)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과정 운영 지원

2)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아르떼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조금은 특별한 운동으로 하나되는 우리'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체육 활동(텐덤사이클) 지원

나)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활용
- 차세대 나이스 기반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운영 지원 및 학생 건강·체력관리를 위한 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학교 25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1) 순회교육 운영 내실화

가) 특수학교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실시

나) 통합교육지원 서울형 순회교육 강화

- 특수교육대상자, 보호자, 학교의 요구에 따른 맞춤형 순회교육 운영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 지체중복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나)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다) 건강장애학생 선정 및 교육지원 제공

-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꿀맛무지개교실) 지원
- 건강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안전 강화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안전교육 편성·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특수교육대상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3.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가.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

1) 함께 다지는 통합교육

가) 특수교육과 일반교육이 함께 추진하는 통합교육 정책 실행

- 통합교육 현장과 밀착된 정책과제 연구 추진
- 정책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실행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통합학급 지원 확대

- 다양한 학생들의 의미있는 배움이 살아나는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역량 강화

2) 함께 성장하는 통합교육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 더공감교실 운영: 16교
- '십분의 기적' 프로젝트 운영으로 상시적 협의 문화 조성

> *** 십분(十分)의 기적이란?**
>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학교생활 전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십분 협력하여 만들어가는 수업 혁신 문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실행역량 강화

-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통합교육 연수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교육 역량 강화 연수
-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실행자료 개발 및 보급

다) 맞춤형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특수·일반교육교원 협력체제 구축 및 공동 연구·실천을 위한 통합교육공동체 운영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 운영: 11기관
- 현장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 교육지원청 학교급별 교사 네트워크 구축 확대

나.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지원체제 강화

1)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가)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교육 강화

-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학교 내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다)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지원
-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및 문화행사
- 장애공감문화 공모전을 통해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구축·운영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 점검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조항 신설·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11단(교육지원청별 각 1단)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지원 기능 수행
-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 더봄학생 지원 강화

다) 장애인권교육 강화

- 장애학생 대상 자신의 권리 인식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 장애학생 대상 학기별 1회 이상 (성)폭력 예방 교육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1)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31교(특수학교 28교, 일반학교 3교)
2) 개별 학생을 위한 행동중재 특별지원 체계화
3) 교원 및 학부모 행동중재 실행 역량 향상 지원
4) 다양한 자료 및 플랫폼을 활용한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 지원 확대

가)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실행자료 개발 및 보급

나) 서울 PBS 누리집(홈페이지) 운영

다) 「서울 PBS 데이터 관리 플랫폼」 구축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1)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치료지원 내실화

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다양화
다)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편의 지원

2)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특수교육실무사, 사회복무요원) 역량 강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 지원인력 인건비 편성

3)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제 강화
가) 방과후학교 운영
나)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및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4)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가)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및 장애 특성을 고려한 안전·편의시설 확충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다.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교육 교육전문직원 역량 강화
2) 창의적이고 특색 있는 학교 운영 지원
3) 특수학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운영비, 신·증설비, 이전비, 환경개선비 등

Ⅲ 향후 추진 계획

1. 미래 특수교육 기반 조성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1) 특수학교 신설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 서울동진학교 외 특수학교 미설치 자치구에 특수학교 설립 계획

2) 특수학급 신·증설을 통한 통합교육 여건 확충

성과지표	목표	단위	연차적 실천 계획					계
			2023	2024	2025	2026	2027	
특수학급 신·증설	259	학급	48	50	52	54	55	259

3) 특수학교(급) 공간 재구조화
- 미래 특수교육에 필요한 다양하고 유연한 학교공간 조성
- 특수학급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서울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교육울타리 구축

3)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사업 운영 및 역량 강화

다.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도움자료 개발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격차 해소 지원

2.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가) 에듀테크 활용 교수학습 수업사례 나눔 및 연수 확대

나) 클라우드 기반 특수교육 학습공유공간(SELC) 플랫폼 고도화

다) 인공지능(AI) 활용 미래교실 운영

라)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2)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및 관리 체계화

3) 개별 맞춤형 미래교육 실행을 위한 교원 성장 지원

나.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진로·직업 체험 확대

2) 희망일자리 사업 및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취업 지원 내실화

3) 미래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4) 지역사회 유관기관 연계 문화예술 활동, 체육 활동 활성화

다. 다양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확대

1) 순회교육 지원 유형 다양화

2)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강화

3.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통합교육

가. 교육과정 중심 협력 기반 통합교육

1) 더+통합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실천 방안 모색

*더 통합교육 정책

정책 수립 시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장애학생 지원 방안을 함께 고려하여 장애학생에 대한 의도치 않은 차별 예방 및 통합교육의 내실화 도모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교수 활성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보편적 학습설계 실행 지원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협력교수 기반의「더공감교실」운영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업 프로젝트「십분의 기적」운영

나. 일상 속 장애공감문화 정착

1) 교육과정 연계 장애이해교육 활성화
- 수업에서 다양성을 가치 기반으로 하는 장애이해교육 실천사례 발굴 및 보급

2)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 운영 다양화
- 학생 주도 장애공감문화 활성화 프로젝트 운영학교 확대

3)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을 위한 점검표를 활용한 학교별 자체 점검

4. 성장과 발달을 돕는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현장중심 행동중재 지원체제 강화

1)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체제 내실화: 교원학습공동체, 행동중재특별지원단
2) 학교차원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 관련 데이터 관리, 실행도 점검
3) 서울PBS 누리집 활성화

나. 지속가능한 특수교육 지원시스템 내실화

1) 굳센카드 이용자 편의를 위한 모바일 결제 도입 및 홈페이지 개선
2)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
3)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체제 개선: 서울시보조기기센터와 연계
4)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지역자원 활용, 재능기부 등 자원봉사자 활용
5) 방과후학교 활성화, 돌봄교실 확대 운영

부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기본 방향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특수교육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강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홍보: 교육청 홈페이지(연중), 상담(수시)

가) 특수교육지원센터별 유치원 의무교육 상담 담당자 지정・운영

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318명), 사립(223명)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지원 체계 구축

가)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협의체 운영(1회 이상)

나)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3) 의무교육 이행 철저: 홍보, 상담,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지원,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등 취학 의무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적령 취학 독려

4) 초등학교로의 입학 적응 지원 강화

가) 20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연수(5회)

나) 초등학교 입학 전·후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257교, 522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체계 내실화: 진단·평가 담당자 협의회(1회), 진단·평가 위원 전문가 연수(1회)

2) 선정·배치 절차 체계화: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준수

3)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에 대한 학교 지정·배치: 취학의무 면제 및 유예자의 취학 또는 재취학 시 적정 절차에 따른 학교 지정·배치 추진

4)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선정·배치 및 정보 관리: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처리 간소화 및 결과 처리 실시간 반영

5) 미래 성장 중심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 교사 연수(1회), 담당자 협의회(2회)

6) 특수교육지원센터 거점 기능 강화 : 6개(시각, 청각, 지체, 발달, 장애영유아, 진로·직업탐색)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교: ('22) 15교 362학급 → ('23) 15교 371학급

나) 특수학급: ('22) 518교 624학급 → ('23) 524교 640학급

다) '24 특수학급 신(증)설 수요 조사('23. 5월)

2) 특수학교(급) 학급 신·증설 및 환경개선 지원

가) 학급 신·증설에 따른 시설·설비 설치 및 교재·교구 구입비 지원('23. 28학급)

나)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비 지원('23. 28학급, '23.~'26.까지 총 110학급)

3) (가칭) 부산특수교육원 설립: 부산특수교육원 설립을 위한 협의 지속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지도역량 강화 연수 지원

나) 수업혁신사례연구대회, 전국특수교육연구대회 등 연구대회 참여 권장

2) 특수교육지원단 운영

가) 5개 영역(교육과정, 수업, 통합교육, 자유학기, 행동중재), 47명 구성

나) 특수교육지원단 협의회(5월) 및 팀별 컨설팅·연구활동(연중) 운영

3) 특수교육 정책연구학교 운영 및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조직·운영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3교), AAC(보완대체의사소통) 연구학교(1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1교)
4) 특수교육 관련 연구회 조직·운영
가) 특수학교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15교, 88개팀, 671명)
나) 교육연구회 운영·지원: 고교학점제(1팀), 통합교육(14팀), 긍정적 행동지원(15팀), 인권지원(2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6팀), 지원단 역량강화 워크숍 운영(1회)
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5개원), 장애유아 지도교사·학부모 연수(10회)
다) 통합교육지원실 구축(5교)
2) 통합교육 교육활동 지원
가) 유치원 통합학급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150개원)
나) 대학 연계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운영(41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이수 권장
나) 일반학교 교원의 연수 과정에 통합교육 관련 교과목 확대·편성 권장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통합교육 협의회 운영, 장애학생 지원 전담부서(담당자) 지정 운영
나) 통합교육 연구학교(3교), 통합교육 중점학교(10교) 운영·지원
다)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유치원) 통합교육 컨설팅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각급 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실 실시(2회)
나) 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1회)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世울림 교육활동 지원: 그리기대회 및 공모전(1회), 인형극(100회), 장애이해교실(273회), 장애인식개선 영상 콘텐츠 보급(중, 고)

나) 장애인의 날 특별기획 콘텐츠 활용 장애이해교육: 장애이해 동영상(유), 대한민국 1교시(초), 장애이해 드라마(중, 고)

3) 장애공감문화 조성

가)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형 문화공연 실시: 70교 예정(9~12월)

나)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정다운학교 시범 적용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世울림 그리기대회 및 공모전 우수작품 전시회 및 순회 전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가)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교육(60교)

나) 교사, 학부모 대상 장애학생 인권보호 연수: 교사(200명), 학부모(150명)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실천 프로그램 운영 학교 지원(2교)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가) 6팀(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74명으로 구성

나) 인권침해 예방컨설팅 및 사안별 지원: 정기지원(107회), 특별지원(39회)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존중 예방상담 프로그램 운영: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30교, 242명)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후상담 프로그램 운영(16명)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강화

가) 찾아가는 장애학생 대상 성, 인권교육(특수학급 설치교 60교)

나) 유아 대상 장애인권보호 및 범죄예방 인형극(23개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학교 미래형 다목적 직업훈련실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실습·기자재 보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지원(15교)

나) 특수학교(급) SW·AI 활용 수업 교육연구회 운영(2팀)

2)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가) 장애학생 대상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 및 디지털 활용 교육 강화

나)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특수학교 운영(2교)

다) 인공지능(AI) 교육 선도특수학교(4교), ABM 융합교육 시범특수학교(1교)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교육공동체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감염병 상황, 중도중복장애학생 등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운영

다) 특성화된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 진로교육집중학기(년)제(1교), 직업교육중점학교(1교), 직업교육 특성화(2교), 전공과(9교, 38학급) 운영

라) 자유학기(년)제 운영: 컨설팅단, 교과연구회(13팀) 운영

마)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 지원: 핵심교원 연수(2월, 40명)

2) 고교학점제 운영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1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협의체 운영(1팀)

3) 특수(통합)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특수학급 교육(운영) 계획 수립('23. 3월)

나)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4회)

다) 특수학급 담당 교원의 통합교육 내실화 노력 및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이수 철저

라) 특수학급 교재·교구 구입비 및 운영비 예산편성

마) 통합교육계획 수립·운영, 통합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적정 배치 및 일반학생수 감축(1~3명) 권장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현황 조사: 특수교육대상자 배치교(749교), '23. 4월

나)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포함하여 작성

다) 개별화교육계획 유형: 3유형(교과, 생활지원, 교과 및 생활지원)

2) 개별화교육 운영

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편성·운영

나) 개별화교육지원 컨설팅: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학교컨설팅지원센터 활용

라. 특수학교(급) 장학

1) 특수학교 장학

가) 학년초 현장지원 장학: 학교교육계획 및 교육과정 편성 협의('23. 4월, 15교)

나) 학기중 현장지원 장학: 교육실습, 방과후학교, 지원인력 운영, 학교 현안 등 협의

다) 지구자율장학협의회 운영: 2회(수업공개 및 주제·사례발표)

라) 학교 내 자율장학: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등

2) 특수학급 장학

가) 특수학급 현장지원 장학: 특수학급 교육과정 및 통합교육 지원, 특수학급 신·증설, 노후 환경 개선, 현안 등 협의

나) 특수학급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운영: 46개 지구, 4회

3) 학교컨설팅지원센터(https://consulting.pen.go.kr) 활용 컨설팅 장학

가) 영역: 교육과정, 수업,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생활지도, 긍정적 행동, 통합교육 등

나) 절차: 컨설팅 신청 ⇨ 컨설턴트 수락 ⇨ 신청인과 컨설턴트 간 일정 및 방법 상호협의 및 진행(컨설팅은 대면 실시) ⇨ (컨설턴트) 컨설팅 결과 등록 ⇨ (신청인) 만족도 등록

마. 순회교육지원 강화

1) 중증장애학생 지원 순회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순회교육 운영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수업일수(170일), 수업운영 형태(방문수업, 원격수업, 가정학습, 체험학습)

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과정, 특색교육, 인성교육 등과 연계한 학교 문화예술교육 운영

나) 특수학교(급)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 특수학교(급) 30교

2) 체육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급) 체육 활동 특화교실 운영: 특수학교(급) 16교

나) 장애학생 체력회복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교 15교

다) 제17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11종목, 선수 86명

3)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초중등학교 교사 통합체육 연수 강화

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교육 여건 개선(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내 의료적 지원 사업 운영(2교: 파견형 1, 순회형 1)

나) 학교-의료기관 간 업무 협약(MOU) 체결을 통한 전담 간호사 운용

3)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2개소)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동아대병원학교, 인제대부산백병원학교, 인제대해운대백병원학교)

나) 원격수업 위탁기관(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운영 지원

다) 학교 복귀 전·후 프로그램 운영(5교)

라) 건강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교사(2회), 학부모(1회)

5) 행동중재 지원

가) 특수학교(급) 긍정적 행동지원 프로그램 운영: 학교(15교), 학급(20교)

나) 심각한 행동문제를 가진 학생의 집중적 행동지원: 일반학교 20명(6회기)

다)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및 컨설팅 운영: 현장전문가(11명), 자문위원(10명)

라)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운영: 15명, 대학부설연수원 위탁

아.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계절학교) 운영

가) 특수학교 방학후학교 운영(15교, 316개 프로그램, 1,590명)

나) 특수학급 방학후학교 운영(139교, 161개 프로그램, 720명)

다) 유관기관 연계 방과후학교 운영(11개 기관, 17개 프로그램, 92명)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특수학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6교, 14학급)

나)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유아 참여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22개원)

다) 특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참여 초등 돌봄교실 운영 지원(11교)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증원 배치: ('22) 784명 → ('23) 810명(사회복무요원 포함)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지원(시교육청 주관 집합연수 5회 등)

2) 치료지원: 물리치료 등 총 11개 영역, 마중물카드를 통한 지원(4,725명)

3) 통학 편의 지원: 유치원~고등학교 지원 범위 확대, 연3회 학기별 지원(2,622명)

4) 보조공학기기 및 학습보조기기 지원: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214회)

5) 특수교육대상자 가족 지원: 찾아가는 가족지원(40가족), 가족상담(80가족)

차.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급) '안전계획' 학교교육계획 반영 및 수립('23. 2월)

나) 장애학생 학교 담당자(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운영
다) 장애학생 등·하교 시 보호자와 학생 안전 사항 인수인계 철저
라)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전원 및 특수교육실무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마) 장애학생 교육실습, 현장체험학습 시 안전사고 예방 강화

2) 학교 안전 내실화
가) 초등 1, 2학년 '안전한 생활' 교과를 통한 안전의식 함양
나) 7개 안전교육 표준안에 따른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다) 아동학대, 가정폭력, 실종·유괴 예방
라) 특수학교 안심 알리미·학교안전 지원 사업: 학생 등하교 위치추적 단말기(이용료), 통학버스 위치 추적 서비스, 운전자 스마트폰 제어 시스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장치(어라운드뷰 및 후방감지센서) 지원

카.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1) 특수학교(급) 직업교육 지원
가)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나)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3교)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지원: 부산혜성학교 「꿈이룸」, 부산해마루학교 「에코해마루」
라) 장안실습장 활용 농업체험 직업교육 운영 지원(부산해마루학교)
마)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부산전자공고)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13교, 75명)
바) 직업교육 거점센터(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학급(고) 대상(28교, 199명)
사)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 지원: 특수학교(급) 고·전공과 학생 대상(학교 참여형: 20교, 254명, 개인 참여형: 5교, 10명)
아) 고등학교 특수학급 직업교육 설비 지원: 특수학급 설치 고등학교(5교)
자) 장애학생 데이터 라벨러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고등학교 이상 특수학교(급)(10교)
차) 찾아가는 진로·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특수학급 설치 초, 중학교(50교)
카)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선택 다양화를 위한 진로 정보 제공 강화

2) 기관연계 직업교육 지원
가) 지역사회중심 기관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 17개 기관, 21개 프로그램(38교, 130명)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10개 직종(41교, 468명)
다) 장애학생 직업과정 위탁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특화훈련(외식산업 분야) 위탁 교육(일반고 3학년 4교, 5명)
라) 장애학생 기관연계 직업평가: 부산장애인종합복지관 연계(31교, 234명)

3) 장애학생 취업·진학 지원
   가) 장애학생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13개 기관, 위원 14명)
   나) 장애학생 진로설계 아카데미 운영: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연수, 상담, 체험)
   다)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운영: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12명)
   라) 지역사업체 연계 채용 맞춤형 훈련 지원 사업 운영(5개 기관)
   마) 대학 진학 기회 확대: 정보(1회) 및 상담(부산학력개발원 연계) 제공
   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110여 명)
   사) 특수교육대상자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지원
4)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및 현장 안착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홍보물 제작·발간('23. 8월)
2)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 설명회(7월), 입학적응 예비학교(7~8월) 운영
3)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개발·보급(6~11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시 재진단・평가('23. 7~10월)
2)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23. 10월)
3)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운영(8월), 담당자 협의회(7월, 11월)
4) 특수교육 거점지원센터별 유관기관 협의체 운영(시각, 청각, 발달): '23. 6~7월
5) 부산특수교육지원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마중물동아리, 미래교육관 체험, 직업교육('23. 3~12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 특수교육대상자 상급학교 진학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23. 6~10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사 수업 역량 강화 연수('23. 8월)
2) 통합교육, 보완대체의사소통,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협의회 지원('23. 6~7월, 11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담당자 워크숍('23. 11월)

2) 통합교육 성과보고회('23. 12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장 대상 특수(통합)교육 연수('23. 7월)

2) 통합교육 중점학교 컨설팅 지원('23. 6~9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世울림 인형극 및 장애이해교실 운영('23. 5~12월)

2) 장애공감문화 조성을 위한 체험형 문화공연 운영('23. 7~12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지원)청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6단(시교육청 1, 교육지원청 5)

나) 더봄학생 재학교 중심 정기현장지원 및 인권보호 예방상담 실시(37교)

2) 장애학생 인권교육 및 인권침해 대응 체계 강화

가) 장애영유아 대상 찾아가는 인권보호 인형극 운영(30개원)

나) 특수학교 내 인권 침해 신고함 설치 및 CCTV 설치 확대

다) 장애학생 대상 사안 발생 시 보고체계 강화를 통한 사안별 신속 지원

라)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프로그램 강화

3) 장애인권 존중 문화 조성

가) 비장애학생 대상 장애인권 및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2회 실시

나) 찾아가는 장애인권교육 운영 확대('22. 60교 → '23. 90교)

다) 世울림 장애공감 문화 조성을 위한 공연 지원('22. 20교 → '23. 30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학교 미래형 다목적 직업훈련실 및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지원

2) 인공지능 기반 로봇 활용 교육, AI교육 우수 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특수학교 관리자 워크숍('23. 7월, 2회)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담당자 및 희망교원 대상 연수('23. 8월)

다. 순회교육지원 강화

1) 순회교육대상 학생 학기말 평가 및 2학기 계획 수립('23. 7~9월)

2) 순회교사 학습공동체 운영을 통한 수업 나눔(3팀, '23. 6~7월)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교육감기 장애학생체육대회('23. 9월)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모델 개발 정책 연구('23. 6~11월)

2) 건강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 연수: 학부모 연수(7월), 교사 연수(11월)

3) 행동중재 지원: 전문가 양성과정(6~12월), 심각한 행동문제 학생 집중적 행동중재 지원(7~12월)

바. 방과후학교·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23. 7~8월, '23. 12~'24. 1월

2) 유관기관 연계 여름·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23개 기관(예정)

3) 특수학교 방과후 과정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 참여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직무 역량강화 연수 및 현장 컨설팅 실시(30교)

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직무교육(장애인권, 직무역량교육 등) 실시

2) 치료지원 제공 기관 현장지원 및 점검('23. 8~12월)

3) 수요조사를 통한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23. 7월)

아.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My JOB 프로젝트」

1) 2023 전국 장애학생 진로드림페스티벌 참가('23. 9월)

2) 2023년 2월 특수교육대상자 졸업 후 취업유지 현황 조사('23. 10월)

3) 특수학교 학교기업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하반기 컨설팅('23. 11월)

4) 장애학생 일자리 참여 현황 및 현장실습 운영 점검('23. 11~12월)

5)「My JOB 프로젝트」실시 결과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23. 12월)

대구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고등·평생교육 격차 완화

3. 추진 중점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확대(1인당 25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운영 및 순회교육 제공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유보통합추진단 선도교육청 운영 협력

2)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유아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시 특수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나) 맘껏 놀이 중점 완전통합유치원 운영(2원)

- 단설유치원(대구인지유치원), 병설유치원(대구불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

다)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4개원/교육지원청별 1개원)

나. 대구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학생 맞춤형 체험교육, 연수 및 연구, 학부모 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등 특수교육 역량 강화 중심 역할 수행

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교사 증원 및 교원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

3)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확대

4) 장애유형별 거점 지원센터 운영(3개소)

- 대구광명학교(시각장애), 대구영화학교(청각장애), 대구덕희학교(정서장애)

다.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1)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2) 2023학년도 특수학교(급) 신·증설 확대 운영

가) 신설: 14학급(초 3, 중 3, 특 8)

나) 증설: 9학급(유 2, 초 2, 중 1, 특 4)

라.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사서 및 전문상담교사, 장애교원 지원교사,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나)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권장

다)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1명 추가 배치

2)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제고

가) 특수교육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운영(87팀)

나) 특수교육교원 연구회 운영(3팀/개별화교육계획, 일상생활 활동, 행동중재)

다) 특수교육수업지원단 운영

라)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 활동 강화(지원장학, 권역장학)

마) 대구교육연수원과 협력을 통한 교실수업개선 및 역량 강화 연수 확대

바)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사) 특수교육 자료 수집・관리를 위한 세미나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
-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54명)를 통한 통합학급 교사와 협력 수업, 통합교육 지원, 행동 중재, 장애이해 교육 등 실시

2) 교수, 의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5팀)을 구성하여 기본・정기 현장지원 강화

3) 통합교육지원실 10교 운영

4) 다양한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23교 운영, 특색 있는 통합교육 프로그램 5개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강화(3시간 이상 이수)

2) 통합학급교사와 특수교사 통합교육 역량강화 연수 지원

3)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15개교 운영

4) 자격연수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1개 이상 운영

5) 예비교사 대상 통합교육 소양 강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3)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운영비 지원(유・초・중・고・특 교당 100만원)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성교육 전문가, 특수교원, 경찰,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장애학생인권지원단(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별 5팀)을 구성하여 정기・특별 현장지원 강화

2)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3) 초・중・고・특・각종학교 직원의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마. 대학 연계 특수학급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맞춤형 교육 지원 및 예비(특수)교사 교육봉사활동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사 수업 보조,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원격수업 지원, 교수・학습자료 및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학습꾸러미 제작 지원 등

2) 연계 대학: 대구대학교, 영남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등

3) 지원 학교: 12교(유 4원, 초 7교, 고 1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1)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8교), 스마트 스쿨 등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2) 특수학교 AI교육 모델 개발,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을 위한 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운영(2교)

3) 장애학생 정보화 능력 신장을 위한 「대구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6월)

- 대상: 특수학교(급) 및 비장애학생 등 330여명
- 종목: 정보경진부문 16종목, e스포츠부문 9종목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대구미래역량교육과정 편성・운영(대구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3-5호)

2)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특수학교 교육과정 운영

가) 학교 특성, 학생・보호자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특수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문화예술 및 직업교육 중점학교)

다)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특 10교)

3) 유・초・중・고 특수학급 개별화교육계획 기반 교육과정 운영 모델 연구 및 보급

4) 특수학교 교육과정-수업-평가-기록 설계 및 성찰 주간 운영(11교, 5,500천원 지원)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전문가 양성 연수(60시간, 50명)

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연수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기초 연수(15시간, 400명)
- 일상생활 활동 연수(15시간, 400명)
- 행동중재 연수(15시간, 400명)

다)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연수(180시간, 10명)

6) 장애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모델 연구

- 기본 교육과정(대구 이룸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대구 보건학교)

다.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1) 특수교육대상학생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내실화 방안 안내(2023. 2월)
   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과중심, 생활지원중심, 교과 및 생활지원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나) 2022 특수교육 장학자료「개별화교육계획 운영 가이드북」활용
   다)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홍보 영상 제작・보급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및 컨설팅 실시
3)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한 지원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원격수업 관련 내용 포함 작성
5) 코로나19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격차 완화 및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가) 교과보충 도움닫기 프로그램: 초・중・고・특 181교
   - 학생의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과학습보충 제공
   나) 또래활동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11교
   - 학생 교우관계 형성, 심리정서 안정, 사회성 함양, 신체활동, 학교생활 적응 등 집중 지원
   다) 학습지원 튜터: 초・중・특 25교
   - 학습결손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생 대상 정규수업 및 방과후 학습지원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중도중복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시설, 재택 순회 및 병원학교 운영
2) 자료제작 및 구입, 여비, 운영비 지원 등 순회교육 지원 범위 확대
3) 순회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방법 등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교육 '위드심포니오케스트라'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문화예술분야 진로·직업교육 지원
2) 고교 특수학급 연합 '빛솔합창단', 대구보명학교 '소리나무합창단' 등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참여 기회 확대
3) 대학연계 찾아가는 문화예술·체육 교실 운영(15교), 문화예술 학생 동아리 활동(10팀) 지원을 통한 장애학생 1인 1기 계발 및 문화예술 지원 강화

바. 지역대학 연계 협력교육 운영

1) 특수교육 현장과 대학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한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2) 6개 대학(교수 8인), 6개 영역(교육과정, 통합교육, 음악・미술・연극 문화예술, 진로·직업, 원격수업, 일상생활 활동)
3) 운영 내용: 특수학급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문화예술 학생 동아리, 학생 대상 프로그램, 교원 및 학부모 대상 연수 및 컨설팅

사.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여건 개선
   - 심리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 구축(심리안정실 등)
   -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나) 중도중복장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특 10교)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운영(특 2교)
   - 학교와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과 업무 협약을 통한 지원(100,000천원)
3)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및 병원학교 운영 강화
   가) 병원학교 4학급(영남대학교병원, 대동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학교병원) 운영
   나) 병원학교별 정규 특수교사 1명 배치
   다) 병원학교별 건강장애 담당 교원 연수회 실시 및 전국병원학교 홈페이지 홍보를 통한 건강장애이해 증진
   라) 병원학교별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지원 및 1:1 맞춤형 찾아가는 학교복귀지원프로그램 운영
4)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꿈사랑학교, 스쿨포유) 운영
   나) 교과 선택권 확대, 창의적 체험활동 제공 등 교육내용 다양화
   다) 건강장애 선정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시 선교육지원 등 교육 공백 최소화
   라) 스쿨포유 초등과정(1학년) 화상강의 전담교사 배치・운영(대구특수교육원 내 위치)
5)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행동중재지원센터 운영
   가) 대구특수교육원-대학, 의료기관, 전문상담기관 연계
   나) 전문가 양성,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컨설팅

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교실(돌봄봉사인력) 지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프로그램 운영

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가) 인력 지원 현황: 총 834명(실무원 571명, 사회복무요원 263명)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 신규채용: 3개월 이내 직무연수 연 30시간 이상(사회복무요원은 16시간 이상)
- 기존인력: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직무연수 연 15시간 이상
- 자체연수 강화: 지원 대상학생 맞춤형 학교별 자체연수 실시, 학기별 1회 이상

2) 치료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치료지원비 증액

- ('22) 월 12만원 → ('23) 월 14만원

나) 치료지원 서비스 영역 세분화(우리교육청 치료지원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맞춤)를 통해 선택권 확대

3) 일반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안내

나)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장애인주차구역, 주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및 기타 편의시설 지속설치로 Barrier Free 구축

다) 특수학교(급) 리노베이션을 통한 교실환경 개선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사후관리 체계 확립

가)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단위 협의체 운영 지속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학교기업, 거점학교, 특수학교 전공과,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시(구)청,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나)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단 및 직업평가 체계 구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대구과학기술고등학교 등 직업평가 협업

다) '학교 내 장애학생일자리' 사업 내실화

- 5개 공립 특수학교, 특수교육원 및 4개 특수교육지원센터
- 취업 전 직장 적응훈련, 사회 적응훈련 강화, 추후 사업체 취업으로 연계

2) 특수교사 진로·직업교육 실기 직무연수과정 개설(하계 방학 중, 7개 과정 예정)
3) 대구특수교육원-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협업 운영 활성화
가) 진로·직업 및 특수체육 프로그램 운영
-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고등학생 대상
- 진로·직업 11과정, 특수체육 2과정 운영
나) 발달장애인훈련센터 양성과정 대상자 모집 및 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직업실기 자격취득 지원 19교(특수학교 7교, 특수학급 12교)
- 바리스타, 조향사, 정리수납전문가, 드론, 플로리스트 등
5)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및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 특성화 지원센터 운영(3개 교육지원청)
나) 진로교육 연계교육 운영(특 5교)
다)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특 5교)
라) 학교기업 '성산' 운영(특 5교 연합)
마)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2교)
바) 진로·직업교육 업무 전담교사 배치
- 진로전담교사 및 현장실습전담교사 특수학교당 1명

4. 장애인 고등 · 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나. 대학 입학 정보 제공을 통한 진로 선택 지원 및 대학 진학 후 안정적인 대학생활 적응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7월 예정)
- 대구 · 경북권 대학 참여
- 대학별 입시 요강, 장애학생지원센터 등 지원제도 안내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을 위한 영유아 진단검사비 지원 확대
2) 사립유치원 배치(3인 기준)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나.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1)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추진

2)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설립 추진

다.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전문성 제고

1)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학교 교원 추가 배치

2) 특수교육교원 전문학습공동체, 연구회, 수업지원단 운영 강화

3) 특수학교(급) 운영 내실화를 위한 장학활동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지원 순회교사 계속 배치 및 역할 강화를 통한 찾아가는 통합교육 실시

2) 통합교육지원단, 통합교육지원실,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통한 교육과정 연계 통합교육 지원 강화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특수교육 직무연수 지속 추진

2) 일반학급 교사와 특수교사 간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활성화

다. 장애공감문화 정착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디지털교육을 위한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AI교육 선도 특수학교 운영 등 교육환경 조성 및 운영 내실화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생 교육적 요구에 기반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및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지속 운영

3)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모델 연구 지속 추진

다. 학생 성장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1)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 자료 제작 등 지속 추진

2) 특수학교(급) 지원장학 시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점검 중점

3) 특수교육대상자 학습격차 완화 및 일상회복을 위한 맞춤형 교육활동 지속 운영

라.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치료지원비 증액 추진

- ('22) 월 12만원 → ('23) 월 14만원 → ('27) 월 16만원

마.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대구특수교육원 중심 체험교육 활성화 및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2) 전공과 교사, 진로전담 교사, 현장실습전담 교사 전문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통한 현장중심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및 안전한 현장실습 강화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운영 다양화 및 참여 대학 확대

나. 장애학생 대학 입학 설명회 지속 추진

인천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꿈·도전·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

1. 기본 방향

가. 꿈·도전·성장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 강화〔공약2-45〕

1) 특수학교 전공과 및 고등학교 전공과 설치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대학형 전공과 증설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교육 확대를 위한 고등학교 전공과 증설

2) 장애학생 진로·취업 컨설팅단 운영

가) 장애학생 진학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육-고용-복지 연계 진로·취업 컨설팅단 구성 및 운영

나)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 진학, 취업 컨설팅 및 연수

나. 특수교육 여건 개선 및 특수학교 설립〔공약 2-34〕

1) 특수학교(급) 신·증설

2) 특수학교(급) 환경개선

3) 공립특수학교 신설

다. 특수교육 운영 지원

1) 장애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가) 지체, 중도중복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및 의료장비 지원

나) 청각장애학생 문자속기지원 및 시각장애 점자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2)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학급 특수교육-치료연계 모형 운영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컨설팅·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컨설팅 지원

3)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실태 조사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및 특별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프로그램 운영 및 교사 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다)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협력위원 구성: 7명

라)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후속 조치

4)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특수학교 생존수영 교육 운영

다) 장애학생 건강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라. 통합교육 운영 지원

1) 장애공감 문화 조성

가) 학교별 장애인식 수준 진단을 위한 지수 개발

나) 맞춤형 장애이해 교육활동 프로그램 개발

2) 장애 영·유아 교육 지원

- 통합교육 중심 유치원 및 거점 지원센터 운영

3) 통합교육 지원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모델 개발

4) 발달장애학생 정서·행동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위기 행동 관리·대응

나) 행동 중재 전문가 양성

다) 장애학생 정서·행동 지원을 위한 교사·학부모 역량 강화 연수 운영

5) 장애학생을 위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

가) 장애학생을 위한 마을 연계 교육활동 운영

나) 학부모 참여 마을 연계 교육 운영

마.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1) 특수학교(급) 자유학년제 및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2)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바. 장애학생 진로 및 취업 지원

1)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 역량 강화

가) 「교육에서 고용까지」 지역사회 연계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확대

나) 진로·직업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사. 특수교육 전문성 제고

1)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운영

2)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3) 특수교육 관련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가) 관리자 특수교육 연수

나) 특수교사·중도중복장애학급 교사·지원센터 교사 연수

다) 특수교육 실무사·특수학급 종일반 강사 역량 강화 연수

라) 청각장애교사 문자 속기 지원

아. 장애학생 교육지원

1) 특수학교(급)종일반 운영

2) 장애학생 지원인력(단시간 근로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및 선정 배치

2) 순회 특수교육 및 순회 치료지원

3)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운영

4)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5)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6)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차.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1)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영아 학급 운영: 5개 학급 17명

나) 장애영유아 진단·평가비 재배정: 5개 센터 12,500천원

다) 특수교육대상유아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60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역량 강화 연수: 5개 센터 93명

나) 진단・평가 매뉴얼 제작·보급: 1회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8개, 57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가) 특수학급 신·증설: 50학급(유 7, 초 21, 중 3, 고 7, 특수학교 12)

나) 특수학급 노후화 환경개선: 35교(유 2, 초 11, 중 10, 고 7, 특수학교 5)

다) 특수학교 전공과 증설: 1교(인천청인학교) 2학급

2) 공립 특수학교형 중도중복장애학급 운영: 4교 8학급

3) 예술특화직업교육 운영: 4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향상

가) 특수교육 수업지원단 역량 강화 직무연수: 21명(15시간)

나) 보완대체의사소통전문가 과정(기초) 연수: 30명(10시간)

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연수: 유・초・중등 356명

라) 공립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컨설팅 및 연수: 6교 6명, 3회 6시간

마) 자기방어훈련의 이해와 실습: 특수교사 및 일반교사 20명

바) 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 특수교사 30명

사) 영유아 담당 교사 역량 강화 연수: 102명

2) 특수교육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21개, 1,056명

3) 특수교육교원 심리상담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교원돋움터 연계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6개단 95명 구성

나)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 협력 교수팀 운영: 8개팀

다) 특수교육대상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초 42명, 중 20명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학교장애인식지수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정다운학교 운영: 2교(인천청람초등학교, 강화중학교)
2) 통합교육 중심 학교 운영: 5교(유 1개원, 초 2교, 중 1교, 고 1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프로그램 운영: 71교 208학급
다)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장애인권 연수: 9교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인권감수성 up 프로그램 운영: 20교 30학급
나) 찾아가는 장애공감(놀이·유니버설디자인·수어)교육: 10교
다) 찾아가는 장애공감(인형극)교육: 5교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나) 공사립 관리자 대상 장애공감 연수: 2회, 817명
다) 초등 신규교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수: 80명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찾아가는 런치 콘서트 실시: 고등학교 10교
나) 예비 중등교사 대상 장애학생 이해교육 연수: 인하대 체육교육과 30명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인권지원단 구성: 6개단 72명
나)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 33교(유 3, 초 13, 중 9, 고 3, 특수학교 5)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활동(정기·특별지원) 결과 보고
3) 특수학급 대상 성·인권교육 실시: 76교
4)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장애아동 인권규범적 이해 연수: 170명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 및 운영: 1개

2) 유·초·중등 교사 역량 강화 연수: 1회, 352명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 장애 특성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지원 강화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컨설팅: 29개원 59교

다.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유아 순회교육 지원 확대

2) 특수교육대상자 순회수업 지원: 89교 161명, 주 1~2회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일반학교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76교

2)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지원: 10교, 1,571명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인천형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운영: 21교 27학급

나)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안내

다) 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이용 컨설팅 실시: 4개 병원 1기관 연계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협의체 구성: 교육청-5개 연계 구성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전문 보조인력(간호사): 7교 10명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특별건강관리지원: 4교 9명, 병원 1기관 연계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자속기 지원: 중 3교

나) 청각장애학생 학부모 컨설팅 실시: 3교(초 2, 고 1)

다) 통합학급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31교(유 2, 초 23, 중 5, 고 1)

라) 시각장애학생 및 학부모 지원 계획 수립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인하대학교 병원학교 1학급

나) 원격수업 지원: 스쿨포유 초·중·고 112명(요보호 포함 132명)
다) 전문인력: 병원학교 파견 특수교사 1명, 초등 원격수업 특수교사 4명
라) 건강장애 담당교사·담임교사 대상 업무지원 및 수시 상담
마)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7개, 20교 40명

5)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전문가단 구성 및 운영: 6개단 93명
나) 행동 분석 전문가 양성 과정 대상자 선정: 10명
다) 학생 대상 개별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 110명
라) 특수교사 대상 PBS 연수: 146명

바.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가) 초등 방과후학교 운영비 재배정: 5개 센터, 100백만원
나)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교육활동 프로그램 지원: 5,873명

2) 돌봄 지원 체계 강화
가) 유치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55개원 83학급
나) 초등학교 특수학급 종일반 운영: 9교 9학급
다) 특수학교 종일반 운영: 9교 34학급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실무사 배치: 공사립 학교 707명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계획 수립 안내(3월)
다)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단시간 근로자 배치: 216명
라) 교육(돌봄)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289명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 4,593명
나) 치료지원제공기관 정기 점검: 치료지원 내용, 기록 관리 등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 치료지원: 언어치료 72명, 작업치료 13명

3)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가) 지체장애학생 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13교 28명
나)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대여 플랫폼 구축: 인천시특수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가) 특수학교 통학차량 운영: 46대, 1,169명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1,314명, 3,105백만원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 운영: 10교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1교

3)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현장 점검: 1회, 10교

자.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마을연계 직업교육 운영: 미추홀학교 1교

나)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4교

다)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8교 46학급

라) 대학형 전공과 운영 확대: 인천재능대학교 4개 학과, 1~2학년 39명

마) 장애학생 대학형 전공과 추가 위탁교 선정: 인하공업전문대학

2) 진로·직업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가) 방학 중 「꿈이음 진로·직업 프로그램」 운영: 32명

나) 장애학생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운영: 30명

다) 직업교육 거점 「찾아가는 직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29교 51학급

라) 지역 대학 연계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인하공업전문대학 6개 학과 338명

마) 특수학급 맞춤형 진로설계 컨설팅 운영: 고등학교 특수학급 49학급 268명

3)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인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연계 「산업체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운영: 34교 41학급

나) 산업체 및 장애인개발원 연계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5명

다) 발달장애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프로그램」 운영: 47개 학급 292명

Ⅱ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진단·평가비 지원: 1인당 250천원

2)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를 위한 대상자 선정 및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2)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 역량 강화 연수 및 워크숍 운영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희망 조사
2) 특수학급 신·증설 및 감축 희망 조사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수 실시
2)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운영 연수 실시
3) 보완대체의사소통전문가 과정(심화) 연수 실시
4) 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연수 및 컨설팅 실시
5) 통합학급교사 대상 금쪽이 마음 읽기 연수 실시
6)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실시
7)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초학습 지도 방법 연수 실시
8) 통합학급교사 대상 장애 인권 연수 실시
9) 학교 차원의 PBS 적용 연수 실시
10)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연수 실시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학생·학부모·교사의 통합교육지원 요구 수렴 및 지원 형태 다양화
2) 일반-특수교사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 사례 나눔
3) 학교장애인식지수 연구 용역 보고회
4)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동영상 및 리플릿 등 홍보자료 제작·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정다운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2) 통합교육 거점학교 운영 자료 공유 및 우수사례 일반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찾아가는 장애공감(놀이)교육 실시
2) 유·초·중 통합학급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3) 찾아가는 교직원 대상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학급 미설치교 및 과밀학급 순회교육 강화
2)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정서·행동 지원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특수교육-치료(의료기관) 연계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 컨설팅 실시
   나) 자세유지 및 보조기기 활용 연수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청각장애학생 문자 속기 지원
   나) 교직원 및 통합학급 대상 청각장애 이해교육 실시
   다) 시각장애학생 진로·직업 컨설팅 실시
3) 행동중재 지원
   가) 학생·학부모 대상 개별 심리상담 지원
   나) 개별 학생 행동중재 사례 관리
   다) 특수교사 및 통합학급 교사 대상 행동중재 컨설팅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2024 대학형 전공과 신입생 선발: 40명
2) 교육·고용·복지 진로·직업 협의체 학부모 대상 진로진학 설명회 실시: 2023. 하반기
3)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운영
4)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5)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로 및 취업 컨설팅단 운영

광주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목표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방향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 역량 강화

3. 중점 추진 과제

구분	세부 추진 내용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2.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3. 특수학교(급) 다양화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3-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3-2.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3.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4. 순회교육 지원 강화 3-5.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3-6.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3-7.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3-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3-9. 장애학생 안전 강화 3-10.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3-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 특수교육 안내자료(리플릿, 포스터 각 1종) 개발·보급: 5월, 보건소, 주민센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배포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영아학급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의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를 통해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나)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 연계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 진단·평가 담당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 법령에 규정한 재배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실시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교육 현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 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해소

배치 유형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일반학급			총 계
	유	초	중	고	소계	공립	사립	소계	
신설	2	3	3	-	8	-	-	-	**8**
증설	1	8	2	1	12	10	7	17	**29**

나)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다) 신설 특수학교의 안정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기반 조성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우선 설치 계획 수립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시청각장애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특수·일반학교)에 교원과 학생의 원활한 소통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위해 관련 자격을 소지한 특수교사를 우선 배치 및 전보 유예 방안 마련

다) 특수학급이 3학급 이상 설치된 일반학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사의 교수 능력 향상과 학생과의 의사소통 강화를 위해 점자, 수어 등 특수교육 관련 국가 공인 자격취득 지원

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다)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모든 교육정책 추진 시, 특수교육대상자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검토목록 마련 및 적용

나)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을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다)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라)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 장애이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학생과 교원의 장애인식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및 강화

- 관리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연간 3시간 이상 이수
-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60시간 이상 이수 권장

나) 예비 특수교사 교육실습 시, 통합학급 운영 등 통합교육 관련 실습 적극 권장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 문화 조성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교과용 도서 연계 장애인식개선 수업사례 발굴・확산

다) 장애학생 당사자 중심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학생동아리 운영 권장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장애인의 날(4. 20.) '특별기획방송'을 활용한 장애이해교육 지속 실시

나) 장애이해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 지원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대상을 각급학교 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4)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기반 마련

가)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교육 실시

나) 학생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교육 예산 편성 및 운영

5)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전문가 콘텐츠 개발과 학생, 교직원 공모전,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콘텐츠의 다양화

나) 인터넷, 옥외매체, 방송, 인쇄물을 활용한 장애공감문화 캠페인 지속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다)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확대를 통한 장애학생 행동지원 및 인권보호 여건 개선

2) 특수교육지원센터 내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교육청 전문직, 지역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

나)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기능 수행과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연수 및 지역 내 학교 지원 활동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유·초·중·고 비장애학생 대상으로 장애인권을 포함하여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실시 정착화

나)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다)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라) 장애인의 날 맞이 「장애 인권 주간」 운영: 4. 17.~4. 28, 교육감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시, 계기교육 자료 제공, 신문제작 및 보급 등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조성

나)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확대하고 선도교원을 활용한 컨설팅 추진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 교과중점학교(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 운영 지원

다) 교육과정 지원 활동과 특수학급・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활동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계획 수립 시 통합교육 계획을 포함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보급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자료 보급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인력 등으로 구성

나)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

다)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라)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는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고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 순회교육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특수학교 영·유아 순회학급 15학급 운영

2)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고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을 주 3회 이상으로 확대 권장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나)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 중도중복장애 배치 특수학교 4학급 조정 실시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모델 발굴·확산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건교사의 지원과 간호사 면허가 있는 보조 인력 등 전문인력 배치·확대

나) 의료 관련 전문인력풀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설치·운영

나)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추진

다) 거점지원센터와 지역의 관계기관(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수어통역센터 등)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통합교육 지원인력 운용의 효율성 제고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 교원 배치

- 학마을 병원학교 1학급 운영

- 병원학교 위탁 운영: 여미사랑 병원학교(화순), 느티나무 병원학교(나주)

나) 건강장애학생의 특성 등을 고려한 원격수업 마련 및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강화

5) 행동중재 지원

가)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해 행동지원 전문가, 교육청 자문위원, 행동지원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집중적 행동중재 지원 강화

나)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제공

다) 학교, 가정과 연계한 행동지원 방안 등의 정보·상담 제공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가)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 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나)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33학급, 급당 운영비 2,000천원 지원
   다)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11학급, 급당 운영비 3,000천원 지원
2)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자 소질·적성 계발, 사회적응력 신장, 직업교육, 학생·학부모의 요구, 학교 여건을 반영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별 지원
   나) 특수학교(급) 교내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월 650천원 지원
   다) 학교 밖 특기적성교육비 개별지원: 월 100천원 내 실비 지원
3) 방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급)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거점으로 학생, 학부모의 요구와 지역 실정을 고려한 방학 중 프로그램 운영
   나) 학교, 지역사회 비영리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모·선정에 의한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4) 방과후 교육·돌봄 프로그램 담당자의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 지원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우선 지원
   나) 학교별 특수교육실무사 지원 계획 수립·운영 및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실무사가 처리하여야 할 업무 명확화
   라) 학교별 사회복무요원 대상 장애이해·인권 교육 등 연수계획 수립·운영
2) 치료지원 내실화
   가)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지원비 지원: 월 120천원 내 실비 지원
   나)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실시
3)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학 편의를 위해 통학차량 및 지원인력 지원, 통학비 지원 등 통학지원

라)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 교육 현장 특성을 고려한 재난상황별(교통, 화재, 지진 등) 실질적인 안전대피훈련 실시

3)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

4) 특수학교 학생 생활 안전 및 학교 시설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특수학교 학교기업' 지역 맞춤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학생의 안정적 고용기반 마련

나) 지역사회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꿈길' 등을 활용하여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활동 지원 강화

다)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 구성·운영

2)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운영 및 교육부 현장지원단과 연계하여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및 컨설팅 지원

3) 장애학생 고등교육 기회 확대 및 학습권 보장

- 대학 체험·적응지원 및 장애인 특별전형 등 대입 관련 정보와 장애대학(원)생 지원 정책, 대학교 지원 정보 등 통합 제공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1) 학령기 의무교육(초·중·고) 단계에서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에 대한 학력보완 등 맞춤형 교육 및 지원: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지원조례(2022. 6. 29.)

2) 장애인 평생학습관 지정·운영

–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5기관(발달장애인 평생교육시설 1기관 포함)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의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 상담 실시

2) 특수교육대상영유아 담당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생애주기별 전환교육프로그램 장학자료 개발·보급

2) 특수교육지원센터 홍보, 특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특수교육 지원 체계 구축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유·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교육대상자 수요를 고려한 특수학급 설치

2) 특수학교 과밀, 원거리 통학 해소 등을 위해 특수학교 신설 추진(2024년 3월 1교 개교 예정)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지구별 특수교육 협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지원

2) 특수교육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위한 특수교육실천사례연구발표대회 추진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60시간 이상) 참여

2) 통합학교 교(원)장의 특수교육 관련 집합연수 실시: 3시간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기현장지원 실시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연수 실시

2)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을 통해 행동 중재 방법 등 컨설팅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을 위한 2024학년도 광주광역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보급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특수교원 연수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의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현황 점검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관련 컨설팅 실시 및 우수사례 공유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 특수교육 지원이 필요한 학생 파악 및 순회교육 실시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장애학생 문화체험 활동 운영 및 지원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학생의 행동 중재, 건강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 요청 시 컨설팅 실시 및 협력 지원
2)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보조공학기기 지원 및 컨설팅 실시
3) 건강장애학생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원격수업시스템 운영 지원
4) 건강장애학생 학교적응력 신장 및 학업격차 최소화를 위한 학습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5) '행동지원 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 중재 및 컨설팅 제공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 및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운영
2) 방학학교 프로그램 운영 기관 선정 및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대상으로 맞춤형 학생 지원 및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2) 치료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치료지원비 지원
3) 학교단위 평가 시 특수교육대상자가 평가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른 평가조정 적용
4) 장애인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추진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 특수학교(급) 노후시설 개선 및 수업환경 개선 지원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장애학생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노후 직업교육실 개선 지원
2)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질 높은 진로교육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운영

카.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대전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 전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으로 모두를 위한 특수교육 실현

목 표

-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하는 지원 체계 강화

중점 추진과제

1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책임교육	1-1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1-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1-3	특수학교(급) 확대
	1-4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5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2-1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2-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2-3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2-4	장애학생 인권 내실화
	2-5	장애학생 안전역량 강화
3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3-1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3-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3-3	장애정도를 고려한 순회교육 체계화
	3-4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3-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4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문화	4-1	진로역량 개발 지원
	4-2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4-3	문화예술·체육 활동 선진화
	4-4	디지털 역량 강화
	4-5	방과후교육 지원 활성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영유아 건강검진(생후 14일~71개월)부터 장애 진단·등록단계까지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다) 장애(위험)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 보호자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해 '보호자 On누리 및 대전보호자지원센터'를 '온맘'과 연계

◦ 보호자의 동의하에 지역 내 병원, 보건소, 기타 관계기관 등과 연계하여 장애 의심 및 장애영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실태 파악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 지원

◦ 유치원 과정이 있는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운영(3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교육지원실 운영(3센터)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의 특수교육 연수

다) 발달단계·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라)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학급 학생 정원 감축 조정,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충 등 지원 확대

◦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특수교육지원센터)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마)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사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 및 통합유치원 운영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교재·교구 지원, 양육정보 제공, 특수교육대상영아 개별화가족서비스계획(IFSP) 수립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1)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2)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의료·교육·직업 관련 관계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제공

다) 지역 여건 및 기능을 고려한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및 교육지원 강화

◦ 지역 여건과 교육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을 진로·직업교육, 시청각장애교육, 장애영유아교육 등으로 특성화하여 운영

3) 특수교육원(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원(지원센터)의 물리적 환경개선 및 전담인력 확충

나) 특수교육원(지원센터) 근무 교원 대상 실무중심 연수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 마련

4)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희망 또는 필요시) 상담 제공

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진단·평가 등 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전문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다) 진단·평가 담당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

다. 특수학교(급) 확대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가) 특수학교(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을 줄이고,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특수교육대상학생과 보호자의 불편 해소

나) 특수학교 설립의 지역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특수학교 설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가)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나) 대학·지자체 등과 협업하여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 등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교 운영모델 확산

3) 특수학교 신·증설 확대

가)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를 설립할 경우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나) 중증 장애학생의 교육·치료·돌봄 병행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내 학급 운영 등 특수교육 지원 강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시청각장애교육 전문성 등 사회적 변화와 교육 현장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교사 양성과정 및 자격제도 개선 관련 현장 의견수렴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 특수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공모 및 운영(8팀)

◦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적용 연구팀 공모 및 운영(1팀)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과별 수업 및 장애 특성별 지도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 확대 및 상호 존중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강화

마.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1) 특수교육 실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장애학생 교육활동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관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2)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3) 기숙사 생활지도원, 수어통역사, 자원봉사자 등 지원인력 운영 다양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기존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책무성 확대

나) 특수교육 관련 다양한 인적자원을 활용한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장, 통합학급 교사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유치원) 관리자와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운영

◦ (관리자 연수) 통합학급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 실시

◦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순회교육대상자와 건강장애학생의 통합학급 교사에 대한 연수 안내

◦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 연수 실시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강화

◦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다양한 협력교수 모형 개발·우수사례 보급

◦ 다양한 주제 중심의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시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전문강사와 함께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행복동행버스를 이용한 특수교육원 방문 '찾아오는 장애공감교실' 운영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과 소속 산하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의무 실시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라. 장애학생 인권 내실화

1) 인권침해 대응체제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상시 감지체계 운영

나) 인권침해 실태점검 내실화

◦ 장애학생의 성폭력, 폭행, 차별행위 등 인권실태조사 실시

◦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대상별 조사 매뉴얼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도구 개발

다)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담당 인력 확충

◦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배치를 통한 행동중재 지원 및 인권보호 강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활동 및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3)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관리자, 교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권교육 내실화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4)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
가) 일반학교(원) 및 특수학교 장애학생을 대상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5)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포함) 피해 예방
가)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

마. 장애학생 안전 역량 강화

1)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운영 지원
가) 학교 안전사고 예방 계획 수립 시 특수학교(급) 학생의 장애 특성을 반영한 특수교육 지원인력 활용 재난 조력자 지정 제도(Buddy System) 운영
나) 특수학교(급) 노후 시설개선 및 안전시설 설치 방안 제고

2)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및 교출(가출) 대비 계획 수립·운영 지원
가) 장애학생 이동 및 안전 보장을 위한 보호인력 배치 및 통학 환경개선

3)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가) 재난 상황별(교통사고·화재·지진 등)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4)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특수학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나)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3.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교의 특성, 교원·보호자·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교과용도서 활용 지원
   나) 학교 단위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용도서 활용,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등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학교(급) 우수 운영 사례 발굴·확산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적용을 위한 TF팀 및 연수 운영
   나)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평가 지원 자료 개발
6)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강화 및 대안평가 방안 마련
   나) 보조공학기기 대여 및 활용을 위한 현장 지원 강화
      ◦ 대전특수교육원 홈페이지(http://sp.dje.go.kr) 보조공학기기 검색 및 통합대여시스템 활용
   다) 시교육청 장애학생편의지원위원회 운영
   라)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마) 개정 교육과정에 적합한 교실 환경 구성 및 교재·교구 확보를 위한 노후 특수학급 환경 개선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활용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나) 교육과정과 교과의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 실행 방안 모색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 정비 및 안내 자료 개발·보급

다. 장애정도를 고려한 순회교육 체계화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

나) 순회교육 담당 특수교사 연수 및 복무 관리 강화

다) 배치환경 및 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교육 지원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신체 기능을 보완하는 보조공학 지원 확대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가상 체험교육 및 소규모 교육활동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교육청(학교)·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 등 협력체계 강화 지원

나) 의료적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특수학교에 전문인력 배치 운영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건강·안전에 관한 필요사항 제공

라) 의료 관련 전문인력풀로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교내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시청각장애학생 지원체계 구축

◦ 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진단·평가 지원

◦ 장애유형별 맞춤형 교육을 위한 상담 및 관계기관 연계 지원

나)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 내실화

◦ 시청각장애학생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 통합학급으로 찾아가는 체험형 장애이해교육 운영

◦ 찾아오는 시각장애이해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초·중·고 청각장애학생 실시간 원격 문자 통역 지원

다) 시청각장애학생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 시각장애학생 대상 시기능, 점자, 보행 수업 및 방학 프로그램 운영

◦ 청각장애학생 대상 문해력 향상을 위한 온라인 독서프로그램 운영

◦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교육자료 제공 및 교육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라) 시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별 유형이나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병원학교 운영 및 담당 교원 배치

나) 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5)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 특수교육원(지원센터) 내 행동중재 지원단 구성·운영

◦ 행동중재 지원단 및 행동지원 전문교사를 통한 컨설팅 제공

나) 행동중재 역량 강화 및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한 집중지원 확대

◦ 대학연계 특수교육교원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 위탁 운영

◦ 행동중재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 및 연수 운영

◦ 행동지원 전문교사와 특수학교(급) 연계로 행동중재 계획·실행·평가 컨설팅 등 지원

다) 가족 및 전문가 협력을 통한 행동 문제예방 및 조기 대처 지원

◦ 학교·가정과 연계한 행동중재 지원 방안 등의 정보·상담 제공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연속성과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 심각한 행동 문제에 대해 관리자, 행동중재 전문가, 행동지원 전문교사 및 행동중재 지원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집중적 행동중재 지원 강화

6) 치료지원 내실화

가) 치료지원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한 여건 개선

나) 제공기관별 치료지원 대상자의 장애유형·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정기·수시) 실시

마.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1)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운영 주요 사항

가) '23학년도 고 1부터 고등학교의 총 이수학점을 192학점으로 적정화하여 학점제형 교육제도 안정적 준비

나) 최소 성취수준 보장 지도 운영 등을 통해 학교 교육 안에서 모든 학생의 학업이수를 지원하는 체계 구축

다) 고교 입학 초기 학생의 소질·진로 등을 반영하여 고등학교 3년간의 학업 계획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

4.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문화

가. 진로역량 개발 지원

1)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특수교육원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상담 및 취업지원 강화
   다) 학생 맞춤형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2)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직업교육과정을 유연성 있게 운영
   나) 특수교사·일반교사 간 교육과정 연계 협력수업 등 협업체계 구축
3)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안정적 배치 지원
4) 전공과 확충 운영 및 내실화
5)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1)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2)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나) 장애학생 취업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축
   다)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문인력 배치
   라)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특성화 교육기관 지정·운영
   마) 행복동행버스 운행을 통한 원거리 또는 과밀 특수학급 교통편의 제공
3) 지역 내 참여 일자리 확대
4)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으로 학생보호 및 진로·직업교육 운영 내실화
   나) 관계부처(관계기관) 연계·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다. 문화예술·체육 활동 선진화

1)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나)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체육 활동 지원 강화
   가) 건강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특수학교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다)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라) 대전학생해양수련원과 연계한 장애학생 해양캠프 운영
3)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문화예술·체육 관련 연수 운영
   나) 일반체육교사, 스포츠강사 대상 장애이해교육, 특수체육 등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실시

라. 디지털 역량 강화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나)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수·학습 지원을 위한 디지털 콘텐츠 활용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활용
3)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지원
   가) 초·중·고 특수학급 대상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프로그램' 참여 신청
4) 미디어 소양교육
   가) 디지털배움터 연계 미디어 소양교육 운영

마. 방과후교육 지원 활성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가)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 및 대학과 연계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발굴·확산
2) 유치원 방과후학급 운영
3) 특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별 학급 수 규모 및 수요 등을 고려하여 배정하고, 배정학급 내에서 학교 자체 계획 수립·운영
4) 방학프로그램(계절학교) 운영
5) 개별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
6) 방과후활동서비스 연계 지원

Ⅱ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성장을 위한 책임교육

가. 특수교육기관 확충

1)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개원('23. 6., 6학급 규모) 및 특수학급 신증설 지속 추진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가.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관리자 특수교육 이해 연수 실시('23. 6.)

3.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운영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TF팀 구성 및 활동('22. 12. ~ '23. 12.)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내자료 개발·보급 및 연수('23. 6.)

다)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TF팀 평가회('23. 12.)

2) 2023학년도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수립

가) 특수학교별 운영 계획 수립·제출 및 컨설팅 신청('23. 4.)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컨설팅 운영('23. 4. ~ 5.)

다) 운영 사례 및 결과 수합, 집행실적 제출('23. 12.)

4.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문화

가. 진로역량 개발 지원

1)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및 진로·직업 중심교사 배치 운영

2) 진로탐색 프로그램 및 대학생활체험 지원

3) 교사 및 학부모 직업전환교육 역량 강화 연수

4) 현장중심 실습환경 제공을 위한 학교기업 운영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1) 특수교육원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2) 장애인 일자리 사업 평가 및 채용 확대 지원

3) 관계기관 연계 프로그램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교육비전: 모두를 위한 통합의 울산 특수교육

2. 교육목표

가.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를 통한 양질의 특수교육 보장

나. 모두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통합교육 실현

다. 특수교육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3. 추진방향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4. 주요내용

■ 장애영유아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강화 ■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 협력기반통합 교육여건 조성 ■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확산 ■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 순회교육 지원 강화 ■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방과후 및 돌봄 지원 강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지원강화	■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 자유학기제 내실화 ■ 고교학점제 지원 강화 ■ 장애성인평생교육 지원 강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협의체 구성·운영: 2개 구성·운영('23. 6.)

나)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진단비 지원(최초 1회, 30만원 실비 지원): 5명

다) 특수교육대상영·유아 특수교육지원 홍보 안내

- 안내 포스터 및 홍보리플릿 제작: 1,200부
- 학부모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진학 설명회 및 특수학교 공개의 날 운영

2) 특수교육대상유아 교육과정 운영

가)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을 근간으로 운영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3)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 지원

가) 의무교육비 지원: 공립 월 30천원 이내, 사립 월 100천원 이내 학부모 부담금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50명

다) 치료지원 및 심리상담 지원: 235명

라) 특수교육실무사 및 지원인력 배치: 실무사 42명, 사회복무요원 30명

마) 의무교육 지원 상담 담당자 지정 배치

바) 사립유치원 특수학급 설치·운영 시 특수교사 및 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4)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

가) 영아 지원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수립·실행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지원: 4명

다) 치료치원: 5명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대상영아 담당 인력 배치

5)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가)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간의 정보교육 및 의견교환 등 협업체계 구축

나)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필수 프로그램 운영

- 입학 전 적응지원 프로그램: 사전상담, 학부모 설명회 개최, 학교체험프로그램, 간담회 등
- 입학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교육과정 내 초등학교 학교적응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진단·평가팀 구성·운영: 3팀

나) 전문성 강화 연수 실시: 5회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277명

3) 2024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실시: '23. 6. ~ 8.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설치 현황

특수교육지원센터명	상담전화	역 할	특성화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255-6601	센터운영·통합교육·장애이해교육 총괄,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 지원	시각장애, 청각장애, 건강장애, 자유학기제, 인권지원, 진로·직업, 긍정적 행동지원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219-5790	강북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227-6604	강남 관내 유·초·중학교 특수교육 지원	영유아

2) 시설 현황

구 분	사무실	진단 평가실	치료실		직업교육실		연수실	학부모실	조기 교육실	기타	계
			센터내	거점	센터내	거점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	6	-	2	-	-	6	16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1	1	-	10	-	-	1	1	-	-	14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1	4	2	-	-	1	1	1	1	12

3) 인력 배치

구 분	장학관	장학사	순회 교사	기간제 교사	임상 심리사	직업 재활사	치료사		행정 일반	기타	계
							재활	심리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1	2	10	-	1	1	4	-	2	2	23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1	16	-	-	-	16	3	-	1	37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	1	15	-	-	-	13	2	-	1	32
계	1	4	41	-	1	1	38		2	4	92

4) 기능

라. 특수학교(급) 확충 및 다양화

1) 특수학교(급) 신·증설: 19학급(초 5, 중 2, 고 8, 특수학교 4)

2) 특수학급 설치 현황: 설치율 71.2%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학교 수	학급 수
34	42	106	174	50	69	36	57	226	342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가) 긍정적 행동지원팀 역량강화 연수 2회

나) 긍정적 행동중재를 위한 핵심요원 양성 직무연수 2회

다) 유, 초, 중 특수교사 환경교육 역량강화 연수 1회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연수 1회

마)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직무연수 2회

바) 특수교사 진로·직업 역량강화 자율연수 3회

사)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역량강화 연수 1회

2) 교육청, 단위학교별 교실수업,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3)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전문성 및 처우개선(승진가산점, 순회교사수당, 연가보상비 지급, 전보 특례 등)

4)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 특수교육 부장교사 배치

5) 특수교육교원 연수 기회 확대: 국립특수교육원, 울산교육연수원 등

6)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교원치유센터 연계 운영, 산림복지프로그램 활용 연수 운영 등

바. 특수교육 장학활동 지원

1) 교내 컨설팅 장학 및 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

2) 특수교육 맞춤형 컨설팅: 11교 15회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팀, 컨설팅 8회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지원: 39교 62명

다)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를 위한 컨설팅 지원: 30교

2) 통합교육 실시 학교에 대한 지원 강화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운영: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연구학교 1교, 정다운학교 선도학교 4교,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4교

나) 통합교육 실시학교 컨설팅: 6회

3)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내실화
- 시특수교육지원센터: 건강장애지원, 청각거점, 시각거점, 지체거점 운영
4) 울산특수교육원 및 단설통합유치원 설립 추진
- T·F팀 구성·운영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교(원)장, 교(원)감, 행정실장) 3시간 집합연수: 1회, 610명
나)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다) 통합교육 실시 학교 관리자, 교원의 국립특수교육원 연수 참여 강화
2) 통합학급 운영비 학급당 연 15만원 지원
3) 특수학급 운영비 편성·집행
가) 유치원: 400만원 이상
나) 초·중·고등학교: 500만원 이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장애인권교육 포함) 연 2회 이상 의무실시
2)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 직원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3) 학부모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4)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5개 프로그램 운영, 52교 57회 지원
5)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미술 공모전('23. 6.~7.), 미술작품전시회('23. 11.)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초 4~전공 2학년 학생 전수조사)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팀, 현장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25교 25회
3) 더봄학생 지원
가) 더봄학생 심리상담 및 컨설팅 지원: 13명, 개인별 10회기
나) 더봄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23명
4) 인권동아리 운영: 4교
5) 비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및 장애학생 인권, 자기보호역량강화, 성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정보화 지원 강화

1) 2023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울산예선대회 개최: 19교 38명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교육 장소 제공(여가문화체험실, 교육정보실 운영)

- 장소: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내 1개소 2실
- 활용: 워드프로세서, 정보검색, 장애학생 e스포츠 활동, 현장학습 등

3) 홈페이지 배너로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홍보(에듀에이블, 열린배움터)

4) 특수교육대상학생 스마트러닝 지원을 위한 정보기기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량강화 핵심교원 연수: 50명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착 지원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운영: 1팀 14명

나) 울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컨설팅

3)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및 단계적 이행 준비

가)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운영: 1팀 8명

나)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리플릿 제작

다.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운영 및 개별교육계획서 작성 관련 현황 점검: 281교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 지원 컨설팅 실시: 30교

다) 개별화교육 지원을 위한 학부모교육 실시(학교 자체 실시)

2) 특수교육대상자의 요구에 적합한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1학기)

구분	영아	유	초	중	고등	계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	-	-	9	9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3	20	23	7	-	53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1	30	25	1	-	57
계	**4**	**50**	**48**	**8**	**9**	**119**

2)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육 순회교사 운영

구분	자격 구분			소속
	유치원	초등	중등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	2	8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8	6	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7	6	2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미술공모전 및 미술작품 전시회 운영

2) 특수학교 교기 운영으로 체육 활동 강화

학교명	울산혜인학교	울산행복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종목	볼링	역도	육상	수영, 역도, 스키

3) 특수학교 문화예술교육 거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3교

4) 특수학교 문화예술·체육 활성화 지원: 특수학교 4교

5) 문화예술분야 국제문화예술교류 사업 운영: 특수학교 1교

6) 문화예술분야 전문직업인양성 특화프로그램 운영: 전문기관 4개 위탁운영, 40명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확대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위한 중도중복학급 편성·운영: 3학급

나)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특수학교 4교, 신체활동 및 심리정서 프로그램 운영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건강관리지원: 특수학교 2교, 의료인 보조인력 4명 지원

2)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가) 건강장애학생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제작

나)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위탁 운영, 49명

다) 다솜병원학교 운영

병원학교명	위치	인력 현황		이용학생
		교사	센터 순회교사	
다솜병원학교 (설치년도:2007년)	울산대학병원 내	1명	2명	4명

라)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2교 2명

마) 건강장애학생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1회 42명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청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보청기, 송수신기 등 13명 지원

나) 청각장애학생 수어통역지원: 1교 1명
다) 시각장애학생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독서기 등 3명
라) 시각대체교과서 지원

4) 행동중재 지원
가) 긍정적 행동지원팀 구성·운영: 3팀
나) 심각한 행동문제에 대한 개별 맞춤형 행중중재 컨설팅: 22교 212회
다) 장애학생 긍정적 행동지원 운영교 지원: 유 5개원, 초 13교, 중 4교, 고 5교, 특수학교 4교
라) 긍정적 행동지원 역량강화 교사 연수: 2회
마)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무연수: 16명

5) 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교육 운영
가) 방과후교육활동 지원: 외부기관 개설 강좌 참여, 개인별 방과후교육 수강(1인 월 120,000원 이내 실비 지급)
나) 특수학교 방학프로그램 운영 지원: 특수학교 4교 44강좌
다) 유치원 특수방과후과정반 운영: 44학급 175명
라) 특수학교 돌봄교실 운영: 특수학교 3교 8학급

6)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내실화
가) 학교재활지원: 재활사가 해당 학교에서 주 2회 재활지원
나)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월 최대 16만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다) 심리상담 지원: 1인 10회기 지원, 장애유형·정도를 고려한 개별 또는 그룹지원
라) 치료사 역량강화 연수: 44명

- 치료사 현황

(단위: 명)

구분 \ 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북 특수교육 지원센터	울산강남 특수교육 지원센터	특수학교				계
				울산 행복학교	울산 혜인학교	태연학교	메아리학교	
치료사	4	19	15	5	5	4	4	56

-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치료지원 학생	220	1,074	311	226	1,831
심리상담지원	6	101	70	51	228

-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실(거점치료실 포함) 현황

구분	운동 재활실	일상생활 재활실	언어 재활실	청능센터	감각,운동 훈련실	상담실	계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센터	-	1	-	-	-	1	2
울산강북특수교육센터	-	-	9	-	7	5	21
울산강남특수교육센터	-	-	2	-	1	1	4
울산혜인학교	1	3	3	-	1	-	8
울산행복학교	1	2	2	-	1	-	6
태연학교	1	1	2	-	1	-	5
메아리학교	1		2	1	-	-	4
계	**4**	**7**	**20**	**1**	**11**	**7**	**50**

7)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부모 및 가족 심리상담지원: 전문상담기관 연계 개인별 5~10회기 지원, 91가족

나) 건강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3. 4.~8. 4회기 운영

다) 청각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 '23. 4.~8. 3회기 운영

라)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운영

- 특수교육지원센터 보조공학기기 현황

울산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	10종/86개
	청각장애	10종/54개
	지체장애	16종/102개
	의사소통장애	3종/12개
진단·평가 도구		36종/42개
직업평가 도구		16종/31개
성교육자료		2종/2개
교재·교구		285종/424개
스마트러닝 기기		태블릿PC 111대, 노트북 31대

울산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	5종/32개
	지체장애	13종/90개
	청각장애	2종/5개
	의사소통장애	3종/19개
진단·평가 도구		18종/238개
교재·교구		19종/3,163개
도서		7종/2,552권
직업훈련교구		1종/9개
성교육자료		1종/57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12개
신체운동활동자료		14종/26개
컴퓨터활용 CD자료		76종/157개
기타		1종/32개

울산강남특수교육지원센터		
종류		보유현황
보조공학기기	시각장애	3종/33개
	지체장애	6종/48개
	청각장애	2종/2개
	의사소통장애	5종/8개
진단·평가 도구		7종/29개
교재·교구		5종/277개
도서		24종/844권
직업훈련교구		6개
성교육자료		1종/11개
장애이해교육자료		1종/36개
신체운동활동자료		9종/22개
컴퓨터활용 CD자료		1개

8)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2023. 4. 1. 기준)

구분	특수교육실무사	특수통학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2023년	343(8)※	19	314	676

※ 2023년 특수교육실무사 통합직종으로 학교 통학지원 업무 지원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강화 연수 실시

- 신규 채용자(30시간 이상), 기존인력(15시간 이상) 직무연수 이수
- 특수교육 지원인력 집합연수 실시(2회, 4시간, 400명 내외)
- 특수학교 배치 특수교육실무사 자체 연수(연 2회) 실시

다) 사회복무요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16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 기존 사회복무요원 4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9)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강화

장애학생 안전 및 편의를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및 2023년 예산 확보

10)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가) 통학비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신청·지원 절차 준수

나) 특수교육대상자 차량 이용 등에 따른 안전교육 강화

11) 장애학생 안전 강화

가)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생, 교직원 등에 대한 학기별 안전교육 및 학교주변 통학 환경 개선

나) 특수학교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한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예방 강화

다) 재난대응 특수학교(급) 장애학생 보호를 위한 체험형 학교 안전교육 실시

라) 장애유형 및 정도, 주변 환경 등을 고려

마) 재난상황 대비 장애유형별 위험요소 사전파악 및 상황별 대피훈련 실시

바) 재난대응 조력자 지정제도(Buddy System) 운영

사)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학교 내 감염병 관리조직 구성, 단체사고 및 집단 감염 예방·관리 철저)
- 특수학교(급)의 노후 및 낙후 시설 개선, 재난위험 시설 해소
-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학생들의 건강 피해 예방

4. 진로·직업 및 장애인 평생교육 기회 강화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체험축제의 날 운영

가) 대상: 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나) 내용: 진로체험부스운영을 통한 다양한 진로체험의 장 마련('23. 6. 학생

및 교사 400여명 참석)

2) 특수교육대상자의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운영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 지원

- 대상: 중, 고 특수학급
- 내용: 제과제빵 등 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 지원
- 방법: 특수교육지원센터 직업교육실, 거점학교 직업교육실 활용,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활용
- 내용: 자격취득을 위한 운영경비 지원

나) 직업교육 및 현장체험활동 지원

- 대상: 고등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전공과
- 내용: 직업교육·현장체험활동 인솔교사 및 지원인력 여비, 진로·직업교육 운영비등 지원
- 지원액: 급당 3,000천원 지원(공립 - 72학급, 사립 - 8학급)

3)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가) 울산혜인학교(2011년 선정) 학교기업 설치·운영

나) 특수학교(급)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업체)과 협약, 연계 운영, 민간 기업 유치 등 다양한 형태 운영

4) 협업을 통한 장애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가) 특수교육-연계형 복지일자리 사업 운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 내용: 우체국 등 공공기관 일자리, 특수학교 내 일자리, 기타

나) 교육청 카페 '청마실' 운영

- 대상: 전공과
- 내용: 카페 '청마실' 실습을 통한 바리스타 등 서비스업 현장실습

다) 산업체 연계 현장실습장 운영(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일반사업장 일자리 현장실습

라) 고등학교 3학년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자의 현장실습, 지원고용 실시 등 직업교육 연계 강화

5) 장애학생 취업으로의 연계 강화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의 실질적 취업 기회 확대

나) 울산장애인복지관 위탁 맞춤형 일자리사업 사업 및 취업지원
다) 나이스 연계를 위한 진로·직업취업시스템 구축
라) 학생 및 학부모 산업체 현장견학을 통한 취업 기회 확대

6) 장애극복활동프로그램 운영
가)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의 사회적응능력 향상 및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나) 프로그램 내용: 현장학습, 문화유적 탐방, 환경보존 활동, 내 고장 걷기, 타 지역 견학, 단체 활동 등 장애극복프로그램 운영
다) 특수학교 교당 4,000천원 지원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고교학점제 운영

1)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특수학교 4교
2)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3)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울산광역시교육청특수교육지원센터
4) 진로체험자원 확충 및 학생 체험활동 지원 강화: 진로체험처 '꿈길' 등록 안내
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특수학교 4교

다. 예비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지원 내실화

1)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운영지원(12교 85명)
2) 대학진학설명회 운영(6. 10., 1일간, 학생, 학부모, 교사 100여명 참석)

라. 장애성인 평생교육 지원

학교 형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지원: 3기관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지원 및 홍보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 강화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및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 및 점검('23. 12. ~ '24. 2.)
4) 장애의심 영유아 장애 진단비 지속 홍보
5)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협의체 운영('23. 6. ~ '24. 5.)
6) 사립유치원 및 교육요건을 갖춘 어린이집 교원 대상 통합교육 연수('23. 5.)

나. 특수교육기관 확충

1) 울산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관련부서 협조

2) 단설통합유치원 설립 추진: TF팀 운영,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다.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1) 특수교육교원의 직업교육 실기연수 실시('23. 7.~8., '24. 1~2월)

2) 행동중재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연수 실시('23. 6.~11.)

3) 국립특수교육원 위탁 원격연수 및 직무연수 실시

4) 유치원 놀이중심교육과정 연수('23. 9.)

5)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 연수('23. 12.)

6) 특수교사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을 통한 자율장학 지속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컨설팅 지원('23. 11.)

2) 통합교육지원단 현장 맞춤형 컨설팅 지원

나. 학교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교육과정 지원단 운영

2) 울산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23. 10.)

3) 청각장애 통합학급 담임교사 연수 예정('23. 9.)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5개 프로그램 운영, 24교 26회 지원

라. 장애학생 인권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전국단위 운영 평가회 개최

2) 장애인권영화제 운영

3)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육활동 나눔회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지속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친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5) 긍정적 행동지원팀 지속 운영을 통한 행동중재방법 등 컨설팅 제공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정보화 지원 강화

2023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전국대회 참가: '23. 9. 전국대회 참가 17명 예정

나. 개별화교육계획 내실화

1) 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안내 및 점검

2)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실시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동아리 운영

2)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실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 작품전시회 및 찾아가는 작품전시회 운영('23. 11.~12.)

라.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중도중복장애, 건강장애, 시청각장애 지원)

1) 건강장애학생 실시간 화상수업 및 동영상 제작

2) 원격수업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꿈사랑학교 위탁 운영, 49명

마.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치료, 심리상담, 가족지원, 보조공학기기, 지원인력)

1) 치료 및 심리상담지원 내실화

가) 치료·재활서비스비 지원 상시 신청(월 최대 16만원 이내 전자카드 결제)

나) 2024학년도 치료·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자 재활진단·평가 실시('23. 11.~'24. 1.)

2) 가족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 학부모 부모자조모임 운영(9~11월, 2회기 운영)

나) 청각장애학생 부모자조모임 운영(9~12월, 2회기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상담 운영

4)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진로·직업 및 장애인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찾아가는 진로체험활동 운영

2) 원스톱 진로·직업협의체 운영을 통한 장애학생 취업 지원('23. 10.)

3) 다양한 현장실습 및 직업교육을 위한 사업체 개발

4) 장애학생 진로드림 페스티벌 전국대회 참여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내실화 및 고교학점제 운영

1) 자유학기제: 찾아가는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2)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 지원단 운영, 고교학점제 워크숍,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 자료 개발 및 보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특수교육의 추진방향

가. 비전: 특수교육 공동체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의 미래 모델 실현

나. 목표

- 교육청의 책무성 강화를 통한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 교육환경 조성
- 삶의 질을 높이는 특수교육 책무성 조성

2. 세부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나.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개발·보급
   - 예술강사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중점학교 선정(세종이음학교)
   - 재택순회교육대상학생 주 3회 방문 및 원격교육 지원(24명)
   - 2024년 특수교육 함께돋움교육과정 개발지원단 위촉(14명)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 권역별 특수교사 공동체 운영을 통한 교사 전문성 함양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 교원, 선도교원 양성 연수 참여
   - 특수학교(급)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 및 담당자 협의회(4월)

3)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 일반교사, 특수교사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및 유치원,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4월) 운영

4)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 및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점검(5월)

나. 장애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증장애학생을 위한 순회교육 지원

가) 순회교사 증원을 통한 순회교육 대상자 확대 및 지원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순회교사 배치(17명)

나)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도모
-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 매 학기말 순회교육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해당 학교에 제공

2)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가) 만성질환자 중 해당자를 건강장애학생으로 선정하여 교육 제공
- 건강장애학생 화상강의 및 원격수업 지원(7명)
- 건강장애학생 외 장기간 입원학생을 위한 원격교육 지원(10명)

나) 건강장애학생 학적 및 성적처리 지침 이행 지원
-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스쿨포유) 담당교사 역량강화 연수(4월)

다.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운영

1) 학교로 찾아가는 중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강사가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개별화된 프로그램 운영(6월)

2)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 프로그램 참여

가) 일배움과정(2일, 10시간) 체험활동 운영(고등학교 9교, 특수학교 2교)

나) 취업지원실무사 지원을 통하여 내실 있는 실습 기회 제공

3)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격 취득 과정 운영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제과제빵, 바리스타 프로그램 운영(7교)
-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라. 취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1) 맞춤형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평가 실시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진로 선택을 위한 직업평가(고 1, 고 3)실시

2)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참여
가) 직업평가를 통하여 참가 학생 2명 선발(4월)
나) 직무지도원 지도를 통한 개별화된 현장실습 참여 지원
3)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사업 운영
가) 장애학생 학교 내 직무 개발을 통한 졸업 후 일자리 창출
- 학교 내 일자리 직무를 보조할 수 있는 사무보조, 청소보조 등 운영
나) 학기별 선발 및 운영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의 참여 기회 확보
- 특수학교 전공과 학생 대상 2명(상반기) 선발(1월)
다) 직무지도원 배치를 통한 내실 있는 운영 및 취업 연계 지원

2.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1)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가) 영유아 통합교육 거점유치원(1교) 및 동아리(2교) 활동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배치 통합학급에 통합학급 운영비(500천원) 지원
다) 특수교원과 일반교원이 함께 하는 정다운학교 운영(7교) 지원
라) 특수교육대상학생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행동지원단(1교) 운영
2)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학급 담당교사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나) 유치원, 초등학교 담당 교원 연수 운영(113명)
다) 국립특수교육원의 일반학교 관리자 및 교사 대상 연수과정 참여 권장
3) 장애학생 인권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지원
-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유·초단(10명), 중·고단(10명)으로 조직하여 운영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정기현장지원, 특별지원) 운영
- 유관기관 연계(관할 경찰서, 장애인권옹호기관, 세종YWCA 성인권 상담센터 등)를 통해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나)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지원
- 비장애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예술단「어울림」공연활동을 통한 장애공감문화 확산

나.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지원

1) 정당한 교육편의 환경 구축

가) 장애학생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3~4월, 29교)

나) 시각장애 확대 및 음성파일 교과서(19권) 지원

다) 찾아가는 보조공학기기 컨설팅 실시(3~4월, 2교)

라) 시청각장애 교육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및 다양화

가) 특수교육실무사 운영·관리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채용 시 장애인 학대, 성범죄 등 범죄이력 조사 철저
- 특수교육실무사 179명 배치

나) 특수교육실무사 역량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간담회 운영(5월, 15명)

다) 특수교육 지원인력 다양화

- 대상학생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18명) 배치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19명) 배치

다. 특수학교(급) 미래교육 시설 구축

1) 특수학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기회 확대

가) '23년 특수학급 10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

※ ('22) 182학급 → ('23) 192학급

나) 특수학급 신·증설 시 환경개선 및 교재교구비 지원

2) 특수학교(급) 꿈마루교실 운영

- 특수학교(급) 꿈마루교실(공간혁신)을 위한 컨설팅 운영(4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치료지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실화

1) 치료지원 내실화

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

나) 학교로 방문하여 학교 일과 시간 중 언어재활 실시

다) 치료지원 제공 기관별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 행정점검

2) 원거리 통학생 통학편의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다양한 교외 체험활동 지원 등 활동 참여 확대

나) 특수학교 통학 차량 1대당 2명의 통학안전요원 배치로 안전한 통학편의 지원

다) 통학비 지원 대상 학생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월별 통학비 지원

3)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상담 지원

- 더봄학생, 행동지원학생 등 신청학교 대상 상담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 전문상담기관 연계 학부모 개인 상담 및 집단 상담 지원

나.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강화

1) 개별 맞춤형 방과후교육 지원

가) 단위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한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실시
- 학생,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한 개별 맞춤형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 방과후 자유수강권 월 160천원 지급

나) 유치원 방과후과정 지원

- 유치원 방과후과정에 방과후 기간제교사 및 운영비 지원
-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 시 시간강사 및 지원인력 지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계절학교 운영

- 지역사회기관 연계 방학 중 방과후 프로그램 실시

2) 특수학교(급) 돌봄 지원

가) 특수학교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 학부모, 학생의 요구를 고려하여 보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돌봄교실 참여 학생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급·간식비 지원

나) 돌봄전담사 배치 및 운영으로 돌봄 내실화

- 장애학생 돌봄에 필요한 돌봄전담사(6명) 배치 운영

다) 특수학급 돌봄 지원 강화

- 돌봄 참여 학생 중 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인력 지원

3) 지역사회 돌봄교실 참여 지원

지역사회기관과 연계한 돌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기관: 삼육아동센터, 세종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가족지원 등 특수교육 전반 정보 제공

나) 보호자 면담 및 장애아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한 진단·평가 실시

2)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가) 학생과 학부모의 개별화된 심리지원을 위한 전문상담사(1명) 배치

나) 진단·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 및 임상심리사(2명) 배치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담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연수 확대

- 순회교사 역량강화 연수: 기초학습기능검사 평가 및 해석(3월)

3) 현장지원 중심의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급, 가정, 시설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지원

나) 읍면지역 지원을 위한 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인력(5명) 배치

4.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가.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체육 활동 다양화

1) 재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가)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연간 1인 10회 내외 재활승마체험(100명)
- 재활승마 자격을 갖춘 승마클럽과 연계한 재활승마 활동 운영 지원

나) 방과후 수영 프로그램 운영

- 한솔·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연계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영능력 및 수영기술 향상(71명)

2)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가) 세종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찾아가는 특수체육교실 운영

나) 세종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한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및 세종시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및 각 종목별 선수선발, 상시 훈련 지원

※ 제17회 전국장애학생 체육대회 출전 결과 금(4개), 은(9개), 동(4개)
금(4): 육상,(3) 수영(1)
은(9): 육상(5), 디스크골프(1), 조정(1), 수영(1), 탁구(1)
동(4): 육상(2), e스포츠(1), 슐런(1)

나.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확대

1)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 특수교육대상학생 우리가족 놀이터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 운영(월 1회)

2)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학부모 자조모임(3팀) 선정 및 운영비 지원

나) 특수학교(2교) 학부모 자조모임 운영 지원

3) 학부모 힐링 연수

가) 우드카빙, 흙조형예술, 뜨개질 등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프로그램 개설

나) 학부모 연수 프로그램 강사비 및 용품비 지원

다. 특수교육 현장 지원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지원 강화

- 권역별 학교급별 학습공동체 지원(총 21권역)

2) 특수교육 교직원 지원 강화

-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취업지원실무사, 전문상담사 지원 프로그램: 장애영역별 특성에 따른 장애이해 연수 및 전문성 함양 연수 지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4 특수교육 세종창의적교육과정 지침서 개발

2) '23 특수교육 주요정책 공유를 위한 특수교사 연수 운영('24. 2.)

3) 2023 고교학점제 담당교사 연수 및 컨설팅 운영(9월)

4)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수교사 워크숍(10월)

5)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교육지원단 현장지원(매월)

나. 장애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강화

재택순회교육대상학생 주 3회 방문 및 원격교육 지원(연중)

다.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진로프로그램 운영

1)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진로프로그램 참여

- 일배움과정(2일, 10시간) 체험활동 운영

2) 직업생활에 필요한 자격 취득 과정 운영

- 자격증 취득과정운영 지원(7교)

라. 취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사업 참여

1)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운영: 특수학교(급) 고 3, 전공과(9월~11월)

- 세종시가족지원센터, 하나로마트, 보비스쿰 등

2) 장애학생 학교 내 일자리 운영: 특수학교(급) 고 3, 전공과(9월~'24. 2월)

3) 중증장애인일자리지원단 컨설팅 운영: 배치 기관(학교)의 요청에 따라 장애인 근로자 상담, 업무 고충에 대한 조사·지원 등

마. 대학진학을 위한 맞춤형 진학 정보 제공

1)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 진학 상담 및 대학입학정보박람회 운영(7월)

2)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운영(7~12월)

- 대학생활체험 프로그램: 대학캠퍼스 투어, 입학상담 등 대학진학 안내

2. 모두가 성장하는 미래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환경 조성

1) 영화를 활용한 통합학급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구입 및 활용

2) 장애인예술단「어울림」공연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확산

나. 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 편의 지원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직무연수 운영(8월, '24. 2월)

2) 신규 배치 1년 이내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장애이해 관련 내용 포함) 실시

다. 특수학교(급) 미래교육 시설 구축

1) 특수학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2교)

2) 특수학교(급) 꿈마루교실 사업을 통한 공간 재구성(5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치료지원비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실화

특수교육지원센터 방학중 계절학교 운영(여름방학, 겨울방학)

나.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강화

1) 지역사회 연계 특수교육대상학생 돌봄 프로그램 운영 지원

2) 유치원 방과후 기간제교사 통합교육지원방안 연수(9월 2회)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북부지역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프로그램 운영(9월~12월)

4. 행복한 삶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가. 지역사회연계 문화예술·체육 활동 다양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재활 체육 프로그램 수영·승마 운영(연중)

나. 가족 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지원 확대

1) 학부모 대상 상담 및 연수 운영(연중)

2) 토요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연중)

다. 특수교육 현장 지원강화

1) 권역별 학교급별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2) 4세대 나이스 적용을 위한 특수교사 학교급별 연수 운영

경기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경기특수교육 실현

목표

-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 특수학교(급) 확대를 통한 맞춤형 특수교육 기회 보장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

1 학생중심 특수교육 전달 체계 내실화	■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 특수학교(급) 다양화 ■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장애학생 인권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 순회교육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안전 강화 ■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의료 및 관련기관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한 특수교육 안내 체계 확대

나)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특수교육 진단·평가 의뢰 시스템 시범 기관 선정

다) 관계기관(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장애 의심 및 장애영유아 실태 파악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 증설

나)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다) 가족지원을 포함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실행으로 영아의 가족지원 강화

라)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확대

3)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학생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상담 제공

나) 지역 내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 기관 지정 확대 등 협력체계 구축

2) 특수교육대상자 정보관리 체계 마련

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교육 이력 등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연계

3)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가)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관련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나) 일반학교 교직원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 및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협조체계 구축

4)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스마트 오피스 환경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나) 장애유형별 거점지원센터 운영 재구조화 방안 마련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 특수학교 설립 계획 >

(단위: 학급)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	장애유형	교육과정별학급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7 (예정)	시흥광명	[공립]시흥광명특수학교	지적/지체	2	7	7	6	3	25
	고양	[공립]고양특수학교	지적/지체	1	12	12	12	8	45
	포천	[공립]포천특수학교	미정	1	6	6	6	2	21
2028 (예정)	남양주	[공립]남양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4	36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나)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사전 확보

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및 폐교 부지 활용

2)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가)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나) 특수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로 운영하는 특수학교를 단계적으로 확대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유치원 또는 초·중·고등학교 설립 시 특수학급 교실 우선 확보

나) 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학급 우선 증설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특수교사 법정정원 및 정규교사 확보

나) 학급 증설이 어려운 과밀 특수학급에 특수교사 추가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과정 위탁 직무 연수 운영

3)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

나) 특수교육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한 정책 및 모니터링 체계 마련
   나) 일반교사 주도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조정(장애정도와 특성을 고려 1~3명 감축)
   라) 특수교사 양성 대학과 연계한 교육봉사활동 등 교육활동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교(원)장 연수)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인권 관련 내용이 반드시 포함된 특수교육 관련 집합 연수 3시간 이상 이수(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포함)
   나) (통합학급 교사) 순회교육대상자,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강화
   다) (특수학급 교사) 학교과정별・장애유형별 협력교수 역량 강화 연수
   라) (예비교사)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봉사 활동 참여 기회 제공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운영교 확대
   나) 교육청이나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연구회 조직・운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인식개선(장애이해)을 위한 교육 내실화
   가) 모든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나)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한 수업, 교내외 봉사활동 등 활용
2)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육행사 등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 운영
   나) 예능발표회 및 진로·직업교육 활동 전시회, 바자회 등에 지역사회와 주민 참여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분야별 전문가 집단으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 및 역할 강화
   나) 장애학생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 기구 사안 조사 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또는 특수교육전문가가 참여
   다)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으로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활동 강화
3) 특수교육대상자 인권교육・성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학교폭력예방교육(3시간 이상) 의무 실시 안내
나) 일반학교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계획 수립 시 장애인권교육 계획 포함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나) AI 활용·융합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다)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학생의 요구와 필요에 따라 학교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나) 교육지원청의 지원과 특수학급·통합학급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교수·학습자료 활용
가)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교수·학습자료 활용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통합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보급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국립특수교육원 개발 교과용도서 활용
나)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 역량 강화 연수 실시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편성·운영 지침 개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가) 특수교사, 일반교사, 특수교육 지원인력 등을 포함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개별화교육 제공
나)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 학생의 장애정도에 따라 학생집단을 편성하여

개별화교육에 활용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 작성·운영
   나) 순회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특성,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하여 수업 지원확대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및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유관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다) 지역사회 문화예술 관계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기회 제공
2)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체육 인재 발굴 기회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 연계체계 구축 및 장애학생 체육 활동 내실화
   나)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경기도 장애인체력인증센터 등과 연계하여 건강체력평가 지원 및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PAPS-D) 운영
   다)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스포츠클럽 한마당 개최
   라) 학교 스포츠클럽(스포츠 동아리, 패럴림픽 종목 활동 등)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가) 장애학생 체육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 담당 교사 체험형 연수
   나) 관계기관과 연계 체육교사 대상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다) 통합체육 활성화를 위한 통합체육실행연구회 운영 지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22. 6.)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나) 복합특수학급 운영교 확대 및 학년별 학급 운영 권장
   다) 중도중복장애학생 지도 전문성 향상 연수 운영 및 연구회 활성화 지원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모델 발굴·보급
2) 학교 내 특별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학생 지원 강화

가) 도교육청(교육지원청)과 의료기관 간 업무협업 등을 통한 협력체계 강화
나) 특별건강관리지원이 필요한 장애학생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학교에서 지원받는 의료적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
다)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이 교직원・보호자 대상 학생 건강관리 교육 및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력 대상 장애이해교육 등 전문 연수 운영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운영·확대
나) 장애영역별 거점지원센터 중심으로 장애특성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다)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한 담당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라) 권역별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의 원인, 유형, 지역 여건에 따른 다양한 유형의 병원학교 운영
나) 건강장애 선정 절차 과정 중에도 필요한 경우 선(先)교육 지원 가능
다) 건강장애학생의 학교 적응 및 학습격차를 최소화하는 학교 복귀 프로그램 운영

5) 행동중재 지원
가)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으로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집중 치료 및 교육 지원
나)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과정 운영
다)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사. 치료·방과후지원,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치료・방과후지원 운영
가) 교내 방과후, 꿈이든카드(자유수강권) 등 학생 필요에 따라 사용
나) 장애학생의 소질 개발 및 특기적성을 위해 다양한 예체능 학원으로 확대

2)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
가)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학급 확대('21년 125학급 → '22년 165학급 → '23년 180학급)
나) 유휴교실을 활용한 지역 내 돌봄 지원 사업 간 연계 확대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채용 시 자격조건 관리 강화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해한 연수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라)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내실화

2)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가)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마련

나) 특수교육기관-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체계 구축

다) 통학 차량 및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 배치 등 통학지원 강화

라) 각급학교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 제고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가) 특수학교의 학교교육계획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나) 학교 무단 이탈 예방, 실종 방지 대책 수립 및 GPS 위치추적기 지원 확대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가) 재난 상황별 실질적 안전 대피 훈련 실시

나) 학생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학교별 학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나) 특수학교 재난위험 시설 해소 및 소방안전시설 개선

4)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 공단지역, 송전탑 설치 지역 등 학교 주변 위험환경 개선 대책 마련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예술·체육 분야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중점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나)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활 적응 프로그램 개발

다) 진로·직업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 운영

라) 미래형 장애학생 직업교육실을 통하여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2) 유관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학생 특성을 고려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나)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학점제 기반,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운영

Ⅱ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교육-복지-의료체계 연계로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23~)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및 교육 이력의 체계적 운영 방안 마련('23~)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전문인력 상시 지원체계로 특수교육 분야별 세분화된 지원 확대('23~)

다. 특수학교(급)의 다양화

1) 폐교를 활용한 특수학교 설립(2025. 3. 1. 개교 목표 안성특수학교 설립 추진)

2) 대규모 개발사업 협의 시 공립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부지 사전 확보 노력
- 2025년 이후 시흥 및 3기 신도시에 특수학교 설립 추진

< 특수학교 설립 계획 >

(단위: 학급)

설립 년도	지역명	학교명	장애유형	교육과정별학급수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2027 (예정)	시흥광명	[공립]시흥광명특수학교	지적/지체	2	7	7	6	3	25
	고양	[공립]고양특수학교	지적/지체	1	12	12	12	8	45
	포천	[공립]포천특수학교	미정	1	6	6	6	2	21
2028 (예정)	남양주	[공립]남양주특수학교	지적/지체	2	12	9	9	4	36

※ 투자심사 추진 시 장애유형 및 교육과정별 학급수는 배치계획에 맞추어 변동될 수 있음

3) 특수학교(급) 운영 적정시설 확보를 위해 매년 2회 특수학교(급) 신·증설 수요조사(유·초·중 8월, 11월, 고등학교 4월, 8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을 위한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중점 운영교 확대 운영 및 성과공유

* 학교과정별, 보편적 학습설계, 문화예술·체육, 장애유형별 협력교수 모형 등

※ ('23) 30교 → ('24) 35교 → ('25) 40교 → ('26) 45교 → ('27) 50교

2) 일반교사 주도 교육과정적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학교장애인식지수 영역별 연계 프로그램 및 활용 매뉴얼을 보급하고, 초·중·고 통합학급에 적용('24~)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AI 활용·융합교육 거점 역할을 하는 'AI 교육 선도 특수학교' 지정·운영

나.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교육청·단위학교·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및 학교 내 의료적 지원 여건 마련

【의료적 지원체계】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활용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미래를 열어가는 더 나은 강원특수교육

가. 추진 방향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로 맞춤형 특수교육 토대 마련
2) 교육공동체 협력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통합교육 확산
3)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미래사회로 확장되는 교육 실현
4) 지역사회 기반의 진로·직업교육으로 사회참여 기회 확대

나. 중점 추진과제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2)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 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4)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 내실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 배치 등 지원 확대
- 장애유아지도사(32명) 및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12명) 배치

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교육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공립 유치원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유치원 특수학급 현황('23)】

연도	2022	2023
유치원 특수학급 수	36	37

다)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운영으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간 협업체계 구축
- 통합교육 거점 운영 유치원: 늘해랑유치원, 홍천남산유치원(총 2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장애가 있거나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를 위한 진단·평가 의뢰 전후 상담 제공
- 보호자 상담 및 면담·관찰 등을 통해 진단·평가 대상자에 대한 교육적 진단 실시(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병원 연계하여 진단·평가비 지원)
- 진단·평가 담당 교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장애유형별 진단·평가도구 활용 및 심리검사 결과분석 등 연수 운영(진단·평가위원 연수 2회 실시)

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역할 분담·분산 등 기능 구조화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구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협력 특수교육지원센터	비고
지역	춘천	철원	
	원주	횡성	
	강릉	평창	
	속초양양	고성, 인제	
	동해	삼척	
	태백	영월, 정선	
	홍천	양구, 화천	

나)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전문적 지원을 위해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감각장애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구분	소재지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춘천계성학교 소재
강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명진학교 소재

다) 강원특수교육원 설립 추진으로 특수교육지원체제 구축

- 개원목표: 2026년
- 형태: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 동시 설립
- 구분: 본원(춘천)과 2개 분원(원주, 강릉)
- 소요예산: 총 60,000백만원
- 중점기능: 각 도시의 발전 전략을 고려한 특수교육원 특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다양화·특성화로 교육선택권 확대

- 연령·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초·중·고·전공과 과정이 함께 있는 기존 특수학교를 소규모, 단일과정으로 다양화 추진
- 특수학교 재구조화로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과정 운영 추진 진행 중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 현황('22)】

학교명	학교형태	비고
춘천계성학교	유+초+중학교	기본·공통교육 중점
춘천동원학교	고+전공과	직업교육 중점

※ '23~'25 설계 및 공사 → '26. 3. 1.자 특수학교 재구조화 완료 예정

- 고등학교 진로와 직업 분야 중점 특수학급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영서고등학교)

2)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특수학급 신증설 시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 특수학급 신증설 환경개선비 지원: 급당 35,000천원
(환경개선비: 25,000천원, 교재교구비: 10,000천원)

【2023학년도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

▲ 특수학급 신·증설 현황('22년: 397학급 → '23년: 407학급)
▲ 특수학교 현황('22년: 188학급 → '23년: 199학급)

3) 특수학교(급) 교육환경 개선

-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30학급
- 성장과 발달단계를 고려한 활동·놀이중심의 특수학교 운동실 구축
: 강릉오성학교, 동해해솔학교(180,000천원 지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관리자 및 교육전문직원, 담당교사 연수

2) 특수교육교원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으로 교실 수업 개선

-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더배움공동체」 운영(4팀, 12,000천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원학습공동체 운영(특 9교)

3) 특수교육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 노력

- 특수교육담당 교직원 복지지원비 확보 권장(1인당 30만원 이내 실비 보장)

2.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학교)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 관계부서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문가로 구성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도 1단, 지역 17단)

다)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 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2) 특수학급 운영비 지원: 학급당 4,000천원

3) 통합학급 운영비 지원: 학급당 100천원(학교기본운영비 지원)

4) 장애유형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내실화

【청각·시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

〈청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시각장애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 FM보청기 시스템 대여	• 시기능 평가 및 학부모 상담
• 학부모간담회 및 상담	• 무료안과진료서비스
• 청각장애이해교육 및 수어교육	• 시각장애인식개선 및 이해교육
• 청각장애학생대상 진로체험교육	• 가족지원캠프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원도교육연수원 학교지원 법정의무 교육과정으로 교과목 편성(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대상)
-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장)장 워크숍 운영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 통합교육 거점 유치원: 2원, 정다운학교 운영: 4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 강원도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조례(2019. 12. 27.제정)
- 장애이해교육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비(기타운영비) 편성
  : (6학급 이하) 600천원, (7학급 이상) 1,200천원

2)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 인쇄물 및 라디오 방송을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식개선 캠페인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로 장애학생 행동지원과 인권보호 여건 개선 마련
  ※ 국립특수교육원「특수학교 전문상담교사 역량 강화 연수」권장
-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핵심교원을 양성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 정기지원 및 특별지원으로 장애학생 인권 침해 예방활동 및 학교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강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배치된 일반학교는 학교교육계획에 통합교육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 교육부 주관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6월) 및 선도교원(7월) 양성

3) 학생의 장애정도를 고려한 고교학점제 운영 및 안착 지원(특 9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담당교사 연수 운영(7월 중)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 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개별화교육계획 법정 기한】

내 용	기 한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매 학기의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전출학교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전학 및 상급학교 진학 시 **14일** 이내

2)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시 일반교육교원과 보호자 참여 보장 및 의견수렴

다. 순회교육지원 강화

- 재택순회교육 및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순회교육 확대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활동 지원

- 특수학교별 문화예술 활동비 지원: 특 9교(112,500천원)
- 특수학교 체육 활동 활성화 지원: 강릉오성학교, 동해해솔학교(교당 5,000천원)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 지원
  : 강릉교육지원청, 동해교육지원청(청당 10,000천원)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특 2교)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 강원도교육청과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로 협력체계 강화 지원
  (강원도재활병원, 동해 한마음병원)
- 특수학교에 간호인력 배치(상시 또는 순회 지원)로 의료적 지원 강화
  (춘천동원학교, 강원명진학교, 동해해솔학교)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지역 여건과 특성을 고려한 시청각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거점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 운영
  (강원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강원시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4) 건강장애학생 지원

-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병원학교 운영 담당 교원 배치(강릉아산병원)

5) 행동중재 지원

-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연속성과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 기관 연계·협력 강화
  (협력기관: 강원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6)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가) 방과후학교 운영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희망 학생
- 지원내용: 교내 방과후학교, 위탁형 방과후학교, 방학 중 계절학교
- 지원기준: 160천원×12개월, 연 1,920천원(1인 기준)

나) 방학 중 계절학교 운영

- 대상: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방학기간 중 1주 범위 내에서 학교의 여건과 실정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23)】

방과후학교 지원 현황	지원액	이용현황
	1인당 16만원	2,059명 (교내 방과후학교 포함)

※ 지원액: '22: 12만원→'23: 16만원

7)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특수교육지원 및 초등돌봄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자원봉사자 운영비 80,000천원, 초등돌봄지원 350,000천원)

8) 치료지원 내실화

- 대상: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2,424명)
- 지원방법: 치료사 지원, 치료지원비 지원「마음모아카드」
- 1인당 지원비: 160천원×12개월, 연 1,920천원(1인 기준)
- 치료지원 영역: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4.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가. 지역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1) 행복한 일자리 사업 확대 운영
2)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운영의 내실화: 속초청해학교, 태백라온학교
3) 장애학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영서고등학교
4) 전공과 확충 및 운영 내실화: 특 8교, 32학급
5) 전환교육지원센터

【전환교육지원센터 운영 현황('23)】

권역	거점지역	전환교육지원센터	역할
영서 북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홍천	춘천동원학교	– 특수학교(급)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지원 – 지역사회 직업재활 전문 기관과 연계·협력 추진 – 특수학교(급) 교사 연수
영서 남부	원주, 영월, 횡성 평창, 정선	원주청원학교	
영동 남부	강릉, 태백 동해, 삼척	강릉오성학교 동해해솔학교	
영동 북부	속초, 양양 고성, 인제	속초청해학교	

6) 장애학생 맞춤형 직업프로그램 운영 지원

– 지원대상: 고등학교(특수학교 포함)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학급)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학급당 200만원 이내)
(학생) 자격증 취득과정 지원(1인당 60만원 이내)

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1)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2023년 신입생부터 적용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23)】

설립 구분	학교명	장애영역	교육과정	운영학년
공립	춘천계성학교	청각장애	선택 중심 교육과정	1
공립	춘천동원학교	지적장애 지체장애	기본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1
공립	원주청원학교	지적장애	기본 교육과정	1
공립	강릉오성학교	지적장애	기본 교육과정	1
공립	속초청해학교	지적장애	기본 교육과정	1
공립	태백라온학교	지적장애	기본 교육과정	1
공립	봉대가온학교	지적장애	기본 교육과정	1
사립	강원명진학교	시각장애	선택 중심 교육과정	1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부모교육 및 상담, 관계기관 협조 등을 통해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대상 순회교육 제공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의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강화

나)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나.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로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 지역 여건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수요를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 계획 수립

다.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환경 조성

【특수학교(급) 노후환경개선 추진 계획】

연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학급수	30	30	35	35

2. 통합교육 내실화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학교)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계획 수립

나)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완전통합)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 특수학급 미설치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순회교육 등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 교육과정 조정, 상담 등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 및 개별화 교육계획 컨설팅 강화

2)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강원도교육연수원 학교지원 법정 의무교육과정으로 교과목 편성(교원, 일반직, 교육공무직 대상)
- 교육지원청 주관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학교(장)장 워크숍 운영
- 통합학급 및 특수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으로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2)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중도중복장애학생, 감각장애, 건강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
3)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4) 행동중재 지원
   - 행동지원전문가단을 운영하여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 가정-학교-사회에서 중재 일관성 및 연속성과 중재 효과를 높이기 위한 관계기관 연계・협력 강화

4. 진로 및 직업교육 내실화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지원
   - 참여대상: 특수학교 고등학교 및 전공과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진로 선택을 위한 대학생활 정보, 대학 전공체험, 대학 진학 컨설팅 등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 지원대상: 대학생활 체험 프로그램 신청학교
   - 운영기간: 학기 중 또는 방학 중 운영

2)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지역사회협의체 구성

나.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지원단 구성 및 운영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이해를 위한 관리자 및 담당자 운영(하반기)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컨설팅 운영(하반기)

충청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맞춤형 특수교육 및 전환교육 확대

3.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전환교육 지원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적극 홍보

나) 장애 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가) 특수학교 내 영아학급 1학급 설치

나) 특수교육대상영아 재택순회교육 제공(4명)

다)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1학급)

3)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초등학교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다)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학적 등록 관리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 전문 의료기관 및 협력기관 연계 진단·평가 실시

2) 선정배치 절차 준수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준수 등 선정·배치 절차 강화

나) 취학유예 및 면제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3)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의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승진가산점 및 이동가산점 부여

나) 거점센터 운영 및 인력 배치: 행동중재지원센터(2명), 시청각장애특성화지원센터(3명)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교육 선택권 확대

가) 특수학교 학급 신증설: 7학급(영아 △2, 유 1, 초 9, 중 2, 고 △1, 전공 △2)

나) 특수학급 신증설: 20학급(유 1, 초 9, 중 10)

다) 특수학급 신증설 리모델링비 3,000만원, 교재교구비 2,000만원 지원

2) 특수학교 다양화 특성화

- 소규모 단일과정 특수학교 신설: 이은학교(유 2학급, 초 29학급)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가) 특수학급 3학급 이상 설치교에 특수교육교원 중 보직교사 배치 권장

나) 읍면지역 소재 특수학교(급)에 정교사 우선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 역량강화 연수: 배움길(생애주기별, 주제별) 연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량강화연수, 전환교육연수

나) 학습공동체 조직 운영(91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운영(5센터): 청주, 충주, 제천, 영동, 괴산증평

나) 통합교육 거점기관(유) 운영(6센터): 청주, 충주, 제천, 영동, 진천, 음성

다) 유치원 통합교육 지원 강화 사업(45개 유치원)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안내

- 정다운학교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안내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학교 관리자 집합 및 원격연수: 290명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집합 및 원격연수: 334명(연중)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정다운학교' 운영으로 협력수업 등 다양한 통합교육 협력모형 개발

- 선도학교 6교(유치원 2원, 초등학교 3교, 고등학교 1교)

나) 정다운학교 운영 지원 순회특수교사 배치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가) 유·초·중·고 장애이해교육 학기별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나)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133교 385학급)

다)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체험 운영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라) 직장내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안내

2)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및 홍보 강화

-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교직원에서 학부모까지 확대 권장 안내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구축 및 특수학교 내 신고함 설치 운영

나) 특수학교 내 전문상담교사 배치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0센터 11개 지원단 운영

나) 월 1회 이상 정기지원을 통한 학교별 인권보호 현장 점검 및 지원
다)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1회
라)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성)폭력 예방 교육 및 상담 실시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 및 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안내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안내
-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열린배움터) 활용 안내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교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자율적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 운영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보급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철저
가) 특수학급 미설치교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
나) 개별화교육 현장 모니터링 실시: 특수학교 5교(청주혜원, 충주혜성, 청주성신, 충주성모, 청암학교)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장애유형 및 특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주 3회 이상 순회교육 권장
나) 소속 학교의 학사일정에 맞추어 순회교육 실시하여 수업공백 최소화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문화예술 거점 교육기관 운영: 특수학교 11교, 10센터
2)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체육 활동 거점 교육기관 운영: 특수학교 11교, 10센터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지원

가)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나) 중도장애학생의 의료적 지원: 특수학교 2교(충주성모, 청주혜화)

2)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교육활동 지원 및 대체학습자료 공급을 위한 거점지원센터 운영

나)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3센터

3)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운영 및 원격수업 지원

나) 종합병원 내 병원학교(충북대병원) 운영

다) 건강장애학생 학교복귀 프로그램 운영: 청주혜화학교

4) 행동중재 지원

가) 충청권 거점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 충북특수교육원

- 행동중재 지원센터 전담인력 배치: 2명

나) 행동중재 전문가단 운영으로 행동중재 방법 등 컨설팅 지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긍정적 행동지원단 거점 운영: 3센터

라)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 특수학교 5교

마)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공주대특수교육종합연수원 위탁연수 특수교사 10명

사.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방과후학교 운영

가) 맞춤형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1인당 월 14만원 이내

나) 종일반 방과후학교: 44학급, 특수교육 종일반 전담사 1명 배치

다) 유치원 통합형 방과후학교: 시간제 기간제교사 59명 배치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순환근무 실시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 연수(15시간 또는 30시간)

다)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역량강화 연수 실시

라) 특수교육 온나누미(유급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519명)

2) 치료지원 내실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1인당 월 12만원 이내 지원

3)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지원

4)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제공 확대

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학 편의 지원

- 자비 부담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학생 2회, 보호자 4회 이내

6) 각급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계획 수립 등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학교별 여건에 맞는 자유학기제 자율 운영: 특수학교 10교

2) 자유학기제 거점센터 운영: 2센터(청주, 충주)

3) 특수교육대상학생 맞춤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 특수학교 4교

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특화교육과정 운영: 특수학교 2교

다)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 3교

라)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고등학교 3교

마) 특수학교 고등부 및 전공과 직업교육: 특수학교 10교, 고등학교 1교

4)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으로 학생보호 및 특수교육(진로·직업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관계부처(기관) 연계 협력을 통한 현장실습 효율화 도모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지침 안내 및 현장실습 설명회 개최

5)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학교내 일자리 사업

- 장애인고용공단 연계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내 직무훈련을 통한 직무적응능력 개발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 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일반사업체 현장중심 직업훈련, 훈련지원인 직무지원

6)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확립
가)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 10명(특수학교 10교, 교당 1명)
나) 운영계획 및 프로그램 운영 협의 및 컨설팅 실시
7)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가) 지역사회중심 취업지원・사후관리 운영: 나이스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나) 장애학생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전문 인력(취업지원관) 배치
다) 학부모에게 진로・취업 등 자녀의 미래 설계를 위한 정보 제공

4. 전환교육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강화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 경제교육, 직장예절 및 스피치 교육, 직장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방안 교육, 노동인권 교육: 고・전공과(44교, 621명)

나) 대학 진학 정보제공 및 진학상담, 대학생활 체험 제공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설명회: 15개 대학, 학생, 교사 및 학부모 150여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대학입학 자료집 제작 및 대학생활 체험 지원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가) 전환기 학부모교육을 통한 학부모 자조모임의 토대 마련
- 취미·창업클래스+우리 자녀 성장스토리(2팀, 9명)
- 취미·창업 자격증 클래스(2개 영역, 11명)
- 아버지 드론교실 운영(22명)

나) 전환교육 교사연구회 운영 및 전환교육 연수(1회, 17명)
3)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
- 업무 지원 인력 파견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 관련 사항 유기적 협력
- 고등학교 및 전공과 학생 대상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취업지원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지자체, 취업지원기관, 취업처, 장애관련단체 등 19개 기관으로 구성
-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련 기관간 교류 및 협력(4월, 1회)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교육-복지-의료체계연계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나) 장애자녀 양육 정보제공 확대 및 부모 양육 자료 보급
2)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가) 장애영유아 교육보육 실태 파악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담당 교원 및 통합교육 담당 일반교원 특수교육연수
   다)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3학급)
3)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초등학교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및 추가 선정 시 정원에 관계없이 추가 배치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매뉴얼 개정
2)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원 맞춤형 연수 강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수요를 고려한 중장기 신·증설 계획 수립
2) 중등과정 직업중심 특수학교로의 교육과정 개편(청주혜원학교)
3) 특수학급 신증설: 충북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내 특수학급(병원학교) 설치 (2023. 11. 개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교원 직무연수 실시: 1정 자격연수, 생애주기별 연수
   나) 특수교육교원 국외연수(5팀, 20명)
   다) 행동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연수(10명)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심리치유 연수
   나) 교권보호 프로그램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통합 운영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나) 특수교사 주도의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의 책무성 확대, 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유도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정다운학교 6교)

나.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다양화

가) 일반학교 장애이해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나) 장애인권교육 및 장애체험 운영 온·오프라인 장애이해체험관 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및 평가회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가) 자유학기제 연계하여 지역 및 민간 인프라 활용한 체험형 교육 실시

나) 일상 생활 속 디지털 문해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시도교육청 교육과정 개발

나) 2022 개정 교육과정 선도교원 양성 연수(34명)

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안착을 위한 현장으로 찾아가는 연수 운영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및 관리 학기별 이행점검 실시

2) 교육과정과 연계한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이행 철저

라. 순회교육 담당자 대상 연수 실시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유형에 추가된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기준 안내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3)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 운영 컨설팅

나) 시청각 특성화지원센터와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4) 행동중재 지원센터 및 긍정적 행동지원 중점학교 운영으로 긍정적 행동지원 강화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집합 연수

2) 치료지원제공기관별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기점검 실시

아.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학교별 자율적 운영에 기반한 자유학기·학년제 지원

2) 거점센터 중심의 자유학기·학년제 운영 지원

가) 교육과정과 연계한 지역사회 맞춤형 직업체험 활동

나) 특수학교 자유학기·학년제 담당자 협의회 및 컨설팅, 진로프로그램 운영

3)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방 카페' 운영

(1) 청주혜원학교 고 3, 전공과 재학생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고 3, 전공과 재학생

(2) 발달장애영역 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나) 충청북도교육청 어울림 '休' 운영

(1) 청주맹학교(시각장애) 전공과 재학생

(2) 시각장애학생의 직업능력 향상 및 현장실습 프로그램 체험기회 확대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의 체계적인 진로・직업교육 확립

가) 운영 평가회 및 컨설팅, 역량강화 연수

4. 전환교육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전환교육 지원 강화

1) 다양한 진로별 맞춤형 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전환교육 지원

(1) 고 3, 전공과 대상 모의면접 및 컨설팅 실시

(2) 직업체험, 취업 정보제공 등 충북 장애학생 직업박람회 개최

나) 진학, 취업, 장애인 서비스 등 정보제공을 위한 전환교육 매뉴얼 개발 보급

2)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여건 조성

가) 전환기 특수교육대상학생 여가문화교육 지원

나) 교사 및 학부모 대상 전환교육 연수

3) 장애학생 진로·취업 지원 관련 유관기관 연계 협력 강화

가) 장애학생 취업 지원 유관기관 협의회

나)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업무 지원

충청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맞춤형 충남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다. 미래 삶을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3.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조기 발견, 교육적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나)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실태 파악(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안내)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지원을 위한 다양한 진단·평가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전문성 확보(연수 2회)

3)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절차 준수

4)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유치원 또는 학교로의 전환 지원 강화

5) 특수교육대상영유아를 위한 교재 교구 지원, 양육정보 제공 등 다양한 지원 강화

6)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교(급) 확충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급 신·증설(63학급)로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 및 과밀학급 밀집도 완화

※ 특수학교 현황 2020년 8교 → 2021년 9교 → 2022년 10교(공립 8교, 사립 2교)

※ 특수학교(급) 학급수 (4. 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2	11	108	63	55	40	279
일반학교	106		432	164	116	0	818
계	119		540	227	171	40	1,097

※ 특수학교(급) 학생수 (4. 1. 기준)

구분	영유아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8	39	480	291	267	257	1,342
특수학급	414		1,966	712	624	0	3,716
일반학급	78		253	100	92	0	523
계	539		2,699	1,103	983	257	5,581

나)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설립을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지원 강화

- 설립개요: 충청남도 홍북초등학교 이전 부지(홍성군 홍북읍 매죽헌길 5)
- 기본계획수립 및 부지 정밀안전진단(2022) → 자체중앙투자심사 완료(2023. 5) → 중앙투자심사(2023. 7) → 개원(2026)

2) 특수학교(급) 설립의 다양화·특성화

가) 소규모·단일과정 특수학교, 중도중복장애 특수학급 등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추진 중

나) 지역 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추진

다) 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유치원(2개원)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8개원, 2센터)

3) 특수학교(급) 법정 학생 정원 준수 및 과밀학급 지원

가) 유치원(4명), 초등학교(6명), 중학교(6명), 고등학교(7명), 전공과(8명)

나) 과밀학급 교사 추가 배치, 법정 정원 초과 특수학급 교사 추가 배치(12명), 중증장애 지원(3명)

4) 특수교육교원 확보 노력: 학생 4명당 교사 1명

5) 특수학교(급) 시설·설비 확충 지원

6) 특수학교(급) 학생 정원 준수 및 재정지원(급당 4,000,000원, 학교급별 정원 초과 1명당 500,000원)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충남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및 역할

가) 센터 수: 충청남도교육청(1센터), 교육지원청(14센터)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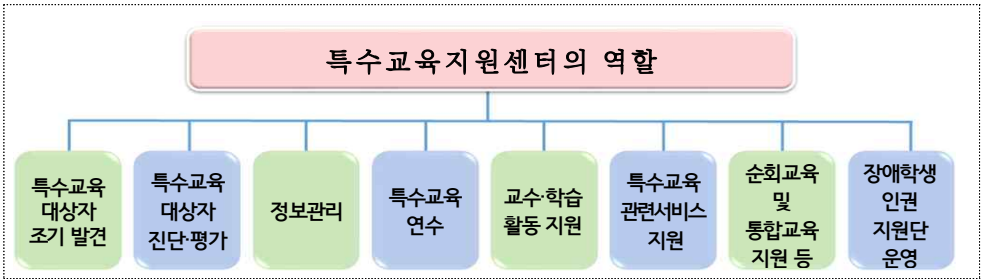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장학사 16명, 교사 97명)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전문성 신장(상반기 연수 1회)

4) 현장중심 맞춤형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원 강화(본청 1, 교육지원청 14센터)

5)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6)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치료지원 및 의료적 지원 강화

7) 가족지원

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지원 강화

나) 가족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특수교육지원센터(14개), 지역 장애인부모회(6개)

다) 대학 연계 맞춤형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4개 대학)

8)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수어통역(5명), 문자통역기(4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94명), 보청기·인공와우용 부품(33명), 보조공학기기(23명), 대체교과서(15명)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보조공학(학습보조) 기기를 대여하고, 기기 사용방법과 관련 정보 제공

9) 통학편의 지원

가) 원거리 통학생의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차량 적정 배치(52대), 통학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통학편의 제공(626명)

나) 통학지원인력 배치: 특수학교와 통합유치원에 통학차량지도원(52명), 운전원 배치(공무직 1명)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전문성 신장 연수기회 확대: 특수교사 1회, 신규 특수교사 1회 이상 운영

2) 통합교육 관련 연수 기회 확대: 연구회(3개), 학습공동체 운영(23개)

3) 상반기 역량강화 연수 추진(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자 연수 1회, 인권지원단 담당자 연수 1회,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 1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연수 1회, 특수교육 교육과정 네트워크 연수 1회)

4) 특수학급 담당 교원 부장교사 임용확대(고등학교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12교, 12명 지정 배치)

5)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6) 특수학교(급) 운영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급)의 요청 주제에 따른 지원 장학 실시(상반기 특수학교 5교 실시)

※ 특수학급은 교육지원청에서 실시(14개 지원청)

나) 배움중심 수업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적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7) 특수학교(급) 단위학교 자율장학 실시

가) 학교 자체 자율장학 수립 시행: 학교자체 자율장학 지원 조직 구성・운영

나) 단위학교 자율적 전문적 교사 학습공동체 운영 활성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강화 및 장애유형별 특성에 따른 신속한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1단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를 특수학급 미설치교 '학교담당자 지정' 운영하여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지원 및 통합교육 실행 지원

2) 특수・일반교사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특수교사와 일반교사 통합교육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10교

나) 특수・일반교사 통합교육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3) 장애유형 및 지역 중심의 통합교육 지원 확대
   가) 장애정도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나) 장애유형별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장애, 행동중재(2센터)
4)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적응 및 학습지원을 위한 도움단 운영(5개 대학)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교육지원청 주관 일반학교 관리자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나) 통합교육 담당 교원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 확대
2)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체제 강화
3)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다.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2) 장애공감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체제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이해교육 강사풀 구축・활용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11청
   다) 맞춤형 장애이해교육・홍보 콘텐츠 배포・활용

라. 장애학생 인권·안전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지원 강화
   - 온라인 인권보호 신고센터 구축
   -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 매년 실시
2) 장애학생 행동지원 체계 구축
3)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15개단 운영(본청 1, 교육지원청 14)
4) 장애학생의 인권교육 강화 및 더봄학생 인권 침해 예방 및 관리
5) 장애학생 대상 성교육 내실화(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인권교육, 2권역, 80명)
6)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성)폭력 피해 예방
7) 영역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동중재특별지원단' 운영
8) 학교차원의 긍정적 행동지원 문화 확산
9)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11)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12) 학교주변 위험환경 개선 노력 지속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재구성, 교과서 이해도 제고, 교수·학습 및 평가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특수교육 교육과정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2) [특수학교] 지역 여건 및 장애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고등학교 과정에서 특정 교과(체육, 예술, 진로와 직업 등)를 중심으로 중점학교 운영 지원
3)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4) 특수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 수준별 수업 운영시 '어서와 충남 온라인 학교' 특수교육 콘텐츠 활용
   가) 특수학급: 초-국어, 수학 / 중-진로와 직업 수업안
   나) 맞춤형 특수교육 수학 콘텐츠: '도니머니, 어서와 화폐공부는 처음이지?' 영상자료 제작 탑재
   다) 주제 중심 수준별 학습 콘텐츠: 3개 주제(표지판, 시간 개념, 개인위생) 탑재
5)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 내실화 지원: 영유아의 발달단계·장애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 운영
6)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7) 고교학점제 전면 적용을 위한 단계적 이행 준비(특수학교대상 연수 2회 실시)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매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그 결과 통합학급 교사, 특수교육대상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
2) 매 학년 시작일 부터 2주 이내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매 학기 시작일 부터 30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진학 및 전출 시 전입학교로 14일 이내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3)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인근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특수학교(급) 등과 협력하여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지원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장애학생 1인 1기(技), 문화체험 활동

및 예술 동아리 지원 강화

가) 방과후학교와 연계한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 IT결합형 타악기 어울림 연주단, 사물놀이 연주단, 합창단, 오케스트라 운영

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 활용 및 관계기관, 문화예술인 재능기부 등을 통해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체험 기회 제공 및 문화향유권 확대(10교)

2)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장애·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가)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육성(26교)

나) 장애인 체육대회 종목별 선수 조기 발굴: 희망 학교 중심으로 체육 육성 종목 발굴 지원(8개 종목)

다) 장애인체육회와 삼성SDI 스포츠스쿨을 연계한 선수 육성(40명)

라) 대한장애인체육회 통합체육교실 운영 사업 연계 지원(26명)

마)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결과(선수 144명, 메달 124개(금 37, 은 47, 동 40), 종합 3위 달성)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능력 신장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연수 강화

4) 특수학교「학교스포츠클럽」운영 강화(10교)

라.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정보화 지원 확대

가) 장애학생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설 및 기기 지원(17교, 4센터)

나) 특수교육교원의 정보화 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연수

다) 특수교육대상학생 스마트기기 활용 교수 모형 적용 및 자료 보급

2)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의 정보 접근권 강화

3) 장애학생 교육정보 지원 시스템 구축 운영

가) 순회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스마트기기 활용 수업

나) 장애학생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지원 사이트 운영

4)「장애학생 스마트교육」지원: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e-스포츠실' 구축 - 장애학생 스마트교육 지원: 29교, 4센터

5)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확대: 스마트 미래교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AI) 활성화(예산꿈빛학교 - 빛나는 AI교실 운영)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중도중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특수학교 학급 및 각급학교 특수학급은 1/2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 하향 조정 가능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시설 접근성, 이동 편의성을 고려한 공간 및 보조공학기 지원, 심리안정실 등 구축

다) 중도중복장애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특수학교 10교)

2)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교생활 의료적 지원(20교), 의료적 지원을 위한 보건교사 추가 배치(1교), 치료지원전담팀 운영

3) 특수교육대상학생 행동중재 지원 강화

- 행동중재 프로그램의 지원을 위한 행동중재 거점지원센터 운영(7센터)

4)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시청각장애 거점지원센터 운영(1센터): 점자·확대 및 수어·문자통역 서비스 등

나) 시청각장애학생의 교육지원 제공: 수어통역, 문자통역, 보청기·인공와우용 배터리지원, 보청기·인공와우용 부품 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대체교과서 지원

5) 특수교육대상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강화

가)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이 필요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또는 원격수업을 통한 교육 제공

나) 병원학교 운영: 3기관(단국대학교 천안병원, 국립공주병원, 아람메디컬병원)

다) 건강장애학생 소속학교 담임교사, 병원학교 강사 및 보호자 교육(1회)

라) 원격수업 운영 지원 강화: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

마) 건강장애학생 학적・성적처리 지침 이행

바) 건강장애학생 학교 복귀프로그램 운영: 건강장애학생의 소속학교 교원 및 또래 학생을 포함하여 운영

바. 순회교육 지원 강화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 계획을 작성・운영
-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음

나) 순회교육 담당 교원 연수 강화

-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방법, 가족지원, 성교육, 인권보호 등에 관한 연수 강화
- 학기 초 순회교육 대상 학교 관리자, 통합학급 교사 연수 지역별 추진

사.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돌봄참여: 공립유치원 시간제 기간제 교사 배치를 통한 방과후과정 운영 지원(108명)
2)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전자결제카드(방과후배움카드) 시스템 도입(2023. 3.적용)
3) 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실무원 배치 운영(특수학교 9교, 24명)
4) 장애전담 어린이집,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한 종일반 운영
5) 지원이 필요한 가정(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 가정 등) 중 희망자 우선 지원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신규 채용인력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30시간 이상 직무교육 실시 (교육지원청, 학교 단위연수, 원격연수 포함)
   나) 기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2) 치료지원 내실화: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3,433명)
3)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편의 제공(626명)
4) 교사와 청각장애 학부모 의사소통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지원(56교, 80명)

4. 미래형 진로·직업 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

1)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 자유학기제 운영(특수학교 9교),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8개) 지정・운영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운영 중점
3) 내실있는 진로교육을 위한 진로연계학기 운영: 중학교 3학년 2학기에 운영
4) 교원 및 보호자 교육을 통한 참여 공감대 확산
   가) 교사연구회 등 학습공동체 구축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학습특성을 고려한 학생 중심의 수업 방법 적용
5) 진로체험지원전산망 '꿈길'을 통한 체험활동 활성화 및 질 관리
6)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설계지원

1) 고교학점제 운영: 특수학교 10교
2)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모델 운영교를 통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다.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장애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나) 특수학교 초 5~6학년 진로교육 집중 학년제 운영(1교)
   다) 장애학생 사회전환교육 프로그램 운영(8교)
2) 장애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활성화
   가) 교육과정 내 안정적인 학습 중심의 현장실습 운영
   나) 직업평가를 통한 학생의 적성·흥미·요구 등에 맞는 직무를 고려한 현장실습 운영
   다) 산업체 및 장애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업하여 학생의 현장 적응 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과정 운영(10명 예정)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 강화
   가) 장애유형·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및 취업지원 방안 마련
   나) 중증 발달장애학생들을 위한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사업 참여 확대
4) 중등과정 이상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9교) 및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체계 강화
   가)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실습 담당교사 연수:(상반기 1회)
   나)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48명), 중증 장애학생 '희망일자리' 사업(150명)
   다) 현장중심 맞춤형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확대 운영(4기관)
   라) 장애학생 취업지원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운영(본청 1개단 28명, 14센터)
   마) 특수학교 학교기업 추가 선정(예산꿈빛학교, 총 4교)

다.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 대학연계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지원(2개 대학 7월, 12월)

라. 장애인 평생교육 안내

1) 지역별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2) 충청남도교육청 산하 평생교육기관 및 지역 평생교육기관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간 연계 체계 구축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특수학교(급) 다양화 및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1) 특수학급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교(급) 40학급 환경개선 지원
2) 충청남도교육청특수교육원 중앙투자심사 예정(7월)
3) 천안·아산지역 특수학교 신설 추진(19학급, 2026. 3.예정)

나.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전문성 신장 연수 기회 확대
   가) 특수교육 교사 직무연수 실시: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회, 교육지원청 주관
   나) 특수교육교원의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장애유형별 역량 강화 연수 실시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관계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가) 건강보험공단, 병원, 보건소, 어린이집, 사설특수교육실, 복지관, 직업훈련학교, 산업체 등 의료・교육・보육・직업 등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나) 주민센터, 시・군・구별 장애인 복지관련 부서와의 교류 등을 통해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장애인 복지 프로그램 활용
   다) 특수교육교원 양성대학 등 인근 대학, 지역 내 인적자원과 연계하여 자원봉사 등 교육기부 인력 활용
   라) Wee 센터 등 교육지원청 내 센터 간 업무 협력을 통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강화
   마) 특수교육지원센터 현장 맞춤 지원 장학(14개 센터)
      – 2024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계획 및 진단・평가 시행

라.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1) 일반학교 관리자 및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연수 확대 및 평가조정 우수사례 공유
2) 중도중복장애학생, 위탁교육을 받고 있는 건강장애학생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평가 방안 마련・적용
3)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확충: 하반기 특수학교(급) 교육환경개선(23교 예정)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강화

가. 통합교육 지원 강화

1) 유치원 통합교육 거점기관 자문상담, 통합유치원 지원단 운영

2) 통합교육 및 장애인식개선 연수(관리자 3시간, 통합학급 담임 15시간)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직무교육 등)

가) 신규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직무교육 16시간 이상 교육지원청별 실시

나) 기 배치 사회복무요원 대상, 연 2회 이상 장애이해・인권교육 실시

다.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정착

1) 일상적 장애공감 장애인식개선 행사 추진

가) 교육지원청과 지역 주민이 연계한 작은 음악회, 콘서트, 연극, 사물놀이 등

나) 특수학교(급)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학예회 등

다) 장애이해 주간 운영: 모든 교직원・학부모 대상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행사

2) 충남교육청 장애인식개선교육위원회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보호 강화

1) 장애학생 인권교육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대면조사 등) 실시 및 조치, 예방대책 수립

나) 특수학교 인권교육의 날 운영

다) 인권지원단 상시 현장지원 실시(14개 지원단)

라) 초・중・고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권 교육 연 2회 실시 의무

마)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자기보호 역량 강화 교육 연 2회 이상 실시

바) 각급학교에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학칙 등 신설・강화

사) 장애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일반교사와 협업 체계 구축

2) 장애학생 성교육 내실화: 특수학교(급)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매 학기 1회 이상 성교육 실시

3) 특수학교(급)와 관할 경찰서의 협력을 통해 방과후 장애학생 대상 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 · 체육 지원 강화

1)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스포츠강사 우선 배치 노력

나) 장애 · 비장애학생 통합스포츠 프로그램,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확대

다) 장애학생 체육꿈나무 육성 사업으로 장애학생 우수 선수 발굴 · 육성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한 관련분야 연수 확대

마) 충남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7. 1. 예산꿈빛학교, 학생 100여명)

바) 전국장애학생 e페스티벌 참가(9월, 경주, 학생 25여명)

사) 충남장애학생체육대회 운영(10월 공주시 일원, 선수 및 지도교사 1,500여명)

나. 방과후 교육 · 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기 · 적성 계발과 학습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

가) 장애개선을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

나) 꿈과 끼를 키우고, 발달 요구에 적합한 방과후학교 운영

다) 장애학생 특기 · 적성, 문화예술 · 체육 중심 프로그램 운영

2)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가) 여름 · 겨울 방학 프로그램 운영 형태의 다양화

나) 장애 특성, 학부모의 요구, 지역 실정을 고려한 특성화된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다) 대학연계 예비특수교사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봉사활동 참여 권장

라) 체육 · 문화예술 등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4. 미래형 진로·직업교육 강화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확대 · 발전

1) 지역사회 중심의 체험활동 지원 강화

가)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양질의 체험처 · 체험프로그램 확충

나) 지자체, 대학 등과의 진로체험지원협의체 구성 · 운영, 네트워크 구축

다) 거점센터-진로체험지원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학교 진로체험처 매칭, 안전한 체험처 관리

라) 꿈길,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표준사업장, 진로체험버스 등을 활용하여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나. 특수교육대상자 진로·직업교육 전문화

1) 지역사회중심 원스톱 취업지원 협의체 운영 및 실습처 컨설팅 실시

가) 장애인복지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과 협업을 통한 현장 실습 활성화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지원

2) 하반기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한국장애인개발원 연계, 4개 수행기관)

3) 충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직업체험 프로그램 하반기 운영(장애인고용공단 연계)

4) 장애학생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지원관 배치(센터 3명 추가 배치) 예정

5) 장애학생 진로진학 설명회 개최

다.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지원

- 대학생활 체험: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2교, 학생 25명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학생 중심 특수교육

2. 추진 목표

가. 학생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미래를 준비하는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3.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라.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홍보영상을 통한 특수교육 정보 전달 강화

2) 특수교육대상영아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학교 내 영아 학급 운영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이 과정 지원 강화: 연 1회 이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기능별 특성화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

가) 진로·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3개소(504,183천원)

나) 장애영역별 거점센터 운영: 3개 센터 운영(시각, 청각, 지체 / 50,000천원)

다) 장애학생 행동중재 거점센터 운영: 1개소(34,000천원)

라)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특성화 센터 운영: 4개소(50,000천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및 진단·평가 담당 교원 전문성 연수: 2회

나) 업무 담당자별 연수: 신학기 준비를 위한 지원센터 워크숍 등 2회

다) 찾아가는 지역 센터 컨설팅 운영: 2회

라) 선정배치, 진단·평가, 관련서비스, 순회교육 등 업무 길라잡이 제작 배포

3) 순회교육 내실화

가)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지원 강화

나) 재택(가정, 시설, 병원 등) 순회교육 학생을 위한 가족지원, 의료적 지원 서비스 확대

다) 순회교육 대상 학교의 장애이해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컨설팅 지원

다. 특수학교(급) 설치 확대 및 여건 개선

1) 연도별 특수학교(급) 신증설 현황

연도	일반학교 특수학급												특수학교			합계		
	유			초			중			고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소계	증	감	계
2022	8	1	7	12	3	9	7	3	4	0	2	△2	11	11	0	38	20	18
2023	3	0	3	15	3	12	5	1	4	5	0	5	10	9	1	38	13	25

2) 특수학교 다양화 및 특성화 추진

가) 전북 동부권 특수학교(중, 고, 전공과 진로·직업 중점학교, '26. 3월 개교)

나) 군산 특수학교(문화예술·체육, 서비스 및 농생명 분야 특화, '27. 3월 개교 예정)

다)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2명(특수학교 설립 다양화 및 특성화 방안)

3)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가) 신증설 특수학급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 지원: 33학급(500,000천원)

나) 노후화된 특수학교(급) 환경개선비 연차적 지원: 20학급(500,000천원)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제6차 전북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및 2023 운영계획 설명회: 2023. 2월

2)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지원 강화: 20개, 197명(29,000천원)

구분	영역	수	내용
연구회	정보화, 교육과정	2	전문화와 일반화를 위한 전문 연구회 운영
교사 연수회	진로·직업	10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정보예술	6	에듀테크 기반 디지털 역량 강화
	교과연구	2	장애영역별, 교과별 교실 수업 개선 연구

3) 교과별 수업 및 장애특성별 지도역량 강화 연수

가) 2022 개정 교육과정 직무연수 및 핵심 교원 연수: 2회

나) 에듀테크 활용 특수교사 역량 강화 연수: 2회

다) 주요 정책 관련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실행: 6명

라)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역량강화 연수: 연중

4) 특수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사 국외연수: 17명(인솔자 포함), '23. 8월, 독일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장애학생 적정 배치, 통합학급 학생 수 감축 등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노력

2) 정다운학교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9교 대상

나. 일반 학교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 학교 내 통합교육지원실 운영 지원: 6교(30,000천원)

2) 현장맞춤형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14개단 구성 및 운영(30,000천원)

3) 통합교육 협력 모형 개발을 위한 정다운학교 운영: 9교(40,000천원)

4)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운영: 2교(20,000천원)

5)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통합학급 프로그램 지원: 100학급(100,000천원)

6) 장애영유아 통합교육지원센터 운영: 5개 센터(20,000천원)

7)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수행: 1명, 장애유아 통합교육 방안 연구

8)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 연수 확대

가) 일반학교 교(원)장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이수 의무

나) 통합학급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권장: 매년 15시간 권장

다.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연 2회 이상 의무

2)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14개 특수교육지원센터(41,000천원)

3) 각급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가)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모든 학교 및 기관 전체 직원, 연 1시간 이상
   나)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신고의무 연수: 모든 학교 및 기관 직원, 연 1시간 이상
   다)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 연 1시간 이상
4) 각급학교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교육과정 설명회 등 활용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장애학생 온라인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2)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 10교
3) 2023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23. 6월~11월, 온라인조사 및 대면조사
4)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15개단, 176명 위원 구성(150,000천원)
   가) 매월 정기현장 지원 및 특별지원 통한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 지원
   나) 더봄학생 대상 맞춤형 지원
   다) 인권지원단 위원 대상 역량강화 연수: 2회('23. 2월, '23. 7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착 지원
2)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강화 지원: 9교(54,000천원)
3)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교육환경 조성 및 운영비 지원: 9교(180,000천원)
4) 특수학교(급) 맞춤형 교육활동 자율선택과제 운영: 100학급(150,000천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1)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지원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의 특수학급 미설치교 대상 개별화교육계획 컨설팅
3)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기능 활용 연수
4) 특수학교(급) 통합교육지원단을 활용한 사전 컨설팅: 연중

다.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지원: 13개 센터
2) 장애학생을 위한 인공지능 로봇 활용교육 시범 운영: 1교(80,000천원)
3) 특수교육 정보화연구회를 중심으로 특수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4) 2023 전북장애학생 e페스티벌 대회(정보경진대회, e스포츠대회): '23년 6월~7월

5) 특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실을 활용한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AI로봇 체험, XR모션센서, 코딩로봇체험, VR자전거 등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 문화예술 활동 특화교실: 3교(20,000천원)
2) 문화예술 거점센터 운영: 3개소(40,000천원)
3)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예술·체육 활동지원: 10교(80,000천원)
4) 특수학교 체육진로탐색지원: 10교(50,000천원)
5) 장애학생 건강체육 활동 지원 거점센터: 1개 센터(10,000천원)
6) 전북장애인체육회 연계 특수학교(급)생활체육 및 통합체육수업 운영: 127교
7) 장애학생 글로벌 문화체험을 위한 국외현장체험학습 운영: 2회, 60명(175,000천원)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가) 병원학교 운영 지원: 전북대병원 한누리 병원학교(80,000천원)
   나) 원격수업 수강 지원: 3개 기관 위탁(131,853천원)
   다) 건강장애 및 보호필요학생 담당교사 연수: '23년 4월(3,752천원)
   라) 원격수업시스템 구축 및 수업콘텐츠 개발 지원(24,100천원)
2)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41명(48,000천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의료인력 지원: 4교(50,000천원)
4)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강화
   가) 장애영역별 거점센터 운영: 3개 기관(시각, 청각, 지체)
   나) 시각장애학생 및 교사용 교과용 도서 보급: 6명, 2회(25,200천원)
   다) 보조공학기기 지원: 특수학교(10교, 100,000천원), 거점센터(40,000천원)
5)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중재 지원을 위한 거점센터 운영: 1개소
   나) 행동중재지원 전문가단 구성 및 개별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10명
   다) 행동중재 직무연수 운영: 65시간, 20명, '23년 8월~11월
   라) 지역별 행동중재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사학습공동체 운영: 10개
   마)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과제 수행: 3명, 장애학생 행동중재지원방안 연구

바. 방과후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학교(급)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3,000명(4,008,000천원)

2) 유치원 특수학교(급)방과후 과정 시간제기간제 교사 지원: 75학급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가)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 지원: 430명(16,996,923천원)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도교육청 주관 연 5일 실시

다) 특수학교(급) 지원을 위한 자원봉사자 운영: 25명

라)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 96명(1,081,000천원)

마) 특수학교 기숙사 생활지도사 및 간호사 배치 및 지원: 9명

2) 치료지원 내실화: 월 17만원 내 실비 지원, 3,440명(7,017,000천원)

3) 특수학교(급) 승강기 및 기타 편의시설 확충: 31교(582,000천원)

4)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 지원: 1,300명(651,000천원)

5)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통한 조기교육지원 확대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및 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재난 상황별, 장애특성별 체험중심의 안전교육 실시

3) 장애학생 안전체험 교육 강화(13,640천원)

4) 특수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학교시설 안전 관리 철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1) 지역 기반 활용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강화

가) 초등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지원: 2교(10,000천원)

나) 학교(급)간 진로교육 연계교육 활성화 지원: 1교(15,000천원)

2) 특수교육대상학생 특화 진로·직업교육과정 지원

가) 특수학교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지원: 2교(20,000천원)

나) 특수학급 직업교육 거점학교 운영 지원: 3교(30,000천원)

다) 특수학교 중증장애학생 직업교육 운영지원: 9교(90,000천원)

라) 학교기업 선화 체험관 운영 활성화: 1교(21,000천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가) 진로·직업 교사 연수회 지원: 10팀(15,000천원)

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전문성 강화 및 역할 제고

2) 장애학생 산업체 도제교육형 현장실습 지원: 10개 기관(50,000천원)

다. 관계 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 취업 지원 확대

가) 관계 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취업지원시스템 활성화

나) 고용노동부 연계 일배움 프로그램 참여 확대로 일자리 확보

다) 복지 일자리 직무 다양화 및 참여자 확대

2)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사업 활성화

가) 교육기관 내 장애학생 희망드림 직업 실습 운영: 80명(322,000천원)

나) 특수행정실무사 배치 확대로 고용률 향상 지원: 70명

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18기관(48,000천원)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

1) 전라북도교육청 공식 유튜브 홍보영상 탑재: 8월

2) 특수교육대상영아 교육 현황 파악 및 지원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입학적응 프로그램 운영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기능별 특성화 거점센터 운영: 연중

가) 장애유형별, 행동중재거점, 문화예술·체육 활동 거점센터 운영: 연중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직무연수 운영 및 보고회: 8월~11월

다) 업무 담당자 협의회 및 거점센터 운영 사례 나눔회: 7월~11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성 강화

가)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우수사례 공유: 6월~7월

나) 진단·평가 전문성 향상 연수: 2회(7월~8월)

다) 업무 담당자별 협의회 및 사례 나눔회: 3회(7월, 9월, 11월)

라) 센터 업무 지원을 위한 자료집 개정 및 제작: 2종 / 12월

3)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설치 확대 및 여건 개선

1) 특수학급 신·증설 요구 현황 파악 및 컨설팅: 연중

2) 전주 지역 특수학교 설립 추진

3) 특수학교(급) 교실 환경 여건 개선 지원 및 컨설팅, 결과보고: 11~12월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및 일상생활 활동 교원 연수 확대

2)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사례 나눔을 통한 일반화 확대: 11월

3) 특수교육 정보화연구회 및 교육과정 연구회 발표회: 10~11월

4) 정보화연구회 연계 교사 연수를 통한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

5) 특수교육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국외연수: '23년 8월(7박 9일), 독일 방문

6)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정책연구 중간 및 최종보고회: 8월~12월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지원실 설치: 6교

2) '학교장애인식지수' 시범 적용 및 활용: 하반기 실시 9교

나. 일반 학교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및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연중

2) 장애영유아 통합교육 거점센터, 정다운학교 운영컨설팅: 연중

3)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컨설팅 지원: 4회(4월, 5월, 6월, 10월)

4) 유치원 특수학급 및 통합유치원 확대(2개원)

5) 통합교육 중점 연구학교 및 정다운학교 운영 보고회(12월)

6) 일반학교 관리자 및 통합학급 담당 교원 특수교육관련 의무 연수 확대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 문화 정착

1) 모든 유·초·중·고등학생 대상 장애이해 교육을 통한 장애공감 문화 조성

2) 각급학교, 교육행정기관의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3) 전북아카데미 학부모 교육 시 장애인식개선 홍보 동영상 시청: 매회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활동 확대 및 현장 지원 강화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수립 및 지원

3) 2023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
4) 전북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역량강화 연수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2022 개정 전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및 고시: 11월
2)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착 지원 권역별 연수: 8월
3)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특수학교 교장(감), 교사 연수
4) 특수학교 자유학기제 담당자 연수 및 사례 나눔: 10~11월
5)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 11월
6) 특수학교(급) 맞춤형 교육활동 자율선택과제 우수사례 확산: 11월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1) 특수학교(급)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지원: 연중
2)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기반 개별화교육계획 기능 활용 지원

다.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미래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 대상 교육활동
2) 2023 전북장애학생 e페스티벌 개최 및 전국 대회 참석

라.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학교 및 지원센터 문화예술·체육 활동 운영 지원
2) 지역사회 연계 장애학생 생활체육 및 통합체육 활동 지원 강화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회: 11월~12월
4) 장애학생 글로벌 문화체험을 위한 국외현장체험학습 운영: 하반기, 30명

마.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건강장애학생 및 보호필요학생 교육 지원: 연중
2) 중도중복장애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지원 결과보고 및 사례 나눔: 11월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 결과보고 및 우수사례 공유: 11~12월
4) 장애영역별 거점기관 운영 평가회 및 향후 계획 협의: 11월
5) 개별 학생 대상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보고회: 11월
6) 행동중재 직무연수 보고회: 11월

바. 특수학교(급) 방과후교육 운영 지원: 하반기 6~12월

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 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강화 연수 및 자원봉사자 지원: 연 2회
2) 치료지원 운영 및 질 관리(제공기관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연 2회 이상
3) 특수학교(급)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교육 편의 확대

아.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특수학교(급) 체험 중심의 장애학생 안전교육 확대
2) 특수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 교육 및 학교시설 안전 관리 철저

4.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가. 지역사회 기반 진로·직업교육 지원

1) 2023 전국 진로드림 페스티벌 대회 참여: 50명(28,050천원)
2) 장애학생 대학생활체험 지원: 30명, 9~12월(72,000천원)
3) 장애학생 진로탐색 프로그램 지원: 호남권 특수학교 25교(9~1월)
4) 특수교육 진로·직업 교사 연수회 운영 평가: 11월
5) 특수교육 진로·직업교육 분야별 사업 평가회: 12월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1) 전북 발달장애인 훈련센터 연계 직무연수: 30시간, 8월
2) 장애학생 원스톱 지역 협의체 운영: 8~12월(5,040천원)
3) 특수교육대상학생 학습중심 현장실습 현장 모니터링: 10~11월
4)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운영 평가: 12월

다. 관계 부처 연계 취업 지원 확대

1)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지원: 12명, 9~12월(40,000천원)
2)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합동 모니터링: 10월
3) 특수행정실무사 기관별 수요조사 및 배정: 10~11월
4)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평가회: 12월

전라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 목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3. 중점 추진과제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다.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및 역량 강화

라.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마.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가) 센터 누리집, 부모교육 및 상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한 무상교육 홍보

나) 장애자녀 양육정보 제공 확대 및 '온맘' 연계 홍보 강화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가) 유치원 특수학급 편성기준 개선: 학급당 2명 이상 → 1명 이상

나) 유치원 특수학급 편성 확대: 전년대비 11학급 증가

- 특수학급 59학급 → 68학급, 특수학교 5학급 → 7학급

다)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유치원 3원 운영

3)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초등학교 전환 지원 강화

가) 초등학교 입학적응 지원 강화

나) '처음학교로' 이후 신청학생 정원 외 입학가능 안내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및 진단·평가 체계 구축

1) 특수교육대상학생 조기 발견 체계 구축

가) 특수교육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및 적령 입학 상담 강화

2)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단·평가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 매뉴얼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현황

센터장	장학관	장학사	순회교사	운영강사	치료사	주무관	계
23	1	23	72	20	23	2	164

2)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 연계 강화

가) 지역 내 의료·교육·보육·직업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 운영위원회, 인권·통합교육지원단, 유관기관 협의체 등 구성·운영

나) 장애유형별 거점센터(3), 진로·직업 거점센터(7), 문화예술 거점센터(1)

다) 지자체 등 협력을 통한 장애학생 가족지원 서비스 및 정보 제공

라) 소규모지역 순회교육 및 치료지원 등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3) 특수교육지원센터 담당 인력 맞춤형 연수 확대

가) 센터장, 교육전문직 워크숍 실시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전문인력 역량강화 연수 확대 실시

라.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학급 편성 기준 개선

2) 특수학급 현황

	유	초	중	고	전공과	계
특수학교	7	76	47	56	34	220
특수학급	68	404	165	91	-	728

3)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 선택권 확대

4) 특수학교 다양화·특성화: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추진(공약)
5) 지역여건과 장애특성을 고려한 특수학교(급) 운영 확대
가)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예술중점 특수학급(1교)
나) 체육중점 특수학교(2교)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사 배치 개선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
가) 개정교육과정 및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수 실시
나)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전남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발
다)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한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
라) 배움중심 수업 활성화를 위한 '특수교육 실천사례 연구대회' 운영
마)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확대
3) 특수교육 관계자 심리적 소진 예방과 치유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 관계자 마음돌봄 연수 실시(연 5회기)
- 특수교육교원, 특수교육실무사, 장애학생 가족, 특수학교 교직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장애유형별 신속한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22단) 구성·운영
나) 통합교육 적응력과 학력신장을 위한 멘토링제 운영
다) 일반학급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순회교육 강화
라)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거점유치원(3원) 운영
2)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
가) 통합교육 협력 모델 확산을 위한 통합교육 중점학교 운영(3교)
나) 교육부 지정 교육과정 연구학교(통합교육) 운영(1교)
다) 통합교육 교사연구회(10팀) 운영 및 우수사례 발굴·보급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가) 일반학교 관리자 연수 및 통합학급 담당교사 연수 강화
- 통합학급 담당 교원 연수비 지원(950명)

나) 통합학급 담당교사 인센티브 제공 권장: 학생 수, 업무경감, 성과금반영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의무 실시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전문가 활용 장애이해교실,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공연 실시

나) 특수학급 미설치교 '찾아가는 통합교육지원단-장애이해교실' 실시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각 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교육 의무 실시

나) 장애인식개선교육 학부모까지 확대 실시

4)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정다운학교 시범

5) 공모전, 백일장, 콘텐츠 활용 등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특수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라) 장애인권교육 강화 및 성교육 내실화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특수학교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나) 가상체험 프로그램 운영(3교) 및 AI중심 전문적 학습공동체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 국립특수교육원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자료 보급

2) 국립특수교육원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활용

3) 찾아가는 상상 체험버스 프로그램 활용 등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지역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가) 학교의 특성, 교육공동체 요구 및 필요에 따라 교과(군)별 시수 증감

편성·운영

나) 체육교육 중점학교(2교), 학교 간 진로·직업교육 중점학교(9교) 운영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강화

가) 전라남도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안내

나)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 계획 수립·반영 및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안내

다) 특수교육 교수·학습자료 활용 및 전남 특수교육 플랫폼 활용 지원

라)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지원 강화: 교원연수, 자료 보급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운영 절차 준수 철저

가)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역할 강화

나) 특수교육대상자 개인별 요구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적용

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개별화교육계획 기능 개선 안내 예정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 선정 및 지원범위 안내

가) 순회교육 대상자 선정기준 수립을 통한 내실있는 지원 강화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가) 순회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센터 컨설팅 실시

나) 학생특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

다) 센터발령 순회교사 연수 시 역할 및 복무지침 안내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장애학생 예술동아리, 통합 문화예술동아리 지원

나)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 프로그램 체험 기회 확대

2)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학교 체육교육 중점학교 운영 및 장애학생 스포츠클럽 운영

나) 특수학급 통합체육 프로그램 운영 확대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강화

4) 제5회 전남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5)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참가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 지원

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에 따른 중도중복장애 진단·평가 및 선정

2) 학교 내 의료적 지원 강화

가) 학교와 지역 의료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 방안 마련

나)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교에 전문인력 배치 확대 노력

다)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치료지원전담팀 적극 활용

라) 개별화교육계획에 의료적 지원 사항 포함하여 작성

3) 시각·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지원센터를 통한 시각·청각장애학생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나) 거점지원센터와 지역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다) 학교 방문형 찾아가는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4) 건강장애학생 지원

가) 건강장애학생 등 교육 지원

나) 병원학교 운영 내실화(2교 3학급)

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준수한 학적 및 성적처리

5) 행동중재 지원

가) 전문가 양성과정 운영(3기)

나) 1~2기 행동중재 전문가를 구성원으로 행동중재 전학공 운영

다) 대학, 병원, 전문가 연계 집중적인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

라) 교육지원청 및 특수학교 중심 행동중재지원단 운영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가) 공립 특수학교(급) 유치원 방과후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지원

나) 영유아 방과후과정 운영 인력 대상 역량강화 연수 실시

다) 교외 방과후 중 치료지원 영역과 중복지원 신청 가능

라) 영유아 방과후과정 연간운영계획 수립 후 특수학교(급) 교육계획 반영

2) 특수교육 초등 보육교실 운영

가) 2023년 1명으로 독립학급 편성된 경우 운영 가능

나) 특수학교 무기계약제 운영, 특수학급 초단시간 계약자 운영

다) 운영계획 수립 시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포함

3) 특수교육대상자 방과후학교 운영

가) 수요자 중심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나) 운영 결과를 학생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입력 가능

다) 생활·안전지도 등 학생관리 계획 수립

라) 프로그램 운영 공개, 만족도 조사, 프로그램 평가 실시 및 홈페이지 공개

마)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액 확대 편성

(1) 최대 월 20만원 이내 수강료 지원

(2) 꿈-그린카드(전자카드)를 통한 매월 결제

(3) 수강여부 확인 등 학교 관리 철저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현황

특수교육실무사	통학차량실무사	사회복무요원	계
300	27	218	545

가) 특수교육실무사 증원 및 운영개선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2) 특수교육실무사 근무 개선

가) 근무일수: 연간 최소 300일(주휴포함)

나) 직무관련 집합연수일, 방학 중 교육활동 지원일 확대

다) 병가 등 특수교육실무사 대체 인건비 지원

3) 사회복무요원 신청, 배치, 직무교육, 복무 관리 등 운영 철저

4) 치료지원 내실화

가) 대상자 선정 및 치료지원 영역·방법 등 운영 철저

나) 복지관, 병원, 사설치료실 등 유관기관 연계구축 지원 확대

다) 도시, 농어촌 등 지역에 따라 치료지원 여건을 고려한 지원 개선

라) 치료지원의 내용·방법 등 개별화교육계획에 기재

마) 고품질 치료지원을 위한 사설 치료실 연 1회 이상 점검

5) 특수교육대상자 평가조정

가) 일반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나) 평가조정으로도 학교 단위 평가에 참여가 어려운 학생 평가방안 마련

다)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성취평가방법 등 명시

6) 통학편의를 위한 통학비 지원

가) 통학버스 미이용 학생 중 2km 이상 통학학생 대상 통학비 지원

나) 학생 및 보호자 포함 지원

7)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 장애학생 가족의 개별적 요구와 자원을 파악하여 부모상담, 가족프로그램 운영 등 가족지원 강화

나) 가족캠프, 문화·여가 등 휴식·심리·정서 지원 강화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계획 수립·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

가) 재난 상황별 안전 대피 훈련 실시

나) 학교 단위 재난 대응 매뉴얼 정비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가) 학교별 감염병 예방·관리 계획 수립·시행

나) 특수학교(급) 노후 시설 개선 및 취약지역 CCTV 설치 확대

다) 통학차량 안전관리 강화

라) 장애학생 일과 중 학교 이탈 예방 노력

마) 현장체험학습 시 장애학생 안전사고 예방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체험 기회 확대

가) 자유학기제 운영을 통한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9교)

나) 초·중·고등학교 간 연계성 있는 진로·직업교육

- 집중학년·학기제, 자유학기제, 직업중점교육과정, 전공과

다)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 교사용 자료 안내 및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2)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가) 특수학교 전공과 운영: 9교 34학급 운영

- 중증장애학생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입학전형 보완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지원인력 확충, 미진학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학교 학교기업(2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3교) 운영

다) 전남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학부모 연수 운영
- 3권역(동부, 중부, 서부)별 실시(264명)
- 장애학생 진학·취업지원을 위한 진로 설명회
- 취업업체 CEO 초청 강의 및 지역 내 유관기관 소개, 전공과 안내

라)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한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 3권역(동부, 중부, 서부)별 주요 대학 체험, 대학생활 정보 안내 등을 통한 다양한 진로기회 제공

3)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가) 학습중심 현장실습 지침에 따른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나) 현장실습 우수산업체 인증을 통한 양질의 취업기회 제공
다) 학교 내 일자리(100명) 및 장애청년 드림워크(62명) 운영

4) 진로교육 지원역량 강화
가) 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담당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컨설팅, 워크숍 운영
나)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9교) 운영 및 내실화
- 컨설팅 운영, 부전공자격연수 실시, 운영지침 개선 등

5)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가)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을 통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나) 중증장애학생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다)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분야 진로연계 사업 운영

6) 7개 권역별 직업전환중심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가) 7개 권역 중심 지역 내 사업체 연계 현장체험·현장실습·취업지원
나) 생애주기에 맞는 직업전환교육 지원
다) 교사 및 학부모 지원을 통한 전문성 함양 및 가족 참여 확대

7) 2023 전국장애학생진로드림페스티벌(직업기능경기대회) 운영
가) 기간: 2023. 9. 20.(수)~21.(목)
나) 장소: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및 여수베네치아호텔
다) 규모: 학생, 인솔교사, 관리자 등 700여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지원 확대를 위한 공립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 및 홍보·상담 강화

나. 미래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전남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다. 서부권 과밀해소와 전문적 진로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특성화 특수학교 설립

라. 장애학생 체력강화와 체육전문인 육성을 위한 체육중점 특수학교 운영 확대

마.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지원을 위한 연수 확대

2) 특수교육 관계자의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마음돌봄연수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일반교사 협력 강화를 위한 정다운학교, 통합교육교사연구회 확대·운영

나.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역량 강화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을 위한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라. 장애학생 인권지원 강화를 위한 인권지원단 내 전문가 그룹 구성 확대

-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통한 장애학생 학교폭력·성폭력 피해 예방 지원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디지털 교육 확대를 위한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나. 디지털 콘텐츠 활용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교사 연수 확대

다.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운영 및 컨설턴트 역량 강화

라. 중도중복장애학생 의료적 지원 내실화를 위한 의료기관과의 협력 추진

마. 행동중재 전문가 양성 및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연차적 확대 운영

바. 특수교육실무사 정원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TF팀 운영 내실화

사. 치료기관이 적은 농어촌 치료지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중증장애학생 전공과 진학기회 확대를 위한 입학전형 보완

나. 중증장애학생의 다양한 진로기회 제공을 위한 특수학교 진로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학생 학부모·교사의 진로인식 개선을 위한 연수 기회 확대

라. 안전한 현장실습 운영 및 양질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산업체 인증 확대

마. 장애특성과 지역여건을 고려한 진로설계·취업지원을 위한 '장애학생 원스톱 지원 협의체' 운영 강화

경상북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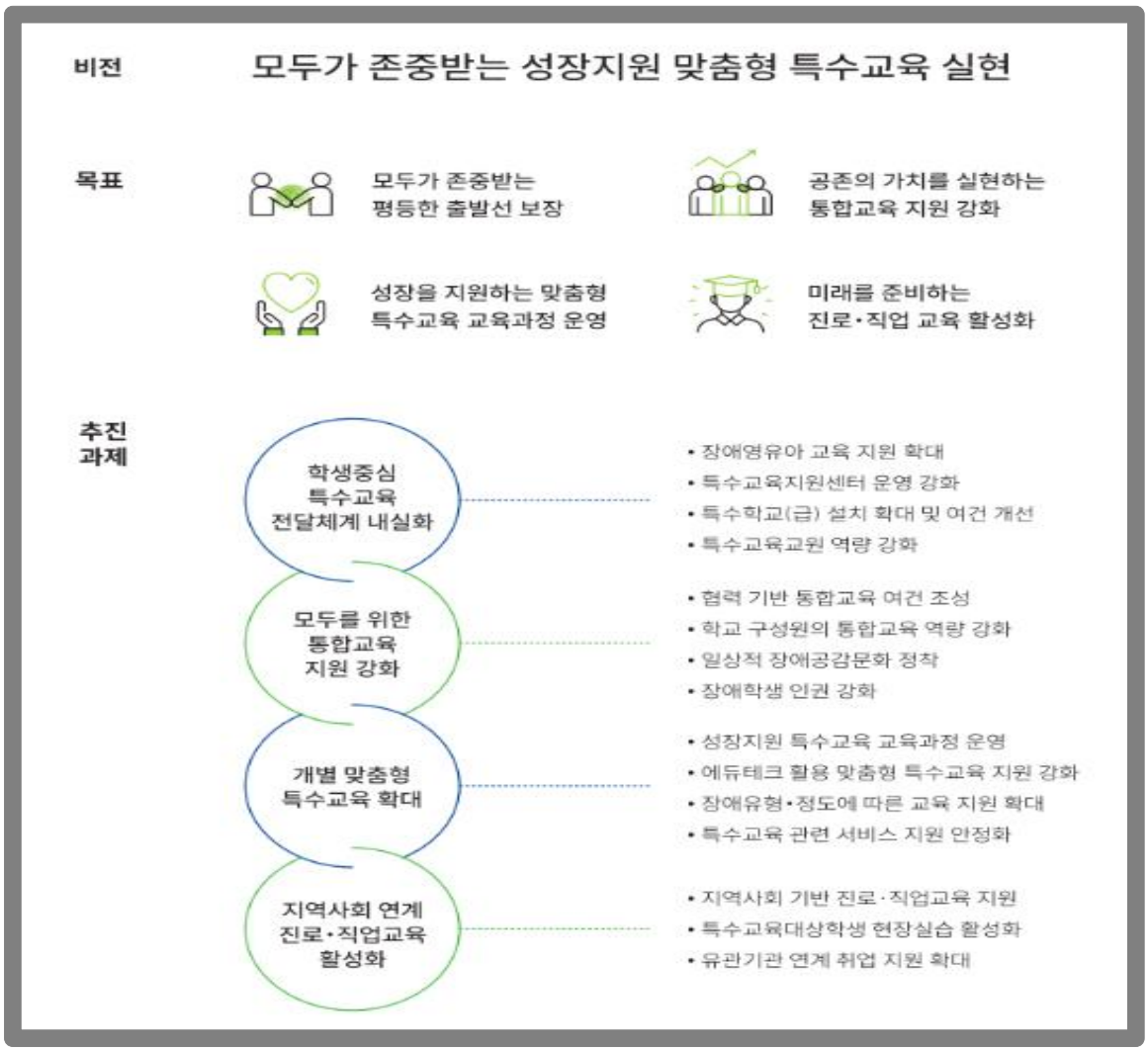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가) 유관기관 연계로 장애(위험) 발견 즉시 보호자에게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마련, 무상교육 홍보 및 정보 지원

나) 장애영유아 무상교육 홍보 및 정보 지원

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영유아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보육기관 간 차별 없는 지원 제공

나) 장애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중재 강화

- 특수교육대상학생 영아 개별화가족지원계획(IFSP) 수립·실행 지원

다) 특수교육대상영아 가정-유치원, 어린이집-유치원 연계 통한 유치원 입학 과정 지원

- 유치원 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 개통 이전까지 특수교육대상유아 우선 배치
- 우선 배치 기간 이후 특수교육대상(예정) 유아의 추가 배치 수요 발생 시 정원과 관계없이 배치하고 해당 유치원에 안내

라)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강화

- 통합교육 거점기관(유치원) 확대 및 운영 내실화

마) 유치원-초등학교 연계를 통한 특수교육대상유아 초등학교 입학 적응 지원 확대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강화

가) 권역별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안동·구미·경산) 운영 내실화

나) 시청각 특성화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각장애(포항), 청각장애(구미)

다) 개별 맞춤형 지원 내실화를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구축

- 보조공학기기 대여 시스템 '경북통합예약시스템' 운영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전담 인력 확충

- ('22) 23개 센터 내 교사 94명 → ('23) 132명으로 확대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시설·설비 확충 및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등 배치 확대

- ('22)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12명 → ('23) 13명으로 배치 확대

다) 센터 기능 구조화 및 역할 전문화를 위한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

라) 양질의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무 중심의 연수 강화 및 근무 교원 처우개선

- 업무 관련 필수영역(진단·평가 검사도구, 보조공학기기, 행동중재, 교육과정, 장애영유아 등) 연수 이수, 외부 전문가 연계교육 지원 등
- 전문직 전형 가산점 제공(2021~), 학습휴가(5일) 신설, 연수 지원 등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가)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활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 지역별, 학교급별 학생 배치현황 및 추이 분석을 통한 특수학교 설립 수요 분석
- 과밀학급 및 원거리 통학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 경북 서부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27) 1교
  * 경북 동부권역 과밀 해소를 위한 특수학교 설립 모색

나)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이 어려운 경우, 특수교사(시간강사) 및 지원인력 추가 배치를 통한 통합교육 지원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 보장 및 선택권 확대를 위한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통합유치원 확대

다)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상향
  * ('22) 학급당 300만원 → ('23) 학급당 400만원(정원초과 1인당 50만원)

라) 교실 환경 여건 개선 확대

- 특수학급 신·증설비 상향
  * ('22) 학급당 3,000만원 → ('23) 학급당 4,000만원

마) 특수학급 수업 지원 교사제 실시 확대

- ('22) 4명 → ('23) 13명

바) 특수교사 단계적 충원 추진

- 중도중복장애학생 배치 현황, 교육 현장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교육부에 특수교사 증원 배치 요청 및 배치 계획 수립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가) 기존 특수교사 주도 통합교육에서 일반교사 통합교육 책무성 확대·강화하는 통합교육 패러다임 변화 유도

나) 통합학급에 있는 장애학생 교육활동과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특수교사 배치 확대

2)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가) 학교장애인식지수 영역별 연계 프로그램 및 활용 매뉴얼 제작·보급하고, 초·중·고 통합학급에 적용('24~)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가) 일반학교 관리자와 담임(교과)교사 연수 강화

- 장애이해교육(장애인학대 예방·신고교육 포함)을 특수교육 관련 필수 교과(1과목) 편성하여 매년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 안내 및 권고
- 일반학교 관리자 대상 특수교육 관련 연수 3시간 이상 의무 이수
- 통합학급 담당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의무화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일반교사-특수교사 간 협력적 역할 모형 발굴 위한 '정다운학교' 확대 운영

- 정다운학교(5교)
  * (교육부 운영: 2교) 포항여자전자고등학교, 호서남초등학교
  * (자체운영: 3교) 영주남부초병설유치원, 쌍림중학교,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 경북어울림학교(7교): 오천초병설유치원 외6교

※ 정다운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가 상호 협력하여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 경북어울림학교: 장애이해교육, 통합교육 활성화 사례 발굴 등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을 실천하는 학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미래형 장애이해교육 강화

- 모든 유·초·중·고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 범교과 학습 인권교육과 연계한 계기교육 및 장애이해 수업 실시
- 장애인의 날 '특별기회방송'을 활용한 학교(급)별 장애이해교육 확대 운영

나)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및 장애예술인(단체) 또는 장애인식개선 주제 '문화·예술 공연' 지원

-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포항, 구미, 경산, 안동)

다)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학교(유치원)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연 1회 이상 의무 실시

라) 맞춤형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경북교육청 '맛쿨멋쿨' 수어 콘텐츠 배포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중심 특수학교(급) 현장 지원 강화

- 장애인권교육 및 행동지원 분야 전문성 갖춘 핵심교원 양성

※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과정(20명), 행동중재 전문가 심화 과정(20명)

- 장애학생 위기행동 중재프로그램(특수학교 교당 700~800만원 지원)

나)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 (정기현장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실시
- (특별현장지원)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 학생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지원 실시
- 교육정보시스템(NEIS) 기반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실태조사 실시
-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기관 간 정보 공유 등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 보호 활동 강화

다) 통합교육 의식 제고 및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동아리 운영 지원

- 경북 어울림 인권 동아리(연일초등학교 외 23교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가)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AI형 에듀테크 및 실감형 콘텐츠 보급(AI 학습보조 로봇 등)

나)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구축 및 체험버스 운영 확대

* 안동영명학교, 경북영광학교(2교) 운영

* 장애특성을 고려한 에듀테크 기술 활용 수업 지원 기반 조성: 경주('23)

다) AI 활용 및 디지털교육 역량 강화 교원 연수 기회 확대

* 사례: AI 스피커 및 플랫폼, 수어 활용 청각장애학생 AI교육 등

라) 의사소통, 흥미유발 등 장애학생의 일상생활 및 교육 지원을 위한 지능형 로봇 활용 확대

마) 지역·민간 인프라 활용을 통해 드론·로봇 등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협력

* 지역 SW교육기관 방문,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장애학생 SW대회 개최 등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가) 온·오프라인 융합수업 등 특수교육 수업 혁신을 위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안내

나)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맞춤형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1인 1문화예술교육 및 장애·비장애 통합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 질 높은 여가와 재능 발굴 기회 제공

* 장애학생 문화예술 체험활동비 지원, 예술교육거점 특수학교(3교), 어울림 문화예술·체육 동아리(51교), 꿈빛 재능키움(52명), 경북 장애학생 e페스티벌 운영: 7월 중

나) 전문가 멘토링 및 체육 분야 진로 체험 등을 통한 장애학생 체육 인재 발굴

* 특수학교 운동부 지원(4교), 특수학교 1교 1운동 종목 지원(8교), 경북 장애학생 체육대회 개최(10월 초 예정)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활용한 개별화교육계획 작성·관리 위해 세부 시행 지침 보급

나) 학교급·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체계 구축

다)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미설치교 교원 대상 활용 연수 강화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가) 경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개발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핵심 교원 양성 및 역량 강화 연수 실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핵심교원 역량 강화 심화 연수(7월 중 실시)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역량 강화 연수(6~7월/ 8~10월 예정)

다) 신설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교사 수업 능력 제고 및 역량 강화 연수

라) 개별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원 위한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에 추가된('22. 6.) 중도중복장애학생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 확대

-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오천고등학교 외 18교)
- 건강장애·재택순회학생 급식비 및 사회적응활동비 지원(6~7월 예정)
- 생활기능 중심 교육 등 교육과정 전반 활용 가능한 지도용 가이드북 보급 및 안내

나) 시각·청각·시청각장애 특성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 지원체계 마련

- 시청각장애학생이 배치된 특수학교(급) 지원 확대

* 시청각장애학생 맞춤형 지원(계림초병설유치원 외 19교)

다) 청각장애학생 학습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지원

- 인공와우 수술 및 기기 교체 비용 지원

라) 시청각장애학생 교육지원을 위한 교육평가 도구 및 교수·학습 방법 등 역량 강화 연수 추진

마) 특수학교(급) 교사의 행동중재 역량 강화와 장애학생의 심각한 행동문제 집중 지원 확대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지역 간 치료지원 서비스 격차 완화 및 질 관리 위한 여건 개선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확대 및 장애학생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관련 연수 강화

- 특수교육실무사, 생활지도원 연수(8월 중 예정)

다) 장애학생 가족의 교육 회복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한 가족 지원 추진

- 재활승마 가족캠프: 특수학교(급) 재학생 30가족(8월 중 운영)

3) 방과후교육·돌봄 지원 체계 강화

지역 내 방과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수요 반영 지원 확대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특수학교 자유학년제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여건, 장애유형 및 정도, 교직원 및 학부모 의견 등을 고려한 학교수준 교육과정 재구성

2) 특수학교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 및 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과정 등과 연계를 통한 미래 진로 설계 지원 강화

3) 교육지원청 및 학교별 여건에 따른 교사연구회, 교수·학습 공동체 운영 등을 통해 다양한 자유학년 활동 프로그램 구성 지원

4) 장애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체험 지원 강화

가) '꿈길시스템'을 통한 진로체험 인프라 확충, 온라인 매칭 확대 및 진로체험처 점검·활용 결과 모니터링을 통한 체계적인 질 관리

나) 도내 특수학교(8교) 대상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직업탐색 프로그램 운영

다) 장애인 진로멘토단을 활용한 원격영상 진로멘토링 운영

* 장애유형(시각, 청각, 지체, 지적·자폐성장애)을 고려한 직업분야별 장애인 진로멘토단 운영

나.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진로·진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가) 학생 맞춤형 성장 경로 다양화 및 학교급별 교육과정 연계한 체험형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지원

- 초·중·고 진로교육 연계강화, 지역사회 연계 현장 체험 중심 진로·직업 교육기회 확대

나) 특수학교 전공과 중심 진로·직업 프로그램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 교육기회 다양화

다) '꿈길' 활용 장애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활동 확대

라)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연계 직업체험관 운영 지원(1, 2학기)

- 고등학교, 전공과 대상 실습형 직무 체험 제공 1학기(291명) 직무 체험 실시
- 특수교육대상학생 독도수비대 특별직업체험(5. 22~5. 25.) 실시

마) 장애학생 미래생활 역량 강화 및 학교급별 진로·직업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

바) 장애학생 대학생활 체험 운영 내실화

* ('21) 10명 → ('22) 22명 → ('23) 32명(예정)

- 기간: 2023. 9월~10월
- 대상: 특수학교(급) 고등학생 및 전공과 학생
- 장소: 구미대학교, 대구대학교

사)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활성화

*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2교): 김천생명과학고등학교, 인동고등학교

아) 특수교육대상학생 직업실기 역량 강화 지원

*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고등학교(급) 특수교육대상학생 219명 지원

자)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 이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자립생활 중심의 진로·직업교육 강화

* 장애학생 자립생활교육관 '꿈담채' 운영

차) 고등학교과정 장애학생 전환지원 프로그램 운영: 34교(급)

2) 관계부처(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하여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 기간: 6~12월
- 대상: 고등학교 3학년 과정 특수학교(급) 학생
- 장소: 경산 일원 현장실습 사업체
- 위탁기관 및 수행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경북장애인부모회 경산시지부

다) 장애학생 취업지원 서비스 적시 제공 및 이력 관리를 위해 범부처(교육부-고용부-복지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 시스템 고도화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맞춤형 진로·학업 설계 지원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연구학교 컨설팅, 담당 교원 연수, 교수·학습 및 평가 자료 개발·보급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운영 안내서(2종), 메타버스 활용 홍보 콘텐츠(1종)('23. 12.)

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고교학점제를 기반으로 장애학생의 요구와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진로교육 연계 강화

Ⅰ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체계 강화
   가) 장애영유아 특수교육 안내 체계 및 지원 강화('23~'27)
   나) 장애자녀 부모지원 정보제공 확대('23~'27)
2)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강화
   가) 교육-보육기관 간 특수교육 격차 단계적 해소 방안 마련('23~'27)
   나) 유치원·초등학교 연계 및 입학 적응 지원 확대('23~'27)

나. 학생 중심 특수교육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역할 강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및 유관 기관 간 협력·연계 체계 구축('23~'27)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 구조화 및 운영 내실화('23~'27)
2) 특수교육지원센터 역할 전문화
   가)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체계 정비('23~'26)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23~'27)
   다) 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교원 역량 강화('23~'27)
   라) 특수교육원 설립 추진('23~'27)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로 교육 선택권 확대

1) 특수학교 특성화 및 다양화
   가)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23~'27)
   나) 특성화·전문화된 특수학교 운영 모델 확산('24~'27)
   다) 기존 특수학교 재구조화 추진('23~'27)
   라) 특수학교-지역사회 간 교류 확대('23~'27)
2)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다양한 유형의 특수학급 설치 확대('24~'27)
   나) 유치원 특수학급 확충('24~'27)
3) 특수학교(급) 교육여건 개선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24~'27)
   나) 특수교육교원 확충 및 개선('24~'27)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통합교육 지원 제도 개선

가) 통합교육 실행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정비('23～'27)

나) 통합학급 협력교수를 위한 여건 개선('23～'27)

2)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

가) 일반학교 대상 학교장애인식지수 적용 지원('23～'27)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교육교원과 특수교육교원 간 협력 증진

가) 교원 자격·직무연수 시 통합교육 교과목 확대 편성('23～'27)

나) 지역 중심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교육지원단 운영 강화('23～'27)

다)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 확산('23～'27)

2)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정다운학교 및 경북형 어울림학교 지원 강화('23～'27)

나) 통합교육 실시 유치원에 대한 지원 강화('23～'27)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장애이해교육 내실화('23～'27)

나) 다양한 장애이해교육 및 학생 동아리 지원('23～'27)

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23～'27)

2) 장애학생 인권 지원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현장지원 강화('23～'27)

나)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23～'27)

다) 장애학생 인권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업체계 구축('23～'27)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23～'27)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1)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가) AI 에듀테크 활용 교육 환경 조성('23～'27)

나) 에듀테크 활용 장애학생 맞춤 인프라 구축 및 활용('23~'27)
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교사 연수 지원('23~'27)

2) 특수교육 플랫폼 운영
가) 장애학생 맞춤형 플랫폼 열린배움터 운영 안내('23~'27)
나) 건강장애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 안내('23~'27)

3)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23~'27)
나)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확대('23~'27)
다) 문화예술 분야 체험형 교원연수 지원 확대('23~'27)

4)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및 순회교육 내실화
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활용 개별화교육계획 지침 안내('23~'24)
나) 개별화교육계획 현장 지원('23~'27)
다) 학교급·배치유형·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순회교육 지원('23~'27)
라) 특수학급 미설치교 통합교육 지원실 운영 확대('23~'27)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현장 안착 지원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강화('23~'27)
나)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한 지원 강화('23~'27)
다) 경북 특수교육 교육과정 지원단 구성 및 운영('23~'27)
라) 학생과 교원의 심리·정서적 회복 프로그램 지원 확대('23~'27)

나. 장애유형·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1)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가) 중도중복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23~'27)
나) 시청각장애학생 교수·학습 지원 강화('23~'27)
다) 학교 내 의료적 지원을 위한 여건 개선('23~'27)
라) 특수학교(급) 교원 행동중재 역량 강화('23~'27)
마) 장애학생 맞춤형 행동중재 지원 강화('23~'27)

2) 더 두터운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가) 치료지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여건 개선('23~'27)
나)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23~'27)
다) 지역 보조기기센터 간 연계 체제 구축('23~'27)

3) 방과후 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가) 장애학생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23~'27)

나) 교내 방과후·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23~'27)

4. 장애인 고등·평생교육 기회 확대

가.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가) 체험형 진로·직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23~'27)

나) 지역사회와 연계한 맞춤형 직무 체험 프로그램 운영('23~'27)

다) 진로·직업교육 담당 교원 전문성 강화('23~'27)

2) 관계부처(기관)간 협력 취업지원 확대

장애학생 진로·취업지원시스템 활용 확대('23~'27)

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특수학교-고교학점제 단계적 적용·운영('23~'27)

경상남도교육청

Ⅰ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모두가 존중받는 국가책임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1. 목표

가. 장애영유아의 평등한 출발선 보장

나. 특수교육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환경 조성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대상자 조기발견 및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협력 체제 구축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순회교육 제공 및 유치원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6학급 신·증설)

3)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로의 전환 지원을 위한 입학적응프로그램 운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진단·평가 전문성 강화 및 선정·배치 절차 체계화

2) 특수교육 전문인력 배치 확대(순회교사 4명 증원)

3)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장애영아 거점센터, 전환교육지원실, 시청각장애 거점센터)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2023년 78학급 신·증설

2) 신·증설 및 노후 특수학급 환경개선(신·증설 78학급, 노후 28학급)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 운영

가)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 장애영유아, 행동중재, 진단·평가 등 연수 운영

나)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조직·운영(11개 특수학교 및 20개 특수교육지원센터, 5개 연구동아리)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통합교육지원단 운영(19개)

나) 특수교육대상유아 통합교육 지원 강화를 위한 유아통합교육지원단 운영

다) 통합교육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사 운영('23년 143명)

- 교육과정적 지원, 사회적 관계 지원, 지역사회 연계 지원

라)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운영(4개원)

- 장애유아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중심 통합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통합교육 연수 실시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역량 강화

가)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장(원장) 연수 운영(4회, 1,155명)

나)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감(원감) 연수 운영(1회, 269명)

다) 통합교육 행정지원(행정실장) 연수 운영(1회, 300명)

라) 순회교육 및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 관련 통합학급 담당 교원 연수(1회, 44명)

마) 통합학급 담임교사의 장애이해 및 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운영(2회, 150명)

바)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및 국립특수교육원 원격 연수 위탁 운영(연중)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2교)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특수교육 수업혁신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5개)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및 프로그램 다양화

가) 유·초·중·고등학교 학생 대상 장애이해교육 연 2회 이상 의무 실시

나) 인권지원단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운영

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장애체험 프로그램' 운영

라) 범국민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위한 장애공감문화 확산 콘텐츠 활용 및 메타버스 '평평한 세계' 운영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 침해 사안 신속 대응 및 감지 체계 강화

가) 온라인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센터 운영

나) 특수학교 내 인권침해 신고함 설치·운영

다) 장애학생 인권실태 점검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

가)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단위 인권지원단 운영(21개)

나)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현장지원(특수학교는 연 2회)

다)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및 가·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특별지원 실시

라) 학교(성)폭력, 아동학대 등의 피해 경험이 있거나 다양한 외부적 환경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은 학생에 대한 더봄학생 선정 및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나) 특수학교 학교폭력 예방교육 의무 실시(3시간 이상)

다)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칙에 장애학생 인권보호 조항 신설 및 강화

라) 학교 단위 장애공감문화 조성 프로그램 운영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2교) 및 체험관(경남특수교육원) 운영
   나) 특수교육지원센터별 미래형 학습지원 체계 구축
   다) 특수교사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운영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가)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플랫폼 '열린배움터' 활용
   나) 특수교육대상학생 아이톡톡 활용 지원
      - 교수·학습자료, 수업나눔, 장애인식개선교육 등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고등학교 과정 교과중점학교 운영 지원
   나)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단위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에 통합교육계획 반영
   나)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확대
3)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가) 교과용도서 및 평가 지원 자료 개발을 위한 연구시범학교 운영(1교)
   나)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전문가 양성 연수 실시
4)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단계적 도입 및 현장 안착 지원
      - 학생의 진로·흥미에 맞춰 학생 특성 및 학교 여건에 따른 다양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 현장 지원단 구성·운영으로 단위학교 교육과정 운영 컨설팅
      - 교사용 자료 개발·보급 및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 실시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가)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철저
      - 학년 초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

- 전출입 업무 처리 시 개별화교육계획 송부 처리 기간 준수 안내
-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한 특수학급 미설치 학교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지원

나)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을 위한 연수 지원
- 온라인 전달연수 실시: 경상남도교육청 온라인전달연수
- 통합학급교사, 특수교사, 관리자, 학부모, 개별화교육지원팀 참여자 등에 대해 연수 이수 독려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대상과 지원 범위 확대

가)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 실시

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순회교육 지원 강화

다) 장·당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 실시

2)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가) 순회교육 대상학생의 능력, 장애정도 등을 고려한 순회교육계획 작성 및 운영 지원

나) 순회교육 담당 교사에게 순회교육 활동비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문화예술 활동 지원 강화
- 문화예술 동아리 운영(공연부문 12교 159명, 전시부문 10교, 64명)
- 특수교육대상학생 우수예술인재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 특화교실 운영(10교실, 11명)

나)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 장애학생 건강체력평가 및 회복 프로그램 운영(11교)
- 체력회복 프로그램 개발 및 스포츠 강습,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다) 특수교사 대상 문화예술·체육 관련 직무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2) 중도중복장애학생 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15교 46명)
4)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과용도서 및 대체자료 지원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5) 건강장애학생 교육 지원 강화
   가)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병원학교, 원격수업, 학교복귀프로그램 지원
   나) 건강장애학생 담당 통합학급 교사 연수 실시(4월)
   다) 병원학급 운영(부산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및 경상대학교어린이병원학교)
6) 행동중재 지원
   가) 장애학생 행동중재 프로그램 운영(42교, 50명)
   나) 장애학생 행동중재 지원센터 운영(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
   다) 특수학교 심리안정실 구축 지원(2교)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특수교육대상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1인당 월 12만원 이내)
2) 특수학교 및 유치원 특수학급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특수학교 6교 13학급, 유치원 60원 76학급)
3) 초등학교 돌봄교실 참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98교 110학급)
4) 토요프로그램(민간위탁) 및 방학 중 희망나눔학교(지방보조금) 운영 지원
5) 특수학급 미설치 공·사립 유치원 특수교육대상유아 지원(49원 71학급)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실무원 배치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특수교육실무원 배치(631명)
2) 사회복무요원 배치
   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장애 유형 및 특성과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치
   나) 사회복무요원 직무교육 실시 강화
3) 치료지원 내실화
   가) 병의원 치료(물리, 작업, 청능훈련) 및 발달재활치료(언어치료 등)가 필요한 학생에 대한 치료지원비 지원(월 15만원 이내)
   나) 치료사에 의한 치료지원(특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료사 120명 배치)
4) 특수교육대상학생 평가조정 및 대안평가 지원
   - 학업성적관리규정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평가조정 지원 내용 삽입
5)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가) 보조공학기기 통합지원시스템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나) 전시 체험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실 운영(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대여

6)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가) 특수교육대상학생 기숙사 숙식비 및 기숙사 운영비 지원(2교)
나)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및 특수학교 통학버스 운영(11교 42대)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학교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2) 체험중심 안전교육 실시(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안전생활체험관)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역량 개발 지원 강화
가) 진로 전환기(초 5~6학년, 중 3, 고 1)를 중심으로 한 진로교육 집중학년제 운영(2교)
나)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 장애학생의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교육 중점학교 운영(1교)
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진로설계관 운영
라) 특수학교 학교기업(1교) 및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1교) 운영
마) 장애학생 직업실기 역량강화를 위한 자격취득과정 프로그램 운영(81개)
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교육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
3) 장애학생 맞춤형 일자리 및 취업 지원(6교, 12명)
4) 특수학교 진로전담교사 배치(10교 10명)
5)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체계 강화
가) 교육청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 서비스지원 협의체 운영
나) 전환교육지원실 운영(7센터) 및 스페셜코디네이터 배치(12명)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특수교육 정보전달 및 의무·무상교육 제도 홍보

2)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한 수시 상담 강화 및 무상교육 지원 안내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중심 지역연계 강화

2)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으로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기회 확대

가) 거대과밀 특수학교 해소 및 다양화·특성화·전문화 특수학교 신설 추진(2025년 진해 지역 및 2027년 김해 지역 특수학교 개교 예정)

나) 통합유치원 설립 기반 마련 및 유치원 특수학급 확대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특수교육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활용, 장애영유아, 행동중재, 진단·평가 등 연수 운영

2) 특수교육교원의 심리상담 지원 확대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컨설팅 및 현장지원 활성화

나) 통합교육 거점유치원 컨설팅 운영

2) 통합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장애인식지수 활용(정다운학교 대상)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통합학급 교사의 특수교육 관련 직무연수 15시간 이수 권장

2)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 강화

가) 통합교육 연구학교 '정다운학교' 운영 성과공유회 개최(11월)

나)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통합교육 협력 우수사례 발굴·확산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자 확대

가) 각급학교와 교육행정기관 직원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의무 실시

나) 학부모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관계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2) 장애학생 인권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확대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신기술 기반 에듀테크 활용 환경 구축 및 기기 확충

2) 장애학생 온라인 교육 플랫폼 운영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특수학교) 여건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2) (일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강화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4)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후속 지원

5)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진로 설계 지원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적 요구와 행동특성 등을 고려하여 개별화교육계획을 수립·실시하고, 특수교육 교육과정 연계를 위한 재구성 방안 모색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복지시설, 의료기관 또는 가정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순회학급 운영

2) 순회교육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재구성, 지도 방법, 가족지원 방법 연수 강화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문화예술제 개최(10월) 및 문화예술 글로벌 문화교류(10월) 추진

2)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한 교원 연수 운영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실 환경 등 교육 여건 개선

2) 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컨설팅 실시

3) 건강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강화

4) 장애학생 행동중재 전문교사 양성 연수 운영(1회, 30명)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실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집합 및 원격연수(2회)

2) 치료지원 내실화 및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관리 철저

3) 학교 단위 정규평가 참여가 어려운 장애학생을 위해 대안적 평가 관리 방안 마련

4)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 강화

5) 특수교육대상학생 취학편의 지원

자. 학교별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운영 및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학생 맞춤형 진로체험 기회 확대

2) 산업체, 장애 맞춤 훈련기관과 학교 등이 협업하여 장애학생 현장적응 역량 강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I 특수교육 추진 방향

1. 비전

올바른 인성과 생각하는 힘으로 미래를 여는 맞춤형 특수교육 실현

2. 추진목표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체제 강화

나. 통합교육 내실화로 장애공감문화 정착

다. 수요자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교육격차 완화

3. 중점 추진과제

가. 학생 맞춤형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나.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다.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4. 제주특수교육의 강조점

가. 생애단계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대상자의 핵심역량을 길러 성공적인 사회통합 능력을 기른다.

나. 균등하고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합교육 지원 내실화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주적인 생활 능력을 기른다.

다.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알맞은 교육활동을 통하여 사회 적응력, 문제해결력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학습자 중심의 개별화교육에 충실을 기한다.

라. 장애공감문화 확산 및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건강하고 안전한 행복학교를 만들어 간다.

마.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탐색하고 직무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기능적 생활 중심 교육활동으로 장애학생의 진로·직업교육을 강화한다.

바. 우리 고장의 생태와 문화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아름다운 제주를 가꾸어 나갈 수 있도록 4.3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한다.

Ⅱ 2023년도 추진 실적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87명 선정·배치 및 86명 치료 지원(1명은 미신청)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35명(신청자 전원)
4) 만 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 지원: 236명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2022년 3명 → 2023년 4명)
   나)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추진
   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2개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사전기획 추진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사전기획 추진
2) 특수학교 다양화
   -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타당성 연구 추진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급 신설
      (1) 중학교: 1학급(한림여자중학교)
   나) 특수학급 증설
      (1) 유치원: 1학급(서귀중아초등학교병설유치원)
      (2) 초등학교: 4학급(도련초등학교, 아라초등학교, 제주동초등학교, 제주서초등학교)
      (2) 고등학교: 1학급(한림공업고등학교)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가) 특수학교: 2학급(제주영지학교 1학급, 서귀포온성학교 1학급)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각급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해 특수학급 신·증설 여건이 어려운 학교 등에 32명 배치(유 4, 초 13, 중 3, 고 4, 특 8)

(1) 유치원: 4명

(2) 초등학교: 13명

(3) 중학교: 3명

(4) 고등학교: 4명

(5) 특수학교: 8명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10개 연구회(235명)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15명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가)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1) 제주특별자치도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2) 제주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3) 서귀포시특수교육지원센터 1개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대면연수 1회 개최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1개교(초)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2개교(초 1, 중 1)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가)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추진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 제주장애학생의 날(매년 6월 5일) 및 장애이해교육주간 운영

나) 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실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기관 3기관(제주장애인야간학교, 문화복지 하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제주지부)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 추진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가) 세계 자폐인의 날(4월 2일) 기념 블루라이트 행사 캠페인 참여 및 홍보: 3기관(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나) 장애이해교육 라디오 방송 캠페인 홍보: 1회

다) 공모전 및 백일장 등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1회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 3명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지원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3회 대면 연수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1)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가) 실감형 콘텐츠 체험교실: 특수학교 1개교 운영

2) 에듀테크 신기술 체험 확대

가) 체험형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제공: 국립특수교육원 찾아가는 상상체험버스 7개교(초 2, 중 2. 고 3)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특수학교 3개교

2)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가)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1)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1학기 1회

2) 다양한 학교 구성원과 함께 개별화교육 제공 강화: 1학기 1회 이상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1) 순회교육 지원

가) 특수학교 재택 순회교육: 24명(초 10, 중 5, 고 9)

나) 일반학교 재학생의 순회교육: 129명(유 57, 초 63, 중 5, 고 4)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1)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특수학교 3개교, 민간위탁사업 운영 기관 1기관

2) 장애학생 체육 활동 지원 강화: 특수학교 1개교, 장애인체육회와 연계 지원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가) 거점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2센터

나)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대여

2)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3개단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15명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117교)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계절학교 운영(3개교)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계절학교 운영(2센터)

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계절학교 운영[2기관(제주시, 서귀포시)]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평가 연 1회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2일 실시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가)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16시간 이상)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4) 치료지원 내실화: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 상반기 1회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지원(35회)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가)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 운영

나) 특수학교에 진로전담교사 배치: 3명(특수학교별 1명)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특수학교 3개교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Ⅲ 향후 추진 계획

1. 학생 중심 특수교육 전달체계 내실화

가. 장애영유아 교육 지원 확대

1) 영유아기 특수교육 정보전달 강화

- 특수교육지원센터 2기관: 주기적인 홍보 실시로 장애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강화

2) 장애영유아 교육 기회 확대: 특수교육대상영아 추가 선정 배치를 통한 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3) 장애유아무상교육비 지원: 신청 시 추가 지원

4) 만 3세~5세 장애유아(비특수교육대상유아) 치료 지원 신청 시 추가 지원

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강화

1) 특수교육지원센터 인프라 확충

가) 특수교육 전공 전담 장학사 배치 확대를 통한 전문성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운영 지원 강화

나) 특수교육원 설립 및 운영방안 정책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다) 거점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시청각거점지원센터 운영 내실화

다. 특수학교(급) 다양화

1) 특수학교(급) 확충

가) 특수학교 교사동 증축

(1) 제주영지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사전기획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 추진

(2) 서귀포온성학교 교실 증축을 위한 사전기획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 추진

2) 특수학교 다양화

가) 제주 동부지역 특수학교 분교 설립 타당성 연구 결과에 따라 업무 추진

3) 특수학급 신·증설 확대

가) 특수학급 신설: 중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설 추진

나) 특수학급 증설: 중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4) 특수학교 학급 증설: 중기학생 배치계획 및 학교 의견, 특수교육교원 정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증설 추진

라. 특수교육교원 역량 강화

1) 특수교육교원 배치 개선 및 증원

가)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특수교사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원 배치

2)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신장

가) 특수교육 관련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강화

나) 장애학생 행동문제 중재를 위한 행동중재 전문가 연수: 여름방학 중 연수신청자 15명에 대해 연수 지원

2.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지원 강화

가. 협력 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1) 일반학교 통합교육 지원체계 강화

통합교육지원단 구성·운영: 학교에서 통합교육 컨설팅 요청 시 수시 지원

나. 학교 구성원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1) 일반학교 교원[교(원)장, 통합학급 교사 등]의 통합교육 역량 강화 지원: 온라인 연수 과정 개설을 통한 상시 지원

2) 특수·일반교사의 협력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교실문화 조성

가) 교육부 지정 통합교육 연구학교: 1개교(초)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나) 정다운학교(교육과정적 통합교육): 2개교(초 1, 중 1) 통합교육 컨설팅을 통한 운영 지원

다.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이해교육 내실화

장애학생 및 장애인 당사자 의견이 반영된 장애이해교육 확대 지원: 도교육청 민간위탁 사업(신청학교로 찾아가는 장애인인권학교) 지속 추진

2) 장애이해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가칭)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장애인예술단 운영을 통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강화

3) 장애인식개선교육 확대

장애인식개선교육 대상을 학생,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장애공감문화 확산

4) 캠페인 및 홍보 다양화

공모전 및 백일장 등에 교육감 후원명칭 승인 요청 시 승인을 통한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공감 문화 확산

라. 장애학생 인권 강화

1) 장애학생 인권지원 내실화

가)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

나) 도내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통한 상담 및 인권지원 내실화

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및 역할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 3개단 운영 내실화

나) 정기지원: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학교 방문 지원, 특수학교는 연 2회 이상 지원

다) 특별지원: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시 수시 지원

3) 장애인권교육 강화

가) 장애학생 인권보호 교원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실시: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나) 장애학생의 인권 의식 함양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지속 실시

3.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확대

가. 장애학생 맞춤형 디지털 교육 확대

에듀테크 교육환경 조성: 학교에서 신청 시 운영 지원

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1) 학교 여건과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활용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지원

4)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및 적용 지원: 특수학교 3개교

5)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특수교육교원 교육과정 운영 역량강화 연수 여름방학 중 추진

다.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운영

개별화교육계획 법적 요건 이행 및 수립 점검: 2학기 1회

라. 순회교육 지원 강화

순회교육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 지원

마.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민간위탁사업 운영 기관 및 장애인체육회 등과 연계하여 지원 강화

바. 장애특성별 맞춤형 지원 강화

1) 시청각장애학생 지원

- 시청각장애학생을 위한 보조공학기기 구입 및 대여 지원

2) 행동중재 지원

가) 행동지원전문가단 운영: 학교에서 컨설팅 요청이 행동지원전문가단 방문 지원

나) 특수학교(급) 교사 행동중재 역량 강화 연수 지원: 여름방학중 대면 연수 지원

사. 방과후교육·돌봄 지원체계 강화

1) 방과후학교 운영 강화: 수요조사를 통한 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추가 지원
2) 방학프로그램 운영 강화
   가) 특수학교: 특수학교별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나)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관내 유·초·중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
   다)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민간위탁기관을 통해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계절학교 운영[2기관(제주시, 서귀포시)]

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정당한 교육편의 지원 강화

1) 특수교육 지원인력 운영·관리 강화: 학년말 업무평가 1회 실시
2) 특수교육 지원인력 역량 강화
   가) 특수교육실무원 대상 교육(지원)청별 집합 연수 여름방학 기간 중 2일 실시
   나) 온라인연수 상시 지원
3) 사회복무요원 배치 및 교육 강화
   - 배치 기관별 자체 교육 실시 및 온라인 연수 상시 지원
4) 치료지원 내실화: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지원 제공기관 점검 실시: 하반기 1회
5) 정당한 교육편의 제공 환경 구축: 특수교육 보조공학기기 대여 수시 지원
6) 각급학교 안전 및 편의시설 제공

자. 장애학생 안전 강화

1) 장애학생 등·하교 안전 계획 수립 운영 내실화
2)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체험 중심 안전 교육 실시
3) 교내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 연 2회 이상

차. 지역사회 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1) 지역 기반 진로·직업교육 연계 강화
   - 진로·직업교육 현장 지원 강화: 지역사회 중심 원스톱 통합서비스 지원협의체 운영 내실화
2) 관계기관 협력 취업지원 확대
   가) 학교내 장애학생(전공과) 일자리사업 운영: 취업으로 인한 수요 추가 발생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운영
   나) 장애학생 현장중심 맞춤형 일자리 사업 추진 내실화

2023년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부록 II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335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349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 36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 2023. 4. 19.〕〔법률 제18992호, 2022. 10.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21. 3. 23., 2021. 12. 28.>

1.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상담지원·가족지원·치료지원·지원인력배치·보조공학기기지원·학습보조기기지원·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을 말한다.
3. "특수교육대상자"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6. "통합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장애유형·장애정도에 따라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또래와 함께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받는 것을 말한다.
7. "개별화교육"이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능력을 계발하기 위하여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교육목표·교육방법·교육내용·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8. "순회교육"이란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또는 복지시설(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9. "진로 및 직업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에서 사회 등으로의 원활한 이동을 위하여 관련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직업재활훈련· 자립생활훈련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10.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11.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을 말한다.
12.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의무교육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교육기본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하고, 제24조에 따른 전공과와 만 3세미만의 장애영아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② 만 3세부터 만 17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진급 또는 졸업을 하지 못하거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하거나 면제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할 때의 그 학년이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지 아니하고 계속 취학하였을 때의 학년과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연수(年數)를 더한 연령까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1. 3. 23.>

③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4조(차별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그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닌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 교육 기회의 부여에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2. 21.>

1. 제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6. 학생 생활지도에서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5. 29., 2017. 12. 19.>

1.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3.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지도
4. 특수교육의 내용, 방법 및 지원체제의 연구·개선
5. 특수교육교원의 양성 및 연수
6.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7. 특수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및 시설·설비의 확충·정비

8.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
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 방안의 강구
10. 장애인에 대한 고등교육 방안의 강구
1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방안의 강구
12. 그 밖에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업무 추진이 부진하거나 제2항의 예산조치가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확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보건복지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여성가족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에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6. 4., 2013. 3. 23., 2016. 2. 3.>

제6조(특수교육기관의 설립 및 위탁교육)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특수교육기관이 부족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그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이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탁교육·제3항에 따른 지원 또는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변경신청)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사립의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해당 특수교육기관의 교육활동이 매우 불량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맞지 아니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에 현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취학하고 있는 교육기관 외의 교육기관에 취학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신청인·해당 학교의 장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변경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과정에는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의 존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권리와 의무의 안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알게 되거나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2주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해당 사실과 의무교육 또는 무상교육을 받을 권리 및 보호자의 권리·책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특수교육운영위원회) ① 제5조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감 소속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교육장 소속으로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각각 둔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 및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1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시·도 교육청, 하급교육행정기관이나 특수학교,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초·중·고등학교 또는 관할 지역의 관공서(장애인복지관을 포함한다) 등 특수교육대상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제12조(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의 주요 현황과 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2021. 12. 28.>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제13조(특수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계획·특수교육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정책의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취학하는 장애학생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장애학생의 교육복지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2., 2022. 10. 18.>

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④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대학의 장, 그 밖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19. 12. 10.>

제13조의2(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의 방법·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2. 10.]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배치 등

제14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6. 2. 3., 2021. 3. 23., 2021. 12. 28.>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를 포함한다)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

제16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①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진단・평가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를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제공할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부모 등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교육지원 내용에는 특수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진단・평가의 과정에서는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제1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2.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3. 특수학교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를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등에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시・도 교육감(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를 요구받은 교육감 또는 국립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8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의 보호자는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교육장에게 교육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교육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결과를 기초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를 특수학교의 유치원과정, 영아학급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장애영아가 의료기관, 복지시설 또는 가정 등에 있을 경우에는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하여금 순회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영아를 위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설비를 정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장애영아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보호자의 의무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는 그 보호하는 자녀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기회를 보호하고 존중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다만,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집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유치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6. 7.>
③ 제2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 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제20조(교육과정의 운영 등) ① 특수교육기관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의 교육과정은 장애의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고, 영아교육과정과 전공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10., 2021. 7. 20.>
② 특수교육기관의 장 및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일반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장애유형과 정도, 연령, 현재 및 미래의 교육요구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③ 특수학교의 장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통합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② 제17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일반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③ 일반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7조의 기준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운영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22조(개별화교육) ①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의 수립·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23조(진로 및 직업교육의 지원) ①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②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설·설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효과적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24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특수교육기관에는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진로 및 직업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지역별 또는 장애유형별로 전공과를 설치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전공과를 설치한 각급학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학점인정을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공과의 시설·설비 기준, 전공과의 운영 및 담당 인력의 배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순회교육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을 배치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장·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③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이동이나 운동기능의 심한 장애로 인하여 각급학교에서 교육을 받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 복지시설·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거주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0. 20.>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순회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학급을 설치·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학급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2021. 12.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순회교육의 수업일수 등 순회교육의 운영과 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2020. 10. 20.>

제26조(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 ①「유아교육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되는 경우 해당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할 인력을 학급당 1인 이상 추가로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운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27조(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 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유치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4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2. 초등학교·중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6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6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3.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가 1인 이상 7인 이하인 경우 1학급을 설치하고, 7인을 초과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학급을 설치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의 경우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 작업치료 등 치료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④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용 각종 교구, 각종 학습보조기, 보조공학기기 등의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 편의를 위하여 통학차량 지원, 통학비 지원,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 등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⑥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기숙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기숙사를 설치·운영하는 특수학교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및 보호를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생활지도원을 두는 외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4. 5.>
⑦ 제6항의 생활지도원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배치기준은 국립학교의 경우 교육부령으로, 공립 및 사립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규칙으로 각각 정한다. <신설 2013. 4. 5.>
⑧ 각급학교의 장은 각급학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정보(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포함한다)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4. 5.>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6. 5. 29.>

제29조(특별지원위원회) ① 대학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
2.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결정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계 교직원 또는 재학 중인 장애학생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신설 2022. 10. 18.>
③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장애학생지원센터) ①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생활에 관한 지원을 총괄·담당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학생이 재학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학생 수가 일정 인원 이하인 소규모 대학 등은 장애학생 지원부서를 둠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2022. 10. 18.>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21. 3. 23., 2021. 12. 28., 2022. 10. 18.>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1조에서 정하는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2의2.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3. 교직원·지원인력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4. 장애학생 교육복지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학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제30조의2(개인별 교육지원계획) ①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특별지원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제1항의 보고사항을 반영하여 매 학기마다 장애학생에 대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대학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대학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장애학생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1조(편의제공 등) ①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2022. 10. 18.>
1.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2. 교육지원인력 배치 등의 인적 지원
3. 취학편의 지원
4. 정보접근 지원
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6.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에 필요한 것으로서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②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장애수험생의 수험의 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수험편의에 필요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2.>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8.>

제32조(학칙 등의 작성) 대학의 장은 이 법에서 정하는 장애학생의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학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8.>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3조(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2.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3.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4. 장애학생 지원에 대한 교직원 등 연수 지원
5. 제13조에 따른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6. 제30조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7.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고등교육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34조 삭제 <2016. 5. 29.>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5조(대학의 심사청구 등) ①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대학에 이 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과 이 법을 위반하는 대학의 장 또는 교직원의 행위에 대하여 특별지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청구에 관하여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대학의 장, 교직원,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⑦ 그 밖에 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①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장, 교육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2. 제16조제3항에 따른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3. 제17조제1항에 따른 학교에의 배치
4. 제4조를 위반하는 부당한 차별

②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심사에서는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교육장, 교육감,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제3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제3항에서 정하는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청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교육감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장애를 이유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을 거부하거나 입학전형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교육기관의 장
2. 제4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대학의 입학전형절차에서 수험편의의 내용의 확인과 관계없는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한 자

[본조신설 2016. 5. 29.]

[종전 제38조는 제38조의2로 이동 <2016. 5. 29.>]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2. 21.>

1. 삭제 <2016. 5. 29.>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수업, 학생자치활동, 그 밖의 교내외 활동에 대한 참여와 개별화교육지원팀에의 보호자 참여에 있어서 차별한 자
3. 삭제 <2016. 5. 29.>
4. 제4조제2항제5호를 위반하여 입학·전학 및 기숙사 입소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한 자
5. 제4조제2항제6호를 위반하여 학생 생활지도에 있어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차별을 한 자

[제38조에서 이동 <2016. 5. 29.>]

부칙 <제18992호, 2022. 10. 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3. 4. 19.〕〔대통령령 제33406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무교육의 실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법률 제8483호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의무교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례로 각각 실시한다.

1. 2010학년도: 만 5세 이상 유치원 과정 및 고등학교 과정
2. 2011학년도: 만 4세 이상 유치원 과정
3. 2012학년도: 만 3세 이상 유치원 과정

제3조(의무교육의 비용 등)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사립(私立) 특수교육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관할 구역에 있는 사립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 교육 가능한 인원, 교육기간 등에 관하여 그 특수교육기관의 장(특수학급이 설립된 사립학교의 장을 포함한다)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위탁한 사립 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과 같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진로 및 직업교육비, 교직원의 인건비, 그 밖에 특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 외에 위탁교육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교원의 자질 향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특수교육교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연수를 받게 하는 경우 특수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통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통합교육을 지원하는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는 특수교육과 관련된 직무연수 과정을, 특수교육교원에 대하여는 일반교과 교육에 관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6조(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앙특수교육운영위원회

(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교육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③ 당연직위원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서 해당 부처의 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특수교육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7년 이상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특수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 경험이 있는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⑦ 중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위촉위원의 해촉)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2. 31.]

제7조(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가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 업무를 전담하는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지역의 지리적 특성 및 특수교육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 2 이상의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특수교육지원센터는 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진단·평가 과정에서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또는 학생이 이전에 의료적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⑥ 교육감은 제5항에 따라 의료적 진단을 보건소, 병원 또는 의원에 의뢰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1. 29.>
1. 특수교육대상자의 성·연령·장애유형·장애정도별 현황
2. 특수교육기관 및 그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
3.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현황
4.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행정조직 및 지원 현황
5. 특수교육재정의 확보·분배·활용 현황
6.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성과 및 학교 졸업 후의 생활상태
7. 삭제 <2021. 4. 20.>
8.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보호자, 특수교육에 관한 전문가 등 특수교육 관련자의 특수교육 지원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사항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 29.>
1.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현황
2.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현황
3.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 및 장애수험생의 수험 편의를 위한 수단의 제공 현황
4.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 등에 관한 학칙의 규정 현황
5.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운영 현황

③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0. 12. 8.>
1.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의 유형별 현황
2. 인권침해 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현황
3. 인권침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조치 현황
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④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시행하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조사항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수조사(全數調査)의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 1. 29., 2020. 12. 8.>
⑤ 교육감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필요하면 해당 조사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제8조의2(인권침해 사건의 조사) ①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와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의 목적과 항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장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학교 배치 등

제9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매년 1회 이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의 영유아 또는 학생(이하 "영유아 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수시로 선별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8., 2012. 8. 31.>
③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한 결과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병원 또는 의원에서 영유아 등에 대한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상담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선별검사를 받은 영유아 등의 보호자가 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받기를 요청할 경우 영유아 등의 보호자에게 영유아 등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영유아 등이 특수교육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진단·평가를 하여야 한다.
⑤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평가한 결과 영유아 등에게 특수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절차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선별검사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2013. 3. 23.>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법 제15조제1항제11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가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1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각각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에 배치한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육교원에게 그 학교를 방문하여 학습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추가·변경 또는 종료하거나 특수교육대상자를 재배치할 필요가 있으면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교육장 및 교육감에게 그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및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배치에 대한 이의) 법 제1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란 해당 특수학교가 교육하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와 배치를 요구받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종류가 달라 효율적인 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장 영유아 및 초·중등교육

제13조(장애영아의 교육지원) ①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이하 이 조에서 "장애영아"라 한다) 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되, 장애영아의 건강 상태 및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을 받는 영아학급 등의 교원 배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장애영아를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배치하여 교육을 하는 경우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별표에 따른 보통교실을 그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갖추어야 한다.

④ 장애영아 담당 교원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제14조(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 등)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의무의 유예 또는 면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의 등·하교 가능성, 순회교육 실시 가능성 및 보호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이 경우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취학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보호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취학을 신청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5조(유치원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보는 어린이집의 요건) 법 제1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교육 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6. 28.]

제16조(통합교육을 위한 시설·설비 등) ①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수 및 그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일반학교의 장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의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정도 및 교육활동 등에 맞도록 정보 접근을 위한 기기, 의사소통을 위한 보완·대체기구 등의 교재·교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17조(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준교사·실기교사의 자격(각각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을 담당할 수 있는 자격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0. 30.>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직업재활에 관한 전공을 이수한 사람
2.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국가자격증 또는 민간자격증 소지자
3. 진로 및 직업교육과 관련한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

제18조(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시설 등) ① 중학교 과정 이상 각급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중학교 과정 이상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학교시설·설비기준령」 제4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② 특수교육지원센터는 특수교육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 등 해당 지역의 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산업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로 및 직업 교육을 위한 교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로 및 직업 교육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5.>

제19조(전공과의 설치·운영)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66제곱미터 이상의 전공과 전용 교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시설·설비의 기준은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장실습이 포함된 직업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전공과의 수업 연한과 학생의 선발 방법은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전공과를 설치한 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전공과를 전담할 인력은 전공과를 설치한 특수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과정과 같은 수준으로 배치한다.

제20조(순회교육의 운영 등) ①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순회교육을 하기 위하여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능력,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순회교육계획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순회교육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150일을 기준으로 하여 각급학교의 장이 정하되, 순회교육을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상태와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30일의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③ 삭제 <2016. 6. 21.>

제20조의2(원격수업의 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위하여 점자 및 자막 자료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에 따른 교육자료를 개발·보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0.]

제20조의3(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을 설치·운영 중인 의료기관 및 복지시설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한다.
1. 학급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지원
2. 학급 담당 교원 또는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지원
3. 순회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4. 그 밖에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 수준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2. 6. 28.]

제21조(유치원 과정의 방과후 과정 담당 인력의 자격기준 및 운영방법)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담당하는 인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자격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2. 4. 20.>
②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과 보육을 연계하고 정규교육과정을 포함하여 1일 8시간 이상으로 운영하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2. 4. 20.>
③ 교육감은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과정의 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0.>
[제목개정 2012. 4. 20.]

제22조(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한다. 다만, 도시와 농촌·산촌·어촌 교육의 균형발전,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운영현황,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및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별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기준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하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23조(가족지원)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가족상담, 양육상담, 보호자 교육, 가족지원프로그램 운영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족지원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할 수 있다.

제24조(치료지원)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치료지원에 필요한 인력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면허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② 교육감 또는 특수학교의 장은 특수교육지원센터 또는 특수학교에 치료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연계하여 치료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지원인력)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을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인력 수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인력의 채용·배치 등 지원인력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6. 28.>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지원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특수교육에 관한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2. 6. 28.>

③ 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운영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제목개정 2022. 6. 28.]

제26조(각종 교구 및 학습보조기 등 지원) 교육감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각급학교의 장이 각종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필요한 기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27조(통학 지원)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통학 지원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통학차량을 각급학교에 제공하거나 통학 지원이 필요한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현장체험학습, 수련회 등 학교밖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기숙사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기숙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② 공립 및 사립학교의 기숙사 시설·설비 기준은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장 고등교육 <개정 2017. 5. 29.>

제30조(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대학의 장은 그 대학에 장애학생이 10명 이상 재학하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이하 "특별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장애학생이 10명 미만인 대학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지원부서가 법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관한 특별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8.>

③ 특별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4. 18.>

④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학의 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각 호별 해당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 4. 18.>

1. 해당 대학의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교직원
2. 해당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3.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대학의 장이 인정하는 전문가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3. 4. 18.>

제31조(장애학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법 제30조제1항 단서에서 "일정 인원"이란 9명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해당 대학의 교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1. 교육학, 사회복지학, 법학 등 장애인 인권 관련 분야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교육, 보건·의료, 복지 등 분야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을 소지한 사람
3. 장애학생 지원 및 복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으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23. 4. 18.]

제31조의2(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2.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수단 중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수단 및 기간

② 장애학생지원센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장애학생 지원부서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이를 말한다)의 장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에게 보고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해당 장애학생에게 대학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장애학생이 요청하면 해당 계획을 장애학생이 소속된 학과·학부 또는 대학원의 장에게도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별 수요 조사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학의 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32조(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의 편의제공) ①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영상물의 화면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화면해설
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청각장애인 또는 같은 표 제5호에 따른 언어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청각장애인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글자로 전달하는 폐쇄자막
3. 청각장애인등을 위하여 영상물의 음성 및 음향을 손짓, 몸짓, 표정 등으로 전달하는 한국수어 통역

② 대학의 장이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이하 이 조에서 “수업영상물”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편의를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영상의 형태로 제작하여 수업영상물에 포함하는 방법
2. 교육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학습보조기기·보조공학기기 및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하여 제1항 각 호의 편의를 수업영상물과 함께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방법

[본조신설 2022. 6. 28.]

제32조의2(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고등교육지원센터(이하 “고등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법인 중에서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장비·시설을 갖출 것
3. 법 제3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가 갖추어야 하는 기준의 세부 내용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⑤ 고등교육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법인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조직·인력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2. 제2항제2호의 사무실, 장비·시설의 보유 현황이나 확보 계획

3. 제2항제3호의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

⑥ 고등교육센터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고등교육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⑧ 교육부장관은 제1항 및 제7항에 따라 고등교육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교육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게시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등교육센터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6장 보칙

제33조(심사청구 절차) 법 제35조제3항 및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 및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서류는 각각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8.>

1. 제30조에 따른 특별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 2016년 1월 1일

1의2.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2023년 1월 1일

1의3. 제31조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2023년 1월 1일

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의 내용을 장애학생에게 알릴 의무: 2016년 1월 1일
3. 삭제 <2017. 5. 29.>

[전문개정 2016. 12. 30.]

부칙 <제33406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지원위원회의 구성에 관한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30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특별지원위원회는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이후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하는 경우 제3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는 해당 각 호별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임명해야 한다.

별표 / 서식

[별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별표〕〈개정 2022. 6. 2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감각적·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11.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각각의 교육지원만으로 교육적 성취가 어려워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중도중복(重度重複)장애: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장애를 각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이 경우 장애의 정도는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의 결과, 제9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진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

2)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또는 정서·행동장애

나. 시청각장애: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를 모두 지니면서 시각과 청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고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에 심각한 제한이 있는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22. 7. 21.〕〔교육부령 제269호, 2022. 6. 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선별검사나 진단·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검사를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하여 진단·평가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진단·평가의뢰서를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의 결과를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알릴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배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학교에 배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의2 삭제 <2022. 6. 29.>

제4조(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매 학년의 시작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의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개별화교육계획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 교육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평가계획 및 제공할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내용과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④ 각급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인력의 역할 및 자격) ①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학교에 배치되는 지원인력은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및 학교 활동에 대하여 보조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22. 6. 2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인력의 자격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6. 29.>

[제목개정 2022. 6. 29.]

제6조(생활지도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 ①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특수학교의 기숙사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

1. 「초·중등교육법」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물리치료사 또는 작업치료사
   나.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다.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②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 두는 생활지도원은 학생 5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 또는 청각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의 경우에는 학생 7명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의2(간호사 등의 배치기준) 법 제28조제6항 후단에 따라 국립학교에는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되, 기숙사에 기숙하는 학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인원 50명마다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1명 이상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특별지원위원회에 대한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장애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학교의 특별지원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심사청구 결과 통보 등) ① 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그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이 심사청구를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청구서를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를 받은 해당 시·군·구특수교육운영위원회 또는 시·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심사결과통지서를 그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호, 2022. 6. 29.>

이 규칙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개정 2016. 6. 2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평가 영역	시각장애·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지적장애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평가 시 장애인증명서·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1. 6. 30.〉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한 자)			성별	남, 여
	주 소				
	소 속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 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시·도교육감(교육장) 귀하

(자르는 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고등학교 과정 이하)접수증

접수번호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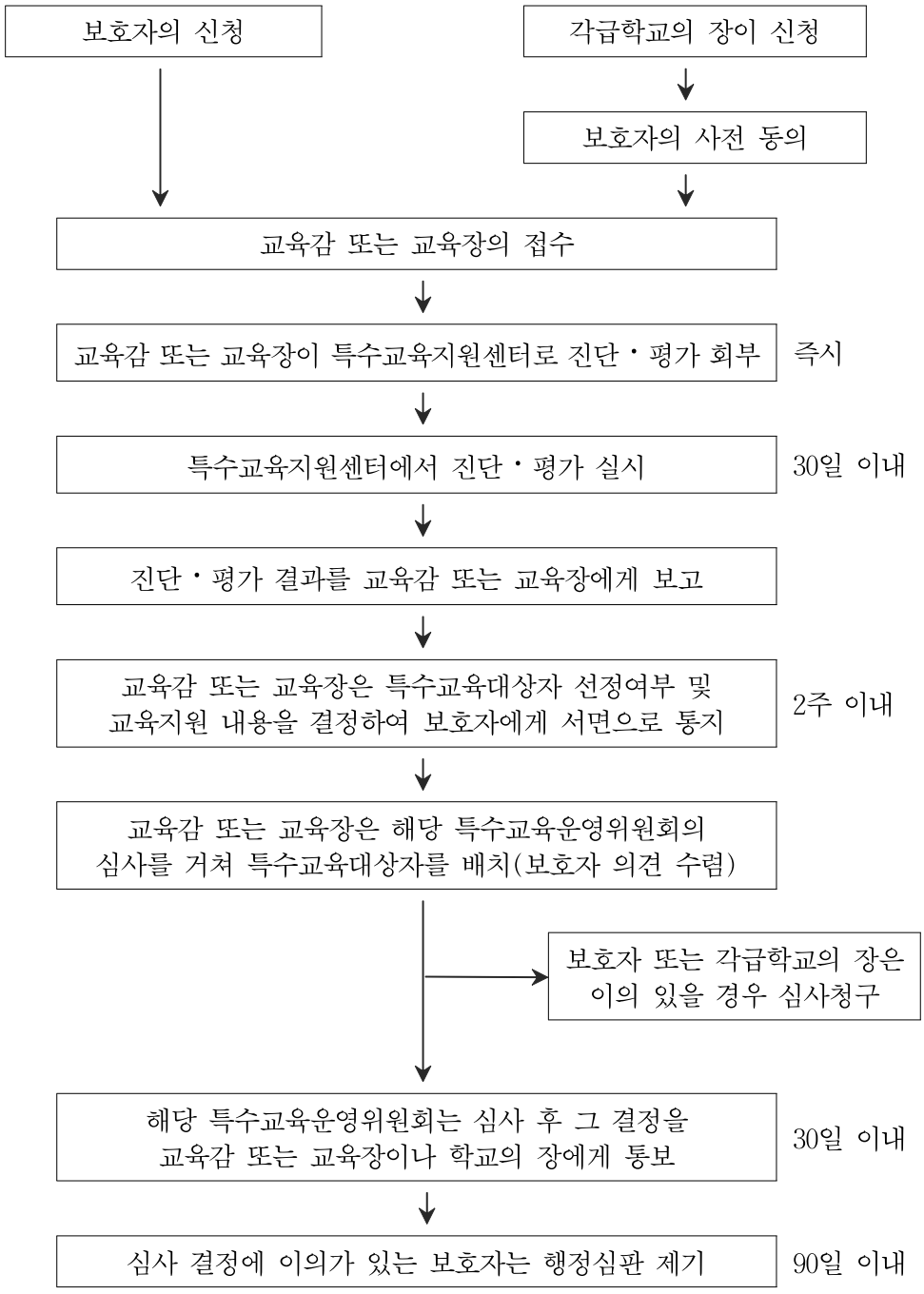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시·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별지 제2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 평가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3호 서식〕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통지서

교부번호:

배정학교	학교 부 제 학년 (학급)

성 명 : 성별(남, 여)

주 소 :

생 년 월 일 : 년 월 일생

현재 소속기관: 학교 부 제 학년 재학(졸업)

위 학생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

년 월 일

시·도교육감(교육장) ㊞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9. 9. 17.〉

(앞면)

<table>
<tr><td colspan="5">심사청구서(전문대학 이상)</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4"></td></tr>
<tr><td>④ 재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⑤ 재심청구의 취지</td><td colspan="4"></td></tr>
<tr><td>⑥ 재심청구의 이유</td><td colspan="4"></td></tr>
<tr><td>⑦ 기타입증자료</td><td colspan="4"></td></tr>
<tr><td>⑧ 근거법률</td><td colspan="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td></tr>
</table>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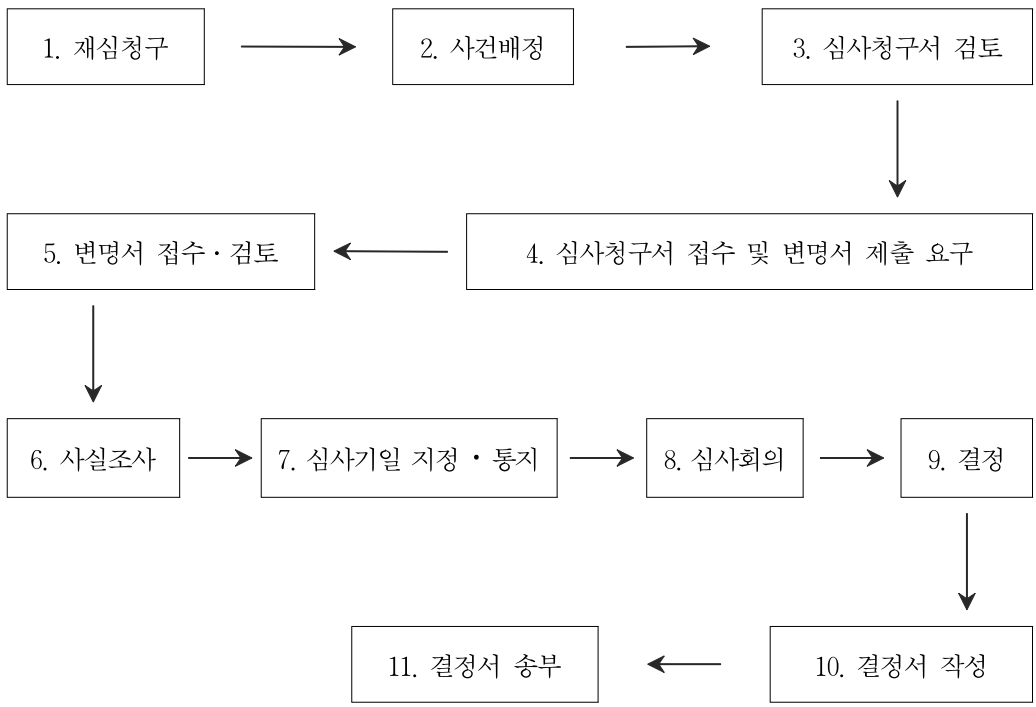

〔별지 제5호 서식〕

<table>
<tr><td colspan="4">심사결과통지서(전문대학 이상)</td></tr>
<tr><td>① 사건</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2"></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3"></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3"></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3"></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4">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19. 9. 17.〉

(앞면)

심사청구서(고등학교 과정 이하)

<table>
<tr><td colspan="2">① 사건</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4">② 청구인</td><td rowspan="3">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4">(전화번호:)</td></tr>
<tr><td>소속학교</td><td colspan="4"></td></tr>
<tr><td>학교장</td><td>성명</td><td></td><td>학교명</td><td colspan="2">(전화번호:)</td></tr>
<tr><td colspan="2">③ 피청구인</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⑤ 심사청구의 취지</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⑥ 심사청구의 이유</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⑦ 기타입증자료</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2">⑧ 근거법률</td><td colspan="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able>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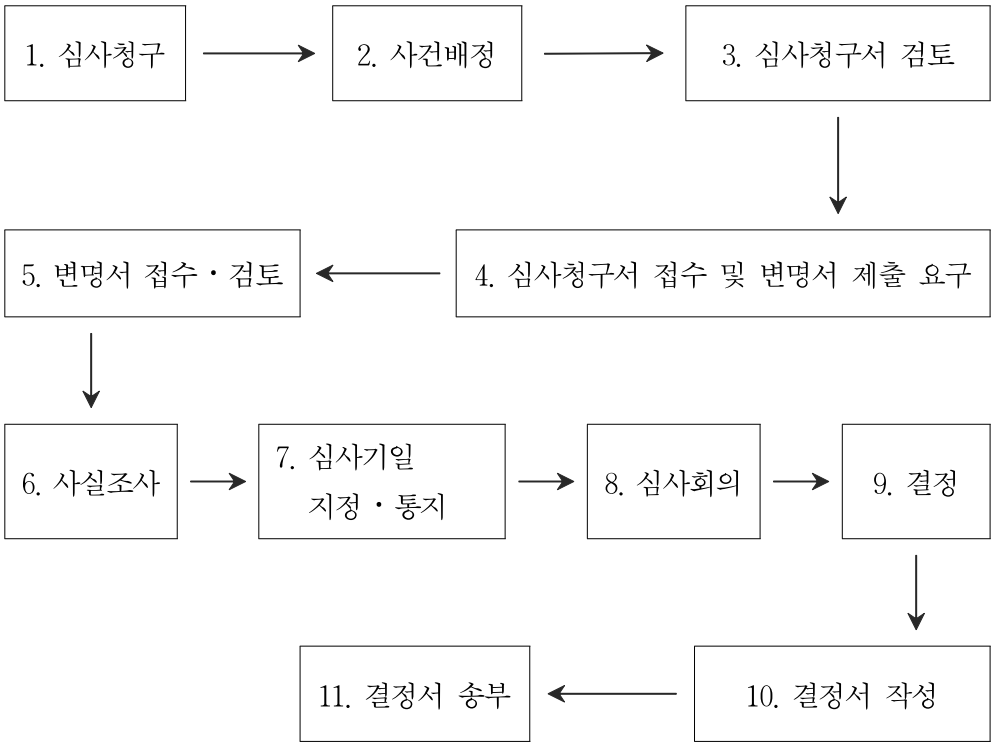

〔별지 제7호 서식〕

<table>
<tr><th colspan="5">심사결과통지서(고등학교 과정 이하)</th></tr>
<tr><td>① 사건</td><td colspan="4"></td></tr>
<tr><td rowspan="3">② 청구인</td><td>성명</td><td></td><td>성별</td><td></td></tr>
<tr><td>주소</td><td colspan="3">(전화번호:)</td></tr>
<tr><td>소속</td><td colspan="3"></td></tr>
<tr><td>③ 피청구인</td><td colspan="4"></td></tr>
<tr><td>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td><td colspan="4"></td></tr>
<tr><td>⑤ 심사 결과</td><td colspan="4"></td></tr>
<tr><td>⑥ 근거법률</td><td colspan="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td></tr>
<tr><td colspan="5">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td></tr>
</table>

2023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1동
우편번호 30119
전화 044) 203－6569

인쇄처: (사)성원근로장애인협회 드림사업단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풍덕골길 21-13
(우편번호) 30053
전화 044)862－2922 / Fax 044) 863－1923